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해양수산부 소관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윤 성 민

목 차

【 해양수산부 소관 】

I . 202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
1. 2025년도 결산 총괄	1
2. 세입·세출 개요	3
가. 세 입	3
나. 세 출	4
3. 기금 개요	6
가. 수 입	6
나. 지 출	7
4. 예비비 지출	8
5. 재무회계	9
가. 재정상태	9
나. 재정운영	11
다. 순자산변동	13

II.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14

1. 일반회계 14

가. 개 요 14

1) 세입결산 14

2) 세출결산 14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8

1)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해양환경공단의 법정민간대행 사업 추진 근거 미흡
및 갯벌유산보전원 설립 전액 이월(1031-310) 18

(1) 갯벌 세계유산 관리 사업의 해양환경공단 법정 민간대행 근거 미흡 ... 19

(2) 갯벌유산보전원 설립 전액 이월 23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R&D):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및 연구개발
적립금 용도 부적정(1110-300) 28

3)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운영사업 집행
부진(2031-308) 35

4)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
추진 근거 불명확 및 권역별 해양바이오 인프라 건립사업 집행 부진
(2031-312) 44

(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양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미흡 ... 45

(2) 권역별 해양바이오 인프라 건립사업 집행 부진 49

5) 해양관광육성: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실집행 부진(2034-310) 53

6)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해상통신망(D-MF/HF) 업데이트 사업 추진시
어획량 보고 정책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등(3132-306) 59

(1) 해상통신망(D-MF/HF) 업데이트 사업 추진시 어획량 보고 정책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60
(2)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중복 보급 실태 점검 필요	66
7)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예산 비목 부적정 및 국고지원 수준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3431-301)	71
8)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행정 절차 사전 검토 부족에 따른 실집행 부진(5067-301)	79
9)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 예산 편성 부적절 (6133-355)	86
10)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연도별 보조율의 급격한 변동 방지 필요 (6332-315)	91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6

가. 개 요	96
1) 세입결산	96
2) 세출결산	98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00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출바우처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및 사업 정보 접근성 개선 필요(2837-300)	100
2)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실질적 경쟁구도 도모 필요(3040-322)	109
3) 수산물 위생관리: 행정입법 미비 해소 및 민간위탁사업의 지속적인 점검 필요(3041-303)	121
4)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의 예비비 연말 집행 시정 및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3044-340)	127

5)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금 교부·집행 관리 부실에 따른 전반적인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시정 필요(3140-301)	138
6) 자율관리어업육성: 위탁사업의 공모 절차 및 예산 비목 편성 시정 필요(3142-300)	150
7) 감척어선공공활용: 감척어선 공공활용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효과성 분석 필요(3145-308)	160
8)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바다숲조성 사업 검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감독·검사 체계 시정(3150-304)	169
9)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사업의 연례적 이월(3542-302)	181

3. 교통시설특별회계 185

가. 개 요 185

1) 세입결산	185
2) 세출결산	18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88

1) 진해신항: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예산 과다 편성 및 이월 부적절(5050-305)	188
2)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에 따른 연례적 예산 미 집행(5050-315)	194
3) 포항영일만신항(1단계)·군장항(2단계): 예산편성지침 위반 및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리비 선금 집행 부적절(5050-323·5058-314)	200
(1)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예산 편성	201
(2)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리비 선금 집행 부적절	206
4) 마리나 항만: 여수웅천·안산방아머리 마리나 건립사업 불용(5062-301) ..	211

5) 여객터미널 운영: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설계 및 안전보강 탑승교 사업관리 미흡(5064-301)	217
6) 표지시설: 연례적 국내여비 세목조정 부적절(6350-300)	224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28
가. 개 요	228
1) 세입결산	228
2) 세출결산	229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30
1)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사전점검 미흡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6133-328)	230
(1)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사전점검 미흡에 따른 실집행 부진	231
(2) 양적·질적 성과관리 강화 필요	234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7
가. 개 요	237
1) 세입결산	237
2) 세출결산	238
6. 수산발전기금	240
가. 개 요	240
1) 수입결산	240
2) 지출결산	242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44
1) 해양폐기물 정화: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조속한 정착 방안 마련 필요 (1065-301)	244
2)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1065-304)	251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 소관]

I. 2025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 2025년도 결산 총괄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총계 기준 세입예산 및 수산발전기금의 수입 계획액은 3조 986억 4,400만원이며, 3조 622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조 9,966억 5,200만원을 수납하고 637억 8,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총수입 기준 세입예산액은 1조 3,449억 4,600만원이며, 1조 61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58억 1,500만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17억 9,800만원과 미수납액 637억 8,7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2025년도 세입(수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수입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대비 수납증감 (B-A)
예 산	2,278,260	2,136,707	2,084,702	1,798	50,207	△193,558
기 금	820,384	925,530	911,950	-	13,580	91,566
총 계	3,098,644	3,062,237	2,996,652	1,798	63,787	△101,992
총수입	1,344,946	1,061,400	995,815	1,798	63,787	△351,131

* 총수입: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

* 자료 : 해양수산부

□ 세출예산(지출계획) 규모는 총계 기준 8조 5,707억 3,800만원이며, 사업 집행과정에서 전년도 이월 등에 따른 세출예산현액은 8조 8,797억 100만원으로, 이 중 8조 3,803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2,289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40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액은 6조 9,254억 1,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 및 추경 등에 따른 예산현액은 7조 2,313억 7,500만원이며, 이 중 6조 6,600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2,289억 1,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23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세출(지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 (지출 계획액)	예산(지출)결정후 증감액				예 산 (지출) 현 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예산	7,750,354	200,150	-	92,681	109,668 △109,668	8,043,185	7,468,383	228,148	346,653
기금	820,384	16,133	-	-	590 △590	836,517	911,950	768	157,372
총계	8,570,738	216,283	-	92,681	110,258 △110,258	8,879,701	8,380,333	228,916	504,026
총지출	6,925,412	216,283	-	89,681	110,258 △110,258	7,231,375	6,660,095	228,916	342,365

* 주: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입·세출 개요

가. 세 입

□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의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총계 기준 2조 2,782억 6,000만원이며, 2조 1,367억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조 847억 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502억 7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 2025년도 세입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일반회계	423,100	137,932	129,552	2	8,377	△ 293,548
농특회계 ¹⁾	32,171	115,228	102,013	-	13,215	69,842
교특회계 ²⁾	1,814,123	1,859,950	1,836,488	1,796	21,665	22,365
에특회계 ³⁾	3,845	7,532	5,281	-	2,251	1,436
지특회계 ⁴⁾	5,021	16,065	11,366	-	4,699	6,345
총 계	2,278,260	2,136,707	2,084,702	1,798	50,207	△ 193,558

* 자료 : 해양수산부

□ 미수납액 502억 700만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체납자 재력부족(257억), 관계기관 예산부족(171억), 납기 미도래(74억) 등임.

-
-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 교통시설특별회계
 -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나. 세 출

□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계 기준 7조 7,503억 5,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01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431억 8,500만원임.

【 2025년도 세출 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일반회계	3,471,093	20,800	-	89,681	12,744 △12,744	3,581,573	3,355,001	25,981	200,591
농특회계	1,764,142	73,744	-	3,000	5,274 △5,274	1,840,886	1,768,427	24,981	47,478
교특회계	1,814,123	101,904	-	-	87,531 △87,531	1,916,027	1,653,352	172,551	90,124
예특회계	61,802	-	-	-	-	61,802	61,802	-	-
지특회계	639,194	3,702	-	-	4,120 △4,120	642,896	629,801	4,634	8,460
총계	7,750,354	200,150	-	92,681	109,668 △109,668	8,043,185	7,468,383	228,148	346,653

* 자료 : 해양수산부

□ 이·전용액 1,096억 6,800만원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항만건설예산 조정 875억원, 배상금 등 부족액 35억원, 양식 등 재해 재난지원금 11억원, 인건비·여비 등 기본경비 부족액 이·전용 등 76억원으로 발생하였음.

□ 예산현액 8조 431억 8,500만원 중 7조 4,683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회계, 농특회계 및 교특회계에서 절대공기 부족(1,978억원) 등으로 2,281억 4,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3,254억원) 및 지급사유 미발생(131억원) 등으로 3,466억 5,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

3. 기금 개요

가. 수 입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발전기금의 2025회계연도 총 수입계획액은 8,203억 8,400만원이며, 9,255억 3,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119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고, 경상이전수입(법정부담금 등)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135억 8,0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수입 계획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대비 수납증감 (B-A)
	당초	변경 (A)					
수산발전기금	820,384	820,384	925,530	911,950	13,580	-	91,566
합 계	820,384	820,384	925,530	911,950	13,580	-	91,566
사업운용수입 (수산발전기금)	688,995	688,995	577,943	564,363	13,580	-	△124,632
정부내부수입 (수산발전기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	-	-
여유자금회수 (수산발전기금)	31,389	31,389	247,587	247,587	-	-	216,198

* 총계기준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지 출

□ 수산발전기금의 총 지출계획액은 8,203억 8,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61억 3,300만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8,365억 1,700만원으로, 이 중 9,119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6,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73억 7,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별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 초	변 경					
수산발전기금	820,384	820,384	16,133	836,517	911,950	768	157,372
총 계	820,384	820,384	16,133	836,517	911,950	768	157,372
일 반 지 출 (수산발전기금)	795,603	795,603	16,133	811,736	658,678	768	152,290
정부 내부지출 (수산발전기금)	5,082	5,082	-	5,082	-	-	5,082
합 계	800,685	800,685	16,133	816,818	658,678	768	157,372
여유자금운용 (수산발전기금)	19,699	19,699	-	19,699	253,272	-	-

* 총계기준

* 자료 : 해양수산부

□ 다음연도 이월액 7억 6,800만원은 해양생태계서식처기능개선복원사업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등에 따른 것임.

□ 불용액 1,573억 7,200만원은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재해등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749억 3,500만원, 비축사업 376억 6,800만원, 우수수산물지원 141억 4,600만원,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50억 8,200만원 등임.

4. 예비비 지출

□ 해양수산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배정액은 총 896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866억 8,1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30억원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해양수산부 청사 부산 이전을 위하여 866억 8,100만원을 배정받아 687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37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5,400만원은 불용하였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는 수산물 상생할인을 위하여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사업에 30억원을 배정받아 전액 지출하였음.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비비 결산 】

(단위 : 백만원)

집 행 내 역		지출 결정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해양수산행정지원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	86,681	68,764	13,763	4,154
농특회계 (구조개선 사업계정)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수산물 상생할인)	3,000	3,000	-	-
합 계		89,681	71,764	13,763	4,154

* 자료 : 해양수산부

5. 재무회계

가. 재정상태

【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금 액	비 율
자 산	40,601,994	38,771,981	1,830,013	4.7%
금융자산	3,174,375	3,126,716	47,659	1.5%
유·무형자산	36,984,372	35,084,455	1,899,916	5.4%
기타자산	443,248	560,810	△117,563	△21.0%
부 채	273,612	163,894	109,717	66.9
차입부채	230,595	129,267	101,328	78.4
충당부채	24,714	17,390	7,324	42.1
기타부채	18,302	17,237	1,065	6.2
순자산	40,328,382	38,608,087	1,720,296	4.5

* 자료 : 해양수산부

- 2025년 말 기준 해양수산부의 자산은 40조 6,019억 9,4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조 8,300억 1,300만원 증가(4.7%)하였음.
-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1조 9,009억 3,300만원(6.9%) 증가함에 따라 유·무형자산 총계는 1조 8,999억 1,600만원 증가(5.4%)하였고,
- 기타자산이 1,175억 6,300만원(△21.0%) 감소하였으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 금융자산이 476억 5,900만원(1.5%) 증가함에 따라 자산총계는 1조 8,300억 1,300만원 증가(4.7%)하였음.
- 2025년 말 기준 해양수산부의 부채는 2,736억 1,2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097억 1,700만원 증가(66.9%)하였음.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25년 말 기준 40조 3,283억 8,2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조 7,202억 9,600만원 증가(4.5%)하였음.

나. 재정운영

【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재정운영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4년	증 감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4,523,218	4,365,927	157,291	3.6
II. 관리운영비	483,408	457,511	25,897	5.7
III. 비배분비용	40,599	25,636	14,963	58.4
IV. 비배분수익	173,907	216,767	△42,860	△19.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873,318	4,632,308	241,010	5.2
VI. 비교환수익 등	68,583	73,369	△4,786	△6.5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804,735	4,558,938	245,797	5.4

* 자료 : 해양수산부

□ 2025년 중 프로그램 순원가는 프로그램 총원가 4조 9,286억원에서 프로그램 수익 4,054억원을 차감한 4조 5,232억 1,800만원으로 전기 대비 1,572억 9,100만원 증가(3.6%)하였음.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301억원과 그 밖의 경비 1,533억원으로, 전기 대비 258억 9,700만원 증가(5.7%)하였음.

□ 비배분비용은 기타운영비용 292억원, 기타이전비용 101억원, 자산평가손실 7억원 등이며,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123억원, 기타운영수익 389억원 등으로 구성됨.

□ 비교환수익 등은 부담금수익 609억원, 기타이전수익 69억원 등으로, 전기 대비 47억 8,600만원 감소(△6.5%)한 685억 8,300만원임.

□ 재정운영순원가는 4조 8,733억원이며,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전기 대비 2,457억 9,700만원 증가(5.4%)한 4조 8,047억 3,500만원임.

다. 순자산변동

【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순자산변동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5,706,307	26,189,684	6,712,096	38,608,087
II. 재정운영결과	-	4,804,735	-	4,804,735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	6,185,295	-	6,185,295
IV. 조정항목	-	-	339,736	339,736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5,706,307	27,570,243	7,051,832	40,328,382

* 자료 : 해양수산부

□ 기초순자산은 전기 대비 8,991억 4,300만원 증가(2.4%)한 38조 6,080억 8,700만원으로 인식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 결과는 4조 8,047억 3,500만원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6조 1,852억 9,500만원으로 재원의 조달 8조 1,004억원, 재원의 이전 1조 9,151억원이며,

조정항목은 3,397억 3,600만원으로 투자증권평가손익 △16억원, 자산재평가이익 3,413억원임.

□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재원의조달및이전과 조정항목을 포함한 기말순자산은 40조 3,283억 8,200만원임.

II. 회계·기금별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년도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 4,054억 2,000만원, 재산수입 75억 3,0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8억 6,200만원 등 4,231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여수박람회정부선투자금 2,700억 등 감소로 2,674억 8,800만원이 감소한 1,379억 3,2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1,379억 3,2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1,126억 4,500만원, 재산수입으로 106억 9,4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으로 50억 5,200만원 등 총 1,295억 5,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83억 7,7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7,530	11,506	10,694	0	811	3,164
토지대여료	3,107	3,138	2,694	0	444	△413
건물대여료	280	71	64	-	6	△216
기타관유물대여료	36	2	2	-	-	△34
기타재산이자수입	4,107	8,295	7,934	-	361	3,827
경상이전수입	405,420	115,462	112,645	2	2,813	△292,775
벌금및과료	3	8	-	1	7	△3
과태료	156	180	97	-	84	△59
징계부과금	18	△2	△2	-	-	△20
과징금	36	239	237	-	1	201
변상금	82	179	51	1	127	△31
위약금	174	1,043	885	-	158	711
가산금	32	201	8	-	193	△24
기타경상이전수입	404,919	113,612	111,369	-	2,243	△293,55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862	8,529	5,052	-	3,477	△2,811
면허료및수수료	16	286	285	-	1	269
항공항만수입	6,097	4,467	4,408	-	59	△1,689
실습수입	134	46	46	-	-	△88
기타잡수입	1,615	3,730	312	-	3,417	△1,303
수입대체경비	139	217	175	-	43	36
기타잡수입	139	217	175	-	43	36
관유물매각대	1,781	970	970	-	-	△811
기계기구매각대	11	4	4	-	-	△7
기타고정자산매각대	875	568	568	-	-	△307
토지매각대	686	398	398	-	-	△288
재고자산매각대	209	-	-	-	-	△209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68	1,249	17	-	1,232	△351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	368	1,249	17	-	1,232	△351
합 계	423,100	137,932	129,552	2	8,377	△293,548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3조 4,710억 9,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08억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5,815억 7,3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수산연구(국립수산과학원) 1,328억 7,500만원,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1,337억 700만원, 어업인 소득안정지원 84억 8,800만원, 출연 연구기관지원 2,115억 8,400만원,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4,422억 2,900만원, 해양수산 행정지원 3,306억 200만원, 해양환경보전 1,083억 5,200만원, 해운산업 선진화 1,446억 5,00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46억 7,200만원, 해양수산 행정지원 152억 9,200만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회계간거래 1,565억 7,900만원,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146억 9,600만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1,342	0	-	0	-	1,342	1,342	0	0
수산연구 (국립수산물과학원)	137,790	3,390	-	0	1,085 △1,085	141,180	132,875	931	7,374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130,593	5,075	-	0	39 △39	135,668	133,707	50	1,911
수산행정	115,098	229	-	0	1,954 △2,960	114,321	112,500	714	1,108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8,488	0	-	0	-	8,488	8,488	0	0
원양협력	3,007	0	-	0	-	3,007	3,007	0	0
책임운영기관운영 (국립해양측위정보원)	3,689	26	-	0	349 △45	4,019	3,989	16	13
출연연구기관 지원	213,067	0	-	0	△500	212,567	211,584	0	983
항만개발 및 관리	21,403	0	-	0	-	21,403	21,403	0	0
해양 및 해상 교통관리	89,162	331	-	0	501 △501	89,493	88,167	39	1,287
해양산업육성 및 영토관리	455,313	6,611	-	0	1,433 △1,760	461,597	442,229	4,672	14,696
해양수산연구개발	97,846	81	-	0	-	97,927	97,752	153	21
해양수산연수	4,605	63	-	0	43 △43	4,668	4,475	56	137
해양수산 정보화	43,033	1,446	-	0	55 △55	44,479	42,914	175	1,390
해양수산 행정지원	261,576	1,149	-	86,681	6,726 △3,197	352,935	330,602	15,292	7,041
해양환경보전	114,469	291	-	0	300 △300	114,760	108,352	3,012	3,396
해운산업 선진화	150,067	2,108	-	0	259 △2,259	150,175	144,650	871	4,654
회계간거래	1,620,545	0	-	0	-	1,620,545	1,463,966	0	156,579
회계간거래 (전출금)	0	0	-	3,000	-	3,000	3,000	0	0
합 계	3,471,093	20,800	-	89,681	12,744 △12,744	3,581,573	3,355,001	25,981	200,591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 해양환경공단의 법정민간대행 사업 추진 근거 미흡 및 갯벌유산보전원 설립 전액 이월

- 내역사업인 갯벌 세계유산 관리사업을 법률상 위탁 규정만 존재함에도 법정민간대행 형식으로 해양환경공단에 전담시키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추진 방식이므로, 해양수산부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건립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차별 필요 예산을 반영하고, 갯벌유산보전원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우수해양생태계 보호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21.7) 이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보전을 위한 모니터링 및 거점 기반 운영, 갯벌유산보전원 건립,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지자체 지원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16억 8,300만원 중 88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00만원은 불용하였음⁵⁾.

【 2025년도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11,596	11,596	100	△13	11,683	8,885	2,761	37	28,512

5)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우수해양생태계 보호(1031-310)

(나) 검토의견

(1) 갯벌 세계유산 관리 사업의 해양환경공단 법정민간대행 근거 미흡

- 내역사업인 ‘통합관리기반 구축·운영’ 사업 중 ‘갯벌 세계유산 관리 사업’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유산지역 내 철새 이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산지역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갯벌 세계유산 관리 사업 개요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갯벌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 철새 서식지를 중심으로 바닷새 모니터링 등 유산 관리사업 추진
사업내용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유산지역 내 지역별, 계절별, 시간별 이동성 물새 기초 데이터 확보
사업기간	'23 ~ 계속
지원조건	법정민간대행(국비 100%)
사업주체	해양환경공단
'25년도 예산	20억 4,000만원 - 바닷새(철새) 서식실태 모니터링 : 12억 4,000만원 · 위치추적기 부착, 실시간 모니터링(CCTV) - 유산지역 연계·통합관리 및 대외협력사업 : 8억원 · 워크숍 개최, 지역별 특화사업 등 네트워크 활성화 · 황해, 와덴해 협력사업 등 국제협력사업 추진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은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으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추진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및 세계유산지구의 보호⁶⁾ 등에는 해당 업무를 특정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함.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⁷⁾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²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위탁’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그 명의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인 반면⁹⁾, ‘대행’은 행

6)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보호물·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계유산 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제25조, 제26조, 제70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2. 세계유산 완충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7)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8)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8.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
되, 그 명목과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양자는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되는바¹⁰⁾, 특정 업무를 위탁으로 할지
대행으로 할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법」 등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함.

【 법정대행 입법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
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
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심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p.202,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
준」, 2026. p.513-518.;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p.735-741.

즉, 동 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위탁 규정만 존재함에도 법정민간대행 형식으로 해양환경공단에 전담시키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추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 맞게 비목을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

11) 해양수산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 수립시 민간위탁으로 해당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적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설명임.

(2) 갯벌유산보전원 설립 전액 이월

- 우수해양생태계 보호사업의 내역사업인 ‘갯벌유산보전원 건립’ 사업은 유네스코가 권고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100%로 389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전남 신안군에 전시교육·연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임.

【 갯벌유산보전원 건립사업 개요 】

- 사업내용: 갯벌세계유산지역 확대 및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갯벌유산보전원 건립
- 주요시설: 전시교육시설, 연구시설, 행정시설
- 건립위치: 전남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일원
- 사업규모: 부지면적 41,221㎡, 건축면적 7,950㎡, 지상 2층
- 사업기간: 2023년~2028년(6년간)
- 총 사업비: 389억 8,300만원(국비 100%)

*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2025년 27억 4,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액 이월되었음. 2024년에는 건설사업 각종 심의,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의 절차에 따라 설계용역이 순연되어 예산현액 42억 7,100만원 중 2,500만원¹²⁾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되었으며,

12)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69조에 따라 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

2023년에도 설계용역 발주과정에서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계약이 2023년 12월에 체결됨에 따라 예산현액 20억원 가운데 9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월된 바 있음.

【 2023~2025년도 갯벌유산보전원 사업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5년	공사비 (420-03)	2,414	-	-	2,414	-	2,414	-
	감리비 (420-04)	329	-	-	329	-	329	-
	합계	2,743	-	-	2,743	-	2,743	-
2024년	실시설계비 (420-02)	-	1,044	-	1,044	25	-	1,019
	공사비 (420-03)	2,767	-	-	2,767	-	-	2,767
	감리비 (420-04)	400	-	-	400	-	-	400
	시설부대비 (420-05)	60	-	-	60	-	-	60
	합계	3,227	1,044	-	4,271	25	-	4,246
2023년	실시설계비 (420-02)	2,000	-	-	2,000	956	1,044	-
	합계	2,000	-	-	2,000	956	1,044	-

*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연례적인 집행부진으로 당초 2024년 10월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던 갯벌유산보전원은 2026년 6월에 발주를 요청하여 완공시점이 2028년으로 당초보다 2년 가량 지연되었음,

해양수산부는 법정 행정절차 수행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어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건축심의나 설계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협의 등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13), 「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14) 등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국책 사업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예측 가능한 절차임.

【 갯벌유산보전원 사업 추진 일정 】

당초 계획	단 계		변경 일정
'23.1.~'23.12.	사전 행정 절차	총사업비 최초 등록	'23.1
		업무협약 체결(해수부-전남도-신안군)	'23.06
		조달청 공사 맞춤형 서비스 체결	'23.07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 발주	'23.07~'23.10.
		설계계약 체결 및 착수	'23.11~'23.12.
'23.12.~'24.12.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중간설계 검토 완료	'24.09
		기타용역(환경·재해영향평가) 발주	'24.09~'24.11.
		예비인증(BF 등) 및 건축구조·디자인·경관 심의	'25.01~'25.03.
		총사업비 협의조정(1차)	'25.06
		실시설계 검토 완료	'25.11
		총사업비 협의조정(2차)	'25.12
'25.1.~'25.3.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		'26.6~'26.9

* 자료: 해양수산부

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4)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선박·항공기 건조사업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제22조(설계가격 검토) 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축사업의 경우,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시 단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가 2024년 실시설계 미완료 상태에서 공사비 예산을 무리하게 반영해 전액 불용시키고 2025년에도 27.4억원을 또다시 전액 이월시킨 것은 행정절차 소요 기간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대규모 건립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차별 필요 예산을 반영하고, 갯벌유산보전원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유네스코의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등재 결정¹⁵⁾에 따라, 갯벌유산보전원의 설립을 통한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갯벌유산보전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은 신규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이견 등으로 우리 위원회 의결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임.

15) 이번 결정은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경계 확대를 승인한 것으로, ▲ 여수갯벌, ▲ 고흥갯벌, ▲ 무안갯벌, ▲ 서산갯벌이 유산 구역에 추가됨.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기존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을 포함하여 총 6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확대된 것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됐다, 2026.7.24.)

법안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통과가 계속 지연 또는 계류될 경우, 갯벌유산보전원의 성격, 법적 권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체계·자구 심사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주요 쟁점에 적시 대응하는 한편, 법안 통과와 연계하여 갯벌유산보전원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갯벌법 개정안 개요 】

구 분	내 용
법률안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의안 번호 2201878,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에 대해 “갯벌세계유산”의 정의 규정을 신설 - 갯벌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보전원의 사업내용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갯벌세계유산의 보전 등에 대해 조사 및 점검·평가 등을 하도록 규정
심사 경과	- 2024. 7. 17. 발의 - 2024. 8. 26.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 2025. 2. 26. 해양수산법안소위 의결 - 2025. 3. 6.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 2025. 3. 6. 법사위 회부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R&D) :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및 연구개발적립금 용도 부적정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 계획하여 출연금이 과다 편성될 우려가 있고, 연구개발적립금으로 기관고유사업이나 연구발전 사업보다는 일반운영비성 지출을 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적립금 지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R&D)」은 해양수산 관련 연구와 개발, 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발전 및 국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776억 2,300만원 중 773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¹⁶⁾.

【 2025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R&D)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	78,123	78,123	-	△500	77,623	77,305	-	318	83,164

16)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1110-300)

(나) 검토의견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함)은 해양 과학기술 및 해양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응용·실용화 연구를 수행하고 해양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임.

기술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¹⁷⁾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해양·극지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의 원천·기초 연구,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 에너지·장비 기술 개발, 국가 해양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가 발주하는 국가 R&D 및 정책 연구 과제 수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비 및 기본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음.

2025년도 기술원의 수지 결산을 살펴보면 동 세부사업에 따른 출연금과 시설지원 출연금¹⁸⁾ 등 정부출연금이 895억 8,5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39%, 정부·민간수탁 사업 등에 따른 자체수입이 1,285억 1,500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어, 출연금 보다 자체수입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17)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동 세부사업 외에도 특수 연구장비·인프라 구축 등은 별도의 세부사업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시설지원(1110-303)사업에 따른 출연금으로 교부받고 있음. 2025년도 기준 12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 2025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지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계획(A)	결산(B)	증 감 (B-A)	항 목	계획(A')	결산(B')	증 감 (B'-A')
1. 정부출연금	90,403	89,585	△818	1. 인건비	60,046	56,059	△3,987
○기관운영비	39,080	38,262	△818	2. 연구직접비	89,706	124,008	34,302
○기본사업비	39,043	39,043	-	○기본사업	41,130	39,472	△1,658
○시설사업비	12,280	12,280	-	○정부수탁	45,882	84,009	38,127
2. 자체수입	84,534	128,515	43,981	○민간수탁	2,194	375	△1,819
○정부수탁	75,802	117,386	41,584	○기타사업	500	152	△348
○민간수탁	2,914	1,055	△1,859	3. 경상운영비	10,529	9,981	△548
○기타사업	500	152	△348	4. 시설사업비	20,989	11,566	△9,423
○기타수입	4,718	9,601	4,883	5. 기타	5,001	7,460	2,459
○기술료	600	321	△279	6. 차기이월액	-	20,360	20,360
3. 전기이월액	11,334	11,334	-	○정부출연금	-	12,946	12,946
○정부출연금	11,334	11,334	-	○잉여금	-	7,414	7,414
-인건비	538	538	-	-자체수입 초과액	-	5,025	5,025
-기본사업비	2,087	2,087	-	-경상운영비 절감액	-	547	547
-시설사업비	8,709	8,709	-	-인건비잔액	-	1,842	1,842
합 계	186,271	229,434	43,163	합 계	186,271	229,434	43,163

*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런데 당초 기술원은 자체 예산 계획 수립 시에는 출연금은 904억 300만원, 자체수입을 845억 3,400만원으로 책정하여 출연금보다 자체 수입을 적게 계획하였으나, 실제 자체수입 결산액은 이보다 52.%(439억 8,100만원) 가량 초과 수납되었음.

특히 자체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수탁수입은 계획(758억 200만원) 대비 54%(415억 8,400만원) 이상, 기타수입은 계획(47억 1,800만원) 대비 두 배 이상을 수납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연구선사용료 등도 예산 대비 크게 추가 수납되었음.

기술원은 수탁사업 증가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체수입의 계획 대비 초과 수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400억 가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원이 신규 사업 소요 등을 예산 수립 단계에서 보수적으로 반영하는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2021~202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체수입 계획 및 수납 현황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획	수납	계획	수납	계획	수납	계획	수납	계획	수납
정부출연금	90,443	89,712	85,510	84,469	82,989	82,669	87,843	86,658	90,403	89,585
자체수입	74,135	112,912	78,793	121,877	81,876	119,511	81,189	115,206	84,534	128,515
기타	26,606	26,606	31,543	31,543	28,935	28,935	12,265	12,265	11,334	11,334
합계	191,184	229,230	195,846	237,889	193,800	231,115	181,297	214,129	186,271	229,434

*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술원이 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 자체수입 규모를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는 경우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출연금 예산을 요구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출연금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기술원은 자체수입 초과액을 결산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이처럼 적립된 잉여금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기술원의 최근 5년간 결산잉여금 연구개발적립금 적립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0~80억원 가량을 적립하여 왔으며, 2025년에는 64억 8,7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연구개발적립금 누적액은 2025년도 말 기준 80억원에 달하고 있음.

【 2021~202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개발적립금 적립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초 적립금 누적액	7,117,789	13,181,749	16,147,634	16,119,337	6,040,822
결산상 잉여금 중 적립액 (결산상 잉여금)	8,766,972	8,058,069	6,575,197	2,641,656	6,487,532
지출액 (기관목적사업 및 기관발전사업)	2,703,012	5,092,184	6,603,494	12,720,171	4,526,617
기말 적립금 누적액	13,181,749	16,147,634	16,119,337	6,040,822	8,001,737

*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¹⁹⁾ 및 기술원의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²⁰⁾에 따르면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관고유 연구 및 목적사업, 교육훈련사업, 기관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19) 연구개발적립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되, 경상적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1)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 2)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 3) 기관발전사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210. 참고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개발적립금 관리규정」

제4조(사용범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기관고유연구 또는 기관목적사업(연구인프라 확충, 차입금 상환,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
2.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기관발전사업(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창업 출연·출자 포함)

② 제1항에 규정한 적립금 사용을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또는 변경시 반영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의 연구개발적립금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인사·운영제도 개선, 소모성 비품 구입비 등 매년 반복 지출되거나 일반 운영비 성격의 경상적 경비에 적립금을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는 기관고유연구 또는 연구인프라 확충 등 기관목적사업 및 기관발전이라는 적립금 본연의 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적립금을 사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2~202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개발적립금 중 일반운영비성 지출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액	사 용 내 역
2022년	인사제도 분석 및 제도 현행화	75	- 現 인사제도 및 인사 관련 규정/지침 분석 - KIOST 인사관리 체계 마련(일반직종, 공 무직종, 승무직종 구분 관리 체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0 주년 기념사업 추진	600	- '23년 기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행사 및 50년사 발간 사업 추진
2023년	KIOST 운영시스템 개선	73	- KIOST 인사제도의 현행화를 통한 합리적 인적자원 관리 체계 마련 - 신임 기관장 경영철학 및 기관의 R&R 등 을 반영한 신규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0 년 성과조직진단 및 미 래발전 계획 수립	87	- 기관 창립 50주년을 기념, 중장기 발전 전 략 수립
	한 국 해 양 학 기 술 원 KIOST 창립 50주년 기 념주간 행사	1,314	- 기관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창립 50주년 기념주간 행사 개최

구 분	세부사업명	예산액	사 용 내 역
2024년	신규직원 및 지원인력 공기구 비품 확충 사업	60	- 노후 공기구비품 교체, 신규직원 비품 구입 및 자산관리 체계 마련
	인사제도 분석 및 제도 현행화	70	- KIOST 인사제도의 현행화를 통한 합리적 인적자원 관리 체계 마련
2025년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 연구	40	- 기관 인사 및 복무제도 및 처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관 경쟁력 향상 - 증명서 자동발급 시스템 도입을 기반으로 인사행정 업무의 간소화

* 자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특히 창립 기념행사, 인사·조직 관련 연구 등은 사전 예측 및 계획 수립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므로, 적립금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예산(일반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체계적 추진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 출연금이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편성 단계에서부터 자체수입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연구개발적립금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비 성격의 지출을 지양하는 등 당초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운영 사업 집행부진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운영 사업은 사전 준비 미흡으로 법인 설립 및 개관이 지연되어 운영비 47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음. 또한, 공사비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초기구축비로 집행하였으며, 개관 미비에도 공정률만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달성도를 100%로 평가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은 국립해양박물관 운영비와 BTL 정부지급금 지급, 국립해양과학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비,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비 및 초기구축,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845억 8,200만원 중 790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8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52억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²¹⁾

【 2025년도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80,067	80,067	4,515	-	84,582	79,018	298	5,266	61,217

21)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2031-308)

(나) 검토의견

-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내륙에 해양과학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내륙지역민의 해양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에 총사업비 987억원(국비 912억원, 지방비 75억원)을 투입하여 건립되는 국립해양과학관임.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 및 운영 사업 개요 】

-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2-4 일원(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 사업기간 : '20년 ~ '25년
- 사업규모 : 부지 15,406㎡, 건축 14,980㎡(지하1, 지상3)
 - * 해양탐구관, 해양누리관, 오션판타지관, 키즈디스커버리관, 오션갤러리, 오션라이프 등
- 총사업비 : 987억원(국비 912억원, 지방비 75억원)
 - * 세부내역(단위: 백만원): 설계 2,150, 감리 3,334, 건축 52,779, 전시 32,700, 부지 7,457, 부대비 294

*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운영,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기구축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390억 3,200만원 중 339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7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음.

불용액의 대부분인 47억 4,900만원은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출연금 및 사업출연금으로, 해양수산부는 2025년 2월 시설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당해 연도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초대관장 임명 및 법인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불용 처리가 불가피했으며, 2026년 4월 관장 임명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정식 개관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함.

【 2025년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운영 관련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	28,918	28,918	4,365	△432	32,851	32,822	-	29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운영	4,749	4,749	-	-	4,749	-	-	4,749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기구축	1,000	1,000	-	432	1,432	1,119	298	15
합계	34,667	34,667	4,365	864	39,032	33,941	298	4,793

*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러나 2020년 착수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당초 2024년 말 완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22.1.)²²⁾으로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로 조정되었고, 설계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이 반복되었음.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초기인 2020년에는 공모 등 사전절차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기간('20.7.~'21.12.) 부족으로 4억

22) 2022년 1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건축공사 준공 이후 전시물 설치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조정되었음.

2,300만원, 2021년에는 전시설계·설치 용역('21.4.~'22.12.) 공기 부족으로 공사비 2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후 1차('22.10.~'23.8.), 2차('23.9.~'24.1.), 3차('24.2.~'25.2.) 건축공사의 절대공기가 연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2022년 16억 5,400만원, 2023년 26억 5,000만원, 2024년 43억 6,500만원의 공사비 및 감리비가 차례로 이월되었음.

【 2020~2024년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월 사유
		본예산	추경							
2020	· 합계	2,500	-	-	△ 350	2,150	1,727	423	-	○ 공모 등 사전절차에 따라 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 * (설계용역) '20.7.29~'21.12.15
	- 설계비	2,500	-	-	△ 350	2,150	1,727	423	-	
2021	· 합계	1,626	-	423	-	2,049	1,543	280	226	○ 전시설계 및 설치용역 절대공기 부족 * (1차 전시설계 및 설치용역) '21.4.26~'22.12.31
	- 설계비	226	-	423	-	649	423	-	226	
	- 공사비	1,400	-	-	-	1,400	1,120	280	-	
2022	· 합계	12,518	4,218	280	115	4,613	2,959	1,654	-	○ 건립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1차 건축공사) '22.10.20~'23.8.31
	- 공사비	11,769	3,869	280	109	4,258	2,647	1,611	-	
	- 감리비	729	329	-	-	329	286	43	-	
	- 시설비	20	20	-	6	26	26	-	-	
2023	· 합계	10,150	-	1,654	-	11,804	9,130	2,650	24	○ 건립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2차 건축공사) '23.9.4~'24.1.31
	- 공사비	8,870	-	1,611	-	10,481	8,223	2,234	24	
	- 감리비	1,200	-	43	-	1,243	827	416	-	
	- 시설비	80	-	-	-	80	80	-	-	
2024	· 합계	44,421	-	2,650	-	47,071	42,706	4,365	-	○ 건립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 (3차 건축공사) '24.2.1~'25.2.20
	- 공사비	43,275	-	2,234	-	45,509	41,366	4,143	-	
	- 감리비	1,112	-	416	-	1,528	1,306	222	-	
	- 시설비	34	-	-	-	34	34	-	-	

*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하였는데, 동 개정안은 2024년 6월에 발의되어 같은 해 12월 6일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후 2025년 1월에야 법인설립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하였음.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

구 분	내 용
법률안	-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00782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국가가 설립하는 해양과학관에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을 포함 - 부칙에 국립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설치, 권리·의무의 승계, 예산 및 직원 관련 특례 등 설립준비와 관련된 사항 규정
경과	- 2024. 6. 21. 발의 - 2024. 8. 26.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 2024. 11. 21.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 2024. 11. 28. 본회의 의결 - 2024. 12. 20. 공포 - 2025. 1. 14. 해양수산부 훈령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시행

과학관 건립에 따른 법인 설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연히 예정된 필수 절차인바, 법 개정과 법인 설립 인가·등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당초 2024년 말 완공 및 개관을 목표로 했음에도 2024년 하반기에서야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2025년 초에 법인 설립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결국 2025년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운영비는 전액 불용되었으며, 정식 개관도 하지 못하여 대국민 해양 문화·교육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완공된 건물에 대한 시설장비유지 및 관리, 보안·경비 용역비, 청결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고정 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음.

관련 비용 부담을 위하여 같은 내역사업인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기 구축 사업내에서 일부를 세목조정하고, 나머지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의 공사비 및 감리비 집행잔액 중 6억 1,0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전용된 자산취득비의 대부분이 연말인 11월~12월에 집행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용²³⁾하여 집행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2025년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운영 관련 세목조정·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목-세목 코드	금액	목-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210-01)	1	임차료 (210-07)	냉온정수기 임차 등을 위해 세목조정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135	관리용역비 (210-15)	건물안전관리대행용역, 사무실 청소시설관리 전문인력, 방호· 미화원 투입 등을 위해 관리용 역비로 세목조정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3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화재 수신기, 사무실 전기·통신 설비 설치를 위해 시설장비유 지비로 세목조정
	임차료 (210-07)	3	관리용역비 (210-15)	시설관리 전문인력, 방호·미화원 투입 등을 위해 관리용역비로 전용

23) '25.7.24.에 2,000만원. '25.10.22.에 3,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음.

구분	목-세목 코드	금액	목-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40	관리용역비 (210-15)	시설관리 전문인력, 방호·미화 원 투입 등을 위해 관리용역비 로 전용
전용	공사비 (420-03)	178	시설부대비 (420-05)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 조달 수수료 납부
		6	일반수용비 (210-01)	소방시설 정기점검 및 저수조 청소 등 수수료 지출
		8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공공요금 및 보험료 등 납부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
		3	임차료 (210-07)	냉온정수기 등 전자제품 렌탈 을 위해 임차료로 전용
		9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 장비유지비로 전용
		194	관리용역비 (210-15)	시설관리 전문인력, 방호·미화 원 투입 등을 위해 관리용역비 로 전용
		20	자산취득비 (430-01)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등 장비 구 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전용
	감리비 (420-04)	34	자산취득비 (430-01)	전시품 품질유지 및 청결관리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로 전용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 국립청주해양과학관 관련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 】

(단위: 원, %)

구분	내역	금액(B)	B/A
5월	용역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소파· 책상 등 물품구매	139,800,970	22.5
7월	실내공간분할 칸막이 등 사무환경 구축	45,546,760	7.3
9월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컴퓨터, 소프 트웨어 등 물품구매	25,303,610	4.1
10월	용역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물 함 등 물품구매	8,552,150	1.4

구분	내역	금액(B)	B/A
11월	청소로봇 등 물품구매	46,448,650	7.5
12월	사무용소프트웨어 등 구매	356,225,470	57.3
계(A)		621,907,610	100.0

* 자료: 해양수산부

□ 이러한 사업 지연 및 예산 전용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2025년 성과지표를 보면, ‘해양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해양문화시설 인프라 구축률’ 등 두 개 항목 모두 달성도가 100%로 측정되었음.

‘해양문화시설 운영 효율화’는 해양과학관 등의 관람객 수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량지표로서 동 내역사업이 속해 있는 세부사업인 ‘해양문화 시설 건립 및 운영’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해양문화시설인프라 구축률’은 단순 공정률을 집계하는 지표로서, 공정률 준수는 사업목표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정상적인 개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공정률 달성만으로 성과를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효과적인 성과관리 지표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부는 개관 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말 불요불급한 예산 전용을 지양하는 한편, 사업의 실제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해양문화 시설 건립 및 운영 성과지표 】

성 과 지 표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해양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목 표	29.8만명 91.1점	30만명 91.1점	80만명 90.5점	80만명 90.5점	청주과학관 개관 에 따라 관람객 수 목표치 상향 설정	해양문화시설 관람객수 및 관람객 만족도
	실 적	87.5만명 90.2점	59만명 94점	112만명 90.9점	130만명 90.6점		
	달 성도	296.3% 99.9%	196.7% 100%	140% 100%	163% 100%		
해양문화시설 인프라 구축률	목 표	인천329% 청주 착공	인천 84% 청주 31%	인천 준공 청주 75%	청주 100%	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공정률 산출	해양문화시설 건립사업 공정률
	실 적	인천 45% 청주 착공	인천 84% 청주 31%	인천 준공 청주 94%	청주 준공		
	달 성도	136.3% 100%	100%	100% 125.3%	100%		

* 자료: 해양수산부

4)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 추진 근거 불명확 및 권역별 해양바이오 인프라 건립사업 집행 부진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양수산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은 출연금 교부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범위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권역별 해양바이오 인프라 건립사업(해조류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 연구센터,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의 예산 집행이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은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와 해양플랜트 등 신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해양 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46억 4,400만원 중 245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1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음.²⁴⁾

【 2025년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	24,578	24,578	66	-	24,644	24,507	36	101	16,185

24)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지원(2031-312)

(나) 검토의견

(1)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양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미흡

□ 내역사업인 ①타깃기업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②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③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에 사업출연금(350-02)을 교부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해양수산 유망 중소·중견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신기술 매칭, 창업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사업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양수산부는 진흥원에 대한 사업출연금의 근거로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를 제시하고 있음.

다만,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²⁵⁾는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2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지원

3.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한 지원,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창업·사업화 직접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²⁶⁾에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한 창업 등 지원(제5호)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등”에 맞춰져 있고, 현행법 제8조제1항²⁷⁾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등”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의미하므로 모법과 시행령 간 위임 체계 및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즉, 법률과 시행령상 “실용화” 표현이 연구개발사업등과 연계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유치, 신기술 매칭, 신산업 인큐베이팅, 민간 투자 연계 사업화 등 폭넓은 지원 사업에 대해 안정

2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20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①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 촉진 등의 사업
2.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자료 및 통계의 관리·활용사업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지원·육성사업
4.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5.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7)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적으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보완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 2025년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관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사업내용	비목	예산액	편성 근거
타깃기업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투자유치 및 유망신기술 매칭지원	사업출연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530	- 투자희망기업 지원 62개사 × 6.5백만 = 400백만원 - 유망신기술 매칭 지원 50개사 × 12.6백만 = 630백만원 - 해양수산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 통합 1,500백만 × 33.3%(1년차) = 500백만원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해양수산 전문 창업기획자 운영, 블루스타트업 지원 등 사업 운영을 통해 해양수산 유망창업기업 발굴,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		3,160	-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33개사 × 41.2백만 + 6개사×300백만 = 3,160백만원
민간투자기반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	해양수산 유망기업 개발제품 고도화 및 수출지원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실증, 해외인증, 홍보 등 지원		3,000	- 유망기업 사업화 지원 15개사 × 200백만 = 3,000백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 지원”이라는 점에서²⁸⁾, 일반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업무가 기관의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2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유사하게 농업 기술 분야의 창업·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경우 「농촌진흥법」 제33조²⁹⁾에서 설립 목적으로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한 것으로, 그 업무범위를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 사업화, 창업 활성화 지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진흥원이 추진 중인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관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과 예산 집행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에 명확한 지원 근거 및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9)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 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 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8.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사업 지원

(2) 권역별 해양바이오 인프라 건립사업 집행 부진

□ 내역사업인 ①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②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③해양바이오 인증 지원센터 사업은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조성하여 각 거점을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³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 50%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 권역별 해양바이오 인프라 건립사업 비교 】

구 분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해양바이오 인증 지원센터
위치	전남 완도군	경북 포항시	충남 서천군
목적	해조류로부터 활성소재를 추출·생산하여 안정적인 해양바이오 소재 공급 및 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해안의 해양자원과 메디컬 분야에 특화된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해양바이오 메디컬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한 의약품·기능성식품 관련 원료표준화, 안전성, 유효성 평가 등 인증지원
사업 기간	'21~'26년	'23~'27년	'23~'27년
총사업비	232.3억원 (국50%, 지50%)	340억원 (국50%, 지50%)	250억원 (국50%, 지50%)
규모	3,868㎡	5,176㎡	3,650㎡
'25년 실집행률	7.6%	0%	0%

* 자료: 해양수산부

3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동 사업들은 설계 변경 및 지연, 총사업비 증액 협의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모두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는바,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의 경우 2025년도에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7.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월되었으며,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와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는 실집행 없이 전액 이월되었음.

□ 각 사업의 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사업은 2024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24.9) 완료 후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24.12)를 거쳐 2025년 공사 재개 이후 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이월되었음.

다음으로, ②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등에 따라 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되고, 2024년에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으로 신규등록 협의를 진행('24. 3월~10월)한 이후 202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사업이 순연되었음.

마지막으로, ③해양바이오 인증 지원센터 사업은 타당성조사('22)와 건축기획용역('24) 이후 적정 공사단가 반영 및 규모 재산출을 통한 사업 계획 변경을 진행하고('24. 3월~10월) 202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진

행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음.

□ 해당 사업들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연례적인 예산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 지난 2024년에도 교부액의 대부분을 이월하여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음.³¹⁾

그럼에도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25년도에도 예산을 편성·교부한 것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³²⁾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2023~2025년도 권역별 해양바이오 인프라 건립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 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해조류 활성재	2021	500	500	500	500	-	500	398	500	398	102	-	79.6
	2022	5,000	5,000	5,000	5,000	102	5,102	83	5,000	-	5,019	-	-

31) 대한민국 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6.1.

3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내역 사업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 률 (C/A)
		본예산	추경 (A)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C)			
양돈생산 시설구축	2023	1,000	1,000	1,000	1,000	5,019	6,019	5,295	1,000	276	724	-	27.6
	2024	3,000	3,000	3,000	3,000	724	3,724	729	3,000	5	2,995	-	0.1
	2025	2,087	2,087	2,087	2,087	2,995	5,082	3,153	2,087	158	1,929	-	7.6
해양 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 센터	2023	310	310	310	310	-	310	10	310	10	300	-	3.2
	2024	1,217	1,217	1,217	1,217	300	1,517	315	1,217	15	1,202	-	1.2
	2025	2,195	2,195	2,195	2,195	1,202	3,397	76	2,195	-	3,321	-	-
해양 바이오 인증지원 센터	2023	350	350	350	350	-	350	24	350	24	326	-	6.9
	2024	1,768	1,768	1,768	1,768	326	2,094	326	1,768	-	1,768	-	-
	2025	2,729	2,729	2,729	2,729	1,768	4,497	1,768	2,729	-	2,729	-	-

*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진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를 고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향후 권역별 해양바이오 인프라 건립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5) 해양관광육성 :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실행 부진

-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대부분의 지역의 실행행률이 30~40%대에 그치거나 미집행되는 등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장애요인 점검 및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해양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341억 9,600만원 중 32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00만원은 불용함.³³⁾

【 2025년도 해양관광육성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관광육성	31,941	33,941	265	-	34,196	32,174	2,017	15	-

* 2026년 예산부터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사업('26년 예산 4,695백만원)으로 추진 중

33)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해양관광육성(2034-310)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해양레저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특화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 50%·지방비 50%)으로 추진되고 있음.

동 사업은 전국 해역을 특성별로 7개 권역으로 구분³⁴⁾하여 관광 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선정해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18년부터 전북군산·제주서귀포·강원 고성·전남보성·경기시흥·충남보령·경북경주·경남창원 등 총 9개소에 조성 중임.

【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①전북 군산시	②강원 고성군	③제주 서귀포	④전남 보성군	⑤경기 시흥시	⑥충남 보령시	⑦경북 경주시	⑧ 경남 창원시	⑨울산
사업 기간	'19~'25	'19~'26	'19~'26	'20~'27	'20~'26	'23~'29	'23~'28	'24~'28	'25~'30
총사 업비	387 (국비193)	484 (국비205)	440 (국비220)	447 (국비191)	406 (국비168)	400 (국비 200)	490 (국비 245)	430 (국비 215)	490 (국비 245)
위치	무녀도	송지호 해수욕장 일원	서귀포항 일원	울포 해수욕장 일원	거북섬 일원	원산도 일원	나정고운 모래해변 일원	진해구 명동 일원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사업 내용	살내 해양레저 체험관 캠퍼스	해상데크길, 살내다이빙장, 해상스카이 워크 등	계류시설 살내 다이빙장 및 교육장	서평다이빙풀, 물놀이시설 등 복합센터	계류시설, 복합 클럽 하우스, 살내 보관시설	계류시설 해양 레저 교육장, 해양레저 체험장 등	사계절레저 체험센터,안공 해수풀장 등	살내 해양레저 체험센터 등	살내 체험시설 레저선박계류 시설, 찬수시설
현황	개장 ('26.7.10)	착공 ('22.9)	착공 ('21.4)	착공 ('24.3)	착공 ('22.11)	선정 ('23.7)	선정 ('23.7)	선정 ('24.7)	선정 ('25.7)

* 자료: 해양수산부

34) 수도권(도시위락형), 서해안권(해양문화·생태관광), 다도해권(섬·연안·어촌 연계 체험), 제주권(수중레저), 한려수도권(휴양·힐링형 체류), 동남권(친수문화 선도), 동해안권(해양레저스포츠)

【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사업 2025년도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 업 수 행 자	세 부 산 출 내 역	예 산 액
제주 서귀포	▪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중 국비(200억원)의 잔여사업비 29억원에 대한 준공 소요 사업비 2,920백만원(100%)	2,920
전남 보성	▪ 총사업비 484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중 국비(210억원)의 잔여사업비 123억원에 대한 연차 계속 사업비 8,253백만원(67%) 반영	8,253
충남 보령	▪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중 국비(200억원)의 잔여사업비 180억원에 대한 연차 계속 사업비 500백만원(3%)	500
경북 경주	▪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중 국비(245억원)의 잔여사업비 225억원에 대한 연차 계속 사업비 500백만원(2%)	500
경남 창원	▪ 총사업비 43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중 국비(215억원)의 잔여사업비 215억원에 대한 연차 계속 사업비 2,000백만원(9.3%)	2,000
울산	▪ 총사업비 49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중 국비(245억원)의 잔여사업비 245억원에 대한 연차 계속 사업비 1,000백만원(4.1%)	1,000
계		15,173

* 자료: 해양수산부

이 중 전북군산·강원고성·경기시흥은 국비 지원이 종료되었고 2025년도 예산에는 제주서귀포, 전남보성, 충남보령, 경북경주, 경남창원, 울산 등 총 6개소의 해양레저관광거점에 대한 공사비와 해양레저관광거점 신규 설계비 지원을 위해 총 151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지역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경주를 제외하고 제주서귀포, 전남보성, 충남보령 모두 실집행률이 3~40%대에 그치고 있으며, 경남창원과 울산은 실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역	연도	교부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실집행률 (B/A)
제주 서귀포	2019	1,000	1,000	997.5	99.8
	2020	2,000	2,003	1,081	54.0
	2021	3,400	4,321	3,453	80.0
	2022	5,440	6,308	408	6.5
	2023	3,200	9,100	1,258	13.8
	2024	2,040	9,492	9,221	97.1
	2025	2,920	3,580	1,640	45.8
전남 보성	2020	1,000	1,000	400	40.0
	2021	2,000	2,600	2,428	93.4
	2022	2,500	2,672	260	9.7
	2023	1,800	4,196	1,875	44.7
	2024	1,410	3,597	507	14.1
	2025	8,253	11,341	3,661	32.3
충남 보령	2023	1,000	1,000	-	-
	2024	1,000	2,000	1,020	51.0
	2025	500	1,480	553	37.4
경북 경주	2023	1,000	1,000	1,000	100
	2024	1,000	1,000	1,000	100
	2025	500	500	500	100
경남 창원	2025	2,000	2,000	-	-
울산	2025	1,000	1,000	-	-

* 전년도 이월액 포함

* 자료: 해양수산부

□ 이러한 집행부진은 사업 초기부터 연례적으로 반복되어온 것으로, 동 사업의 연도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제주서귀포의 경우 2022년 6.5%, 2023년에는 13.8%에 불과하였으며, 전남보성 역시 최근 4년간(2022~2025년) 실집행률이 50%를 초과한 적이 없고 2022년에는 9.7%에 불과하였음.

집행 부진의 주된 원인은 설계 적정성 검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나 건설현장 내 분쟁 등으로, 전남보성의 기초공사 중 암석이 발견된 사례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 변수를 제외하면, 상당수 요인은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사전에 대비하거나 공사관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지역	건립일정				사업지연사유
	당초계획		실제현황(2026년 7월말)		
제주 서귀포	2019.12~ 2020.12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19.12~ 2023.10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관급자재 납품지연 (’21년도 철근 품귀, ’22년도 시멘트 생산 량 급감 등) ●건축공사 원도급사 자금문제 및 하도급사와 분쟁 등에 의한 공사 지연 등
	2021.4~ 2023.12	토목 및 건축공사	2021.4~ 2026.12	토목 및 건축공사	
전남 보성	2020.3~ 2020.12	기본계획 수립	2020.5~ 2020.12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등록,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중으로 현재 미착공
	2021.1~ 2022.6.	건축 및 토목 실시설계	2021.3~ 2023.11	실시설계	
	2022.12~ 2024.9	토목 및 건축공사	2023.12.~ 2027. 6.	건축공사	●공사부지를 지나는 하천 공사, 기초공사 중 지 하 암석 발견 등으로 인한 공사이연
충남 보령	2026.7~ 2027.6.	기본 및 실시설계	2026.7~ 2027.4.	기본 및 실시설계	●해당없음
	2027.7~ 2029.12.	토목 및 건축공사	2027.7~ 2029.12.	토목 및 건축공사	
경북 경주	2024.6~ 2025.8.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4.6~ 2026.9.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3년도 7월 공모 선정 후 12월 국비 교부로 인하여 1개년 사업 지연으로 SOC협의회 승인 득하고 1개년 사업 연장
	2025.9~ 2027.12.	착공 및 준공	2026.10~ 2028.12.	착공 및 준공	

지역	건립일정				사업지연사유
	당초계획		실제현황(2026년 7월말)		
경남 창원	2025.12~ 2026.1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2~ 2026.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및 사업계획 수립 소요 기간에 따른 사업 지연
	2027.1~ 2028.12.	토목 및 건축공사	2027.2~ 2028.12.	토목 및 건축공사	
울산	2026.8~ 2027.1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12~ 2028.3.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절차 동반 지연으로 사업 지연
	2028.2.~ 2030.12.	토목 및 건축공사	2028.6~ 2030.12.	토목 및 건축공사	

* 자료: 해양수산부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예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보다 철저하게 점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해상통신망(D-MF/HF) 업데이트 사업 추진시 어획량 보고 정책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등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발전법」에 따른 어획량 보고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D-MF/HF의 활용 방안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D-MF/HF 업데이트 추진시 어획량 보고 정책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다수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중복 설치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소요 및 어업인 관리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어선위치발신장비에 대한 중복 보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사업은 우리 어선(391홍진호) 북한 나포사건('17.10)을 계기로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으로, ①해상통신망(D-MF/HF) 운영·관리와 ②안전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현액 20억 1,300만원 중 20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음³⁵⁾.

35)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3132-306)

【 2025회계연도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연근해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2,013	-	-	2,013	2,008	-	5	4,068

나) 검토의견

1) 해상통신망(D-MF/HF) 업데이트 사업 추진시 어획량 보고 정책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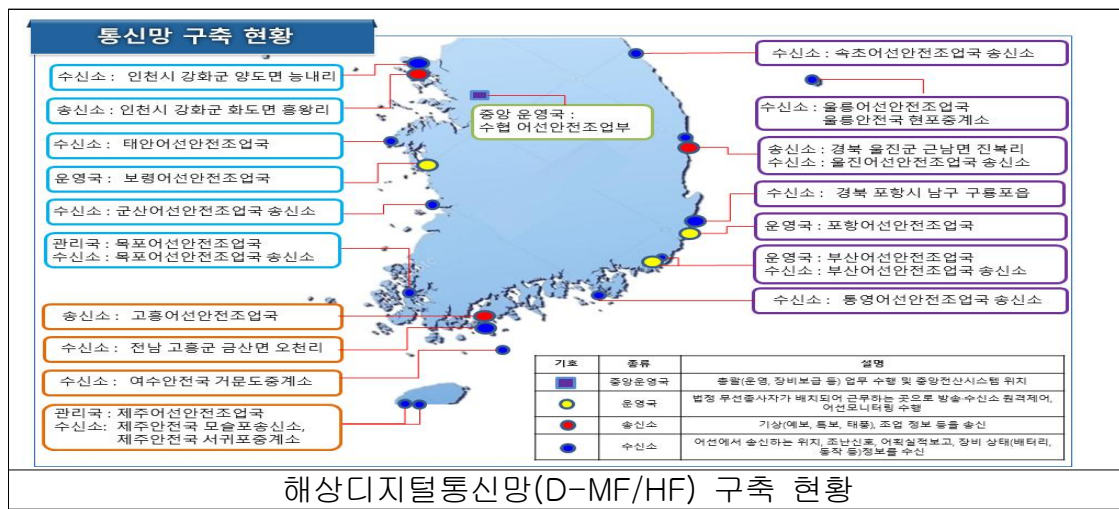
- 내역사업 해상통신망(D-MF/HF) 운영·관리는 100km 이상 원거리
해상에서 실시간 위치정보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한 해상통신망(송
신소 3개소·수신소 27개소)의 인건비·운영비·유지보수비 지원사업
(민간위탁)과 어획보고 기능개선 등 기보급 단말기의 성능개선을
지원하는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업데이트 지원 사업(민간
경상보조)으로 구성됨.

【 해상통신망(D-MF/HF) 운영·관리 사업 개요 】

- (목적) 동·서·남해 3개소에 기지국(송·수신소), 제어시스템 및 운영센터 등을
구축하고, 유일한 원거리(100km이상) 해상통신망(D-MF/HF) 운영·관리 지원을
통해 근해어선 월선, 조업구역 침범, 사고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추진
- (규모) 동·서·남해안에 구축한 송신소 3개소 및 수신소 27개소의 운영 관리 및
'20년부터 근해어선(1,897척)을 대상으로 D-MF/HF 설치어선 모니터링

- (주요기능)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100km 이상)의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통신망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조업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조난신호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한 어선사고 예방
- (기대효과) 해상통신망(D-MF/HF) 운영·관리를 통해 조난신호 청취 등 어선사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 조치하여 어선사고에 따른 어업인 생명보호 및 수색 구조 비용 등 예산 절감

- (설치현황) 송신소 3개소, 수신소 27개소



자료: 해양수산부

□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업데이트 지원 사업은 어종·어획량 등 어획보고 기능개선 및 어선위치정보 장비상태 모니터링 기능개선 등 기보급된 D-MF/HF 단말기의 성능개선을 위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10백만원 중 44백만원만 집행되었는데(실집행률 10.7%), 2025년 사업대상 1,950척 중 211척(10.8%)만 업데이트를 신청·완료하는 데 그쳐 사업실적이 저조함.

【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업데이트 기능 세부내용 】

1) 장비상태 모니터링

- 어선 위치정보에 침로와 속도 등 정보가 추가로 자동 전송
- 통신장비의 전원 모드(외부전원모드/배터리모드) 정보를 자동 또는 운영자 요청 시 정보 전송
- 통신장비와 GPS 연결 상태 정보를 자동 또는 운영자 요청 시 정보 전송
- 통신장비와 전원 연결상태 정보가 변경(AC 전원 ↔ 배터리 전환) 시 선박국에 알람 표시
- 사용자가 선박단말기의 상태 이력을 확인 가능
- 통신장비 상태를 자동으로 표시
- GPS, ATU, HPA(High-Power Amplifier), 주파수 합성기 및 송신부 상태 이상 발생 시 선박단말기 표시장치에 경고문구 및 경고음 발생
- 통신장비에서 ATU 튜닝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사용자가 통신장비에서 수동으로 위치발신이 가능
- 통신장비 상태 표시, 확인, ATU 튜닝 등을 위한 GUI 변경 등

2) 어획보고 기능개선

- 어획보고 시 어종 및 어획량과 인망 횟수를 추가
- 어종코드는 수협조업정보알리미 기준으로 개선
- 사용자의 편의성 및 개선된 어획보고 내용을 추가하여 어획보고 GUI 변경 및 개선
- 어획보고 내역(어종, 어획량)을 전자해도 상에 날짜별로 표시가 가능
- 어획보고 시 전채보고 기능 추가

자료 : 해양수산부

【 2025년도 해상통신망(D-MF/HF) 운영·관리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비 목	예산현액(A)	집행(교부)액	실집행액(B)	불용액	실집행률(B/A)
민간위탁사업비(320-02) ※ 통신망 운영·관리	1,319	1,319	1,319	-	100.0
민간경상보조(320-01) ※ D-MF/HF 업데이트 지원	410	410	44	366	10.7
합 계	1,729	1,729	1,363	366	78.8

주: 민간경상보조(410백만원)는 2024년 예산이 전액 이월되어 2025년에 재추진된 금액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업데이트 지원 사업의 저조 주요원인은 효율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휴대폰 전용 앱을 통한 어획보고가 원칙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어획량 보고 기능이 포함된 D-MF/HF 기기 업데이트의 자부담³⁶⁾(척당 9만원)에 대한 불만으로 업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함.

D-MF/HF 업데이트의 사항인 연근해어선의 어획량 보고 기능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³⁷⁾(이하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휴대폰 전용앱을 통한 어획보고로 일원화되도록 하고, D-MF/HF를 통한 어획량 보고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D-MF/HF를 설치한 근해어선은 D-MF/HF를 통한 어획보고 활용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연근해어업발전법」에 따른 어획량 보고 휴대폰 전용앱은 무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반면, 어획보고 기능이 포함된 D-MF/HF

36)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업데이트 시 기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데이트 비용의 30~40% 수준으로 자부담이 발생하며, 동 사업의 자부담률은 40%임

37)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2027.6.17. 시행 예정)

제9조(어획실적 및 전제실적의 보고 등) ①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어획실적과 전제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의 명칭·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주소
2. 조업업종, 조업시간, 조업해구[연근해어업이 이루어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업구역으로서 위도·경도 또는 소해구(小海溝)로 표시되는 구역을 말한다], 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3. 예정 양륙항 및 입항 일시
4. 어획물운반선의 명칭·번호 및 소유자의 성명·주소(어획물운반선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전제일시 및 어종별 전제량(전제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어획실적과 전제실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단말기 업데이트에는 1척당 9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하여 활용도가 떨어질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비용 부담 관련 어업인의 불만과 무상업데이트 요청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음.

【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와 「연근해어업발전법」에 따른 어획량 보고시 휴대폰 전용앱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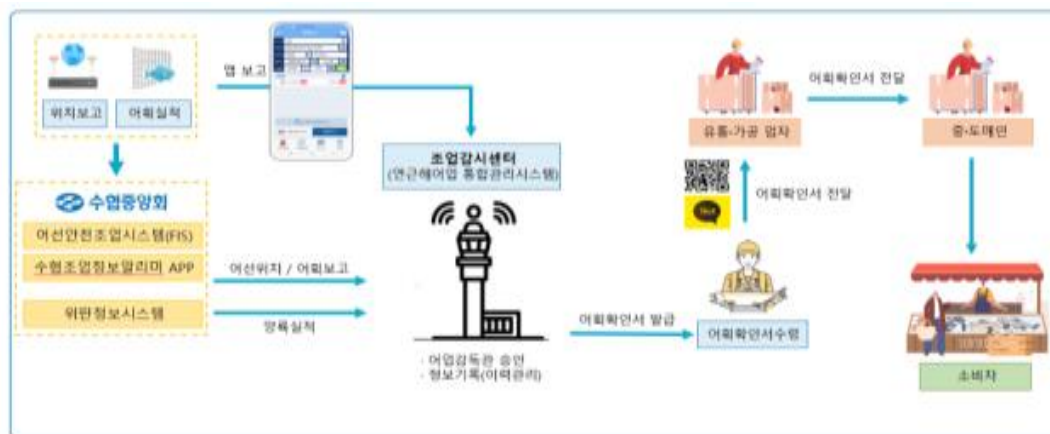
□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에 따른 어획량 보고 기능

[D-MF/HF 활용 어획량 보고 순서]

- 1) 메인화면에서 조업보고 버튼 터치
 - 2) 어종 추가(최대 어종 7종)
 - 3) 어획량 입력 : 어획량 100/1,000단위로 입력(단위:kg)
 - 4) 조업보고 : 조업상태 선택 및 어획량 입력 완료후 보고 버튼을 눌러 조업보고 실시
- ※ 위치보고 송신 주기에 맞춰 함께 전송

□ 「연근해어업발전법」에 따른 어획량 보고시 휴대폰 전용앱 기능

어획증명관리시스템(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어획·양륙 보고하고,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는 어획증명시스템(앱)을 마련 하여 시범운영 중('24. 下~)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연근해어선의 어획보고를 향후 대체로 휴대폰 전용앱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자부담을 들며 D-MF/HF를 업데이트할 유인이 크지 않으므로, 낮은 신청률

(10.8%)은 예견된 결과로 볼 수 있는바,

「연근해어업발전법」시행에 따른 어획량 보고를 휴대폰 전용앱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면서도 어획보고 기능 개선 사항을 담고 있는 D-MF/HF 업데이트 사업을 유상으로 추진한 것은 부처 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D-MF/HF의 어획량 보고 기능에 대하여 향후 “「연근해어업발전법」이행 TF”에서 어선 위치통지 의무 이행 시 어획량을 구두로 보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나, 「연근해어업발전법」에 따른 어획량 보고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D-MF/HF의 업데이트 실적 저조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발전법」에 따른 어획량 보고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D-MF/HF의 활용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D-MF/HF 업데이트 추진시 어획량 보고 정책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중복 보급 실태 점검 필요

□ 현재 근해어선에는 톤급·업종별 의무기준에 따라 V-PASS(출입항 신고), AIS(충돌예방), e-Nav(항행정보), D-MF/HF(원거리 위치·통신), VHF-DSC(근거리 통신) 등 다수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 주요 어선위치발신장치 비교 】

구분	핵심 성격	설치 대상	위치 발신	음성 통신	조난 발신	통신 거리	관제 기관
D-MF/HF (중단과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원거리 조업 어선용 장거리 통신	근해어선 19개 업종 (100km 이상 조업)	○	○	○	약 1,500km	해양수산부
VHF-DSC (초단파대 무선설비)	근거리 음성·조난통신 표준	2톤 이상	○	○	○	약 100km	수협
e-Nav / 바다내비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 단말기)	전자해도 기반 항행정보 + 위치발신 (V-PASS 기능 포함)	3톤 이상	○	○	○	약 100km	해양수산부
AIS (선박자동식별장치)	선박 간 충돌예방용 식별장치	10톤 이상	○	×	×	약 80km	해양수산부
V-Pass (선박패스)	자동 출·입항 신고용, 위치발신, SOS발신	전 어선 (다른 어선위치발신 장치 설치 시 제외 가능)	○	×	○	약 30km	해양경찰청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 척의 근해어선에도 4~5종의 장치가 중복 설치되어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 예산과 업데이트에 필요한 어업인 자부담³⁸⁾이 계속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주요 어선위치발신장치 중복 설치 현황 】

(단위 : 척)

	VHF-DSC	D-MF/HF	e-Nav	AIS	V-PASS
2톤 미만	649	0	295	44	15,147
2톤 이상	5,551	0	1,161	315	4,996
3톤 이상	12,004	63	5,592	5,302	9,609
10톤 이상	1,845	1,542	556	1,839	1,267
근해어선	2,125	1,576	780	1,911	1,501
원양어선	184	0	0	185	0

자료 : 해양수산부

【 주요 어선위치발신장치 사업 예산 】

(단위 : 백만원)

장비	2025년 예산	내용	2026년 예산	내용
D-MF/HF	1,319	- D-MF/HF 수신기 보장 : 70 - D-MF/HF 유지보수 : 226 - D-MF/HF 운영 : 231 - D-MF/HF 인건비 : 792	1,319	- D-MF/HF 수신기 보장 : 60 - D-MF/HF 유지보수 : 284 - D-MF/HF 운영 : 158 - D-MF/HF 인건비 : 817
V-Pass (선박패스)	2,446	- V-Pass유지보수 : 394 - V-Pass송·수신기 교체 : 2,052	971	- V-Pass유지보수 : 479 - V-Pass송·수신기 교체 : 492

38)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업데이트 시 기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업데이트 비용의 30~40% 수준으로 자부담이 발생함

장비	2025년 예산	내 용	2026년 예산	내 용
AIS	2,114	- AIS 기능개선 : 1,055 - AIS 유지보수 : 866 - AIS 운영비 : 193	2,324	- AIS 기능개선 : 1,265 - AIS 유지보수 : 866 - AIS 운영비 : 193
e-Nav (바다내비)	3,381	- e-Nav 기능개선 : 502 - e-Nav 유지보수 : 2,381 - e-Nav 운영비 : 498	3,381	- e-Nav 기능개선 : 502 - e-Nav 유지보수 : 2,381 - e-Nav 운영비 : 498
VHF-DSC	114	-VHF-DSC 시스템 유지보수 : 114	220	-광역통신망 유지보수 : 220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또한, 관제 주체가 해양수산부·수협·해양경찰청으로 삼원화되어 있고 근거법령도 어선법·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해양경찰청 고시로 분산되어 있어 관리 주체 및 법령의 다원화에 따른 정책 수립·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주요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현황 】

장비	의무 설치대상	근거법령	관제기관	설치율	의무 대상	설치 척수
D-MF/HF	근해어선 (19개 업종)	어선법 제5조의2	해양수산부	97.3%	1,950척	1,897척
V-PASS	전 어선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시 제외 가능)	어선법 제5조의2	해양경찰청	88%	59,626척	52,488척
AIS	10톤 이상	어선법 제5조의2	해양수산부	135.3% (39)	5,542척	7,500척
e-Nav (바다내비)	3톤 이상	지능형해상 교통정보법 제18조	해양수산부	489.9%	1,524척	7,466척
VHF-DSC	2톤 이상	어선법 제5조의2	수 협	89.3%	22,432척	20,049척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각각의 장비는 안전조업을 위해 보급 및 활용목적이 있어 필수적으로 설치가 필요하고, 위치발신 기능을 단일 단말기로 일원화할 경우 해당 장비가 고장 등으로 기능이 중지될 경우 어선의 위치소실에 따라 사고 여부 파악 및 사고 시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여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제 주체의 다원화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수협·해양경찰청 간 정보연계 및 통합관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고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어선사고의 예방을 위해 어선의 위치발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의 중첩 측면에서는 위치발신장치 각각의 목적 및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한 어선에 4~5종의 기기가 중복 설치되어 어업인의 관리 부담 및 어선위치발신장비의 관리를 위한 예산 지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운용 중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 중복 실태를 점검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다수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중복 설치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소요 및 어업인 관리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어선위치발신장비에 대한 중복 보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39) AIS의 경우 10톤 이상 어선이 의무 대상이나, 의무 대상이 아닌 어선도 AIS 주변 선박(상선 포함)의 실시간 위치파악이 가능하여 선박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해양수산부 의견)

【 참고자료 : 어선 무선설비 관련 각 장비별 주요 재원 및 기능 】

구 분		연안 100km 이내 통신망 및 무선설비				연안 100km 이상 통신망 및 무선설비			
		V-PASS	AIS	e-NAV	VHF-DSC	EPIRB	MF/HF	D-MF/HF	INMARSAT
장비명		선박패스장비	선박자동 식별장치	바다내비 선박 단말기	초단파 무선전화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중단파 무선전화	디지털 중단파 무선전화	국제해사 위성통신기구
추진기관		해경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	해경	해수부	해수부	IMO
운영조직		해경	해수부	해수부	수협	해경	수협	수협	위성대리점
통신거리(연안 기준)		30km	80km	100km	100km	전해역(위성)	1,500km	1,500km	전해역(위성)
서비스 시작연도		'12	'02	'21	'12	'92	'66	'22	'82
장비 기능 (서비스)	장비용도	출입신고(자동) 위치·조난발신	선박충돌예방	4G급 데이터 통신	위치·조난발신 음성통신	조난발신	원거리음성통신	위치·조난발신 원거리음성통신 안전정보 제공	위치 발신 (월 사용료 발생)
	설비구분	위치발신	위치발신	위치발신	무선설비/위치발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위치발신	위치발신
	위치정보	실시간	실시간	1초 단위	10분 단위	X	X	10분 단위	10분 단위
	조난발신	○(수동)	X	○(수동)	○(수동)	○(자동)	X	○(수동)	X
	음성통화	X	X	○	○	X	○	○	○ (단말기, 이용료별도)
통신 장비 설치 보급	의무설치	전 어선 * 무동력어선 등 제외(타 어선위치 발신장치 설치시 제외)	10톤 이상 어선	3톤 이상 선박 ('21.1.30. 이후 수입되거나 신조선박)	2톤 이상 모든 어선	24m이상 어선, 낚시어선(13인 ↑)	5톤 이상 어선 (D-MF/HF 설치시 제외)	근해어선 (19개업종)	조업자제해역 출어선
	단말기	100~200만원	100~175만원	300~308만원	110~115만원	110만원	295~420만원	400만원	200~340만원
	예산지원	○	○	○	○	○	○	○	X
	보조율(%)	국고 30 · 지방 30	국고 30 · 지방 30	국고 50	국고 30 · 지방 30	국고 30 · 지방 30	국고 30 · 지방 30	국고 70	-
	설치척수(척) *	53,684	8,871	7,888척	21,342	3,123	12,827	1,918	467
근거법		어선법 제5조의2 (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법 제5조의2 (어선위치발신장치)	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단말기)	어선법 제5조 (무선설비)	어선법 제5조 (무선설비)	어선법 제5조 (무선설비)	어선법 제5조의2 (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법 제5조의2 (어선위치발신장치)
통달거리		어선 통신장비 통달거리 휴대폰 [20~30km] V-Pass [30~40km] AIS / e-Nav / VHF-DSC [100km 이내] D-MF/HF DSC [연근해 전해역]							

7)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예산 비목 부적정 및 국고지원 수준의 적정성 여부 검토 필요

- 해양수산부는 ①사업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②조합 감사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고지원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 중앙회에 위임·위탁한 업무의 수행과 수협 조합원에 대한 지도·경제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①단위수협감사지원, ②어업경영통계조사, ③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지원, ④유통정보시스템 운영지원, ⑤어촌계통계조사, ⑥어촌지역활성화조사연구, ⑦차세대바다로시스템구축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29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⁴⁰⁾

【 2025회계연도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2,900	-	-	2,900	2,900	-	-	2,900

40)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3431-301)

나) 검토의견

□ 단위수협감사지원 내역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3항⁴¹⁾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단위수협(회원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위탁받아 정부를 대신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 수행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⁴²⁾으로,

전국 91개 단위수협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사전 부실을 예방하며, 경영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일선 수협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5년 동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총 90억 1,500만원으로, 수협중앙회 자부담 80억 1,500만원, 국고보조 10억원으로 국고보조 지원율은 11.1%임.

4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감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2조(감독권의 위임·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업무(이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고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3. 제61조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42) 【단위수협감사지원 사업 내용】

- (사업내용) 회원조합의 회계, 재산, 조직, 업무집행상황 전반에 대한 경영감사업무 중 정기감사(2년에 1회)를 제외한 **수시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 91개조합, 상호금융점포 523개, 위판장 213개, 급유소 142개, 냉동·가공시설 142개, 물류센터 7개, 수산물직거래사업장 42개('25년 기준 수시감사 142회 실시)

【 2025년 단위수협감사지원 내역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산 출 내 역	사 업 비			
			계	국 고 보 조	수 협 자부담	지 원율
합 계			9,015	1,000	8,015	11.1
인건비		정규직 및 비정규직	6,119	1,000	5,119	16.34
운영비			2,896	-	2,896	-
세부 내역	여비	정기(45개), 수시감사 등	686	-	686	-
	수수료	조합감사위원 활동비, 감사처분 소송비 등	920	-	920	-
	행사비	조합감사위원회 운영비, 감사업무 역량강화 교육 등	77	-	77	-
	포상금	사고예방 우수, 감사제도 개선 등	27	-	27	-
	전산 운영비	전산운영비	220	-	220	-
	기타	교육훈련비, 감가상각비, 인쇄비,수선비,통신비 등	966	-	966	-

자료: 해양수산부

□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 결과, 시정명령 건수는 2023년 63건, 2024년 104건, 2025년 53건으로, 임직원 징계 건수는 2023년 31건, 2024년 33건, 2025년 33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실우려 수협도 2023년 2개에서 2024년은 6개, 2025년에는 15개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단위조합의 징계, 시정명령 및 부실우려수협 현황 】

(단위 : 건, 개)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징계 건수	24	15	31	33	33
시정명령 건수	56	43	63	104	53
조치 건수	54	42	55	75	12
부실우려 수협 수 (지정년도 기준)	3	2	2	6	15

자료: 해양수산부

91개 단위수협의 건전성 지표(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⁴³⁾)를 살펴보면, 자기자본비율은 2021년 4.41%에서 2025년 3.24%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율은 같은 기간 각각 1.95%에서 6.51%, 1.64%에서 5.72%로 상승하여 단위수협의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으로 단위수협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임.

43). 자기자본비율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상승하며, 2% 미만이면 건전성 취약으로 평가됨.
 ·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여신 중 고정 이하에 해당하는 고정(90일 이상 연체)·회수의문·추정손실 여신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상환가능성이 낮은 부실 위험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임. 수치가 높을수록 미래 손실 인식 가능성이 커지며, 6% 초과시 부실 누적 신호로 평가됨.
 · 연체율은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 비율로 지금 상황이 지연 중인 잠재부실을 나타내며, 12% 초과시 현금흐름 악화 신호로 유동성 위험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5년간 단위조합의 건전성지표 지표 현황 】

(단위: %)

구 분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2021년	4.41	1.95	1.64
2022년	4.25	2.04	2.00
2023년	3.99	4.28	4.14
2024년	3.34	7.17	6.74
2025년	3.24	6.51	5.72

자료: 해양수산부

□ 한편, 최근 국고 보조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까지 12억원, 2024년 11억원, 2025년과 2026년의 경우 10억원으로, 국고보조율은 2021년 16.5%에서 2025년 11.1%, 2026년의 경우 9.7%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감사에 필요한 총비용은 2021년 72억 5,400만원에서 2026년 103억 4,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고보조 비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⁴⁴⁾.

44) 국비지원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이유는 감사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총 소요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비는 전년 예산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보조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사업의 경우 동 법 시행령 [별표 1] 122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있다는 설명임
- 2025년 국고보조율 11.9%는 총사업비(8,389백만원) 대비 국고지원액(1,000백만원)을 사후적으로 나눈 비율에 불과하여, 법령상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임의로 변동될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하므로 국고보조율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류,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

【 2025년 단위수협감사지원 내역사업의 국비 지원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중앙회(A)	6,054	6,159	6,345	7,189	8,015	9,346
국비(B)	1,200	1,200	1,200	1,100	1,000	1,000
합계	7,254	7,359	7,545	8,289	9,015	10,346
보조율 (B/A+B)	16.5	16.3	15.9	13.3	11.1	9.7

자료: 해양수산부

□ 또한, 동 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3항⁴⁵⁾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단위수협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일부를 위탁받아 정부를 대신하여 감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감독사무를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시키는 것에 해당함.

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예산처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4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감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 집행지침」”)은 이러한 유형의 경비를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분류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제반 비용”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법률에서 규정한 사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 사업비가 아닌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집행되고 있어 사무의 성격과 예산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세출예산은 그 성질에 맞는 과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⁴⁶⁾.

특히 위탁·대행 사업은 국가사무의 제반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보조사업으로 처리할 경우 위와 같이 보조율(11.9%)만큼만 지원하게 되어 국가가 위탁한 감독사무의 비용 대부분을 수협중앙회에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위탁·대행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른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위탁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산

46)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수협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편성시 적정 수준의 보조율을 설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데, 비목을 위탁비로 변경하기 위해서도 위탁의 범위가 명확해야 그에 따른 경비 산정이 가능함 향후, 조합감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감사 지원 필요성 및 적정 지원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①사업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②조합감사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고지원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 행정 절차 사전 검토 부족에 따른 실행 부진

- 해양수산부는 사전 검토 등 부족으로 지연된 옥계 등 사업지와 향후 추진할 완도, 진해 등 후속 사업지에 대해 필수 법적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체계를 정례화하여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순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제협약(MARPOL)⁴⁷⁾에 따라 1996년부터 1997년 동안 무역항 내 의무설치되어 운영 중인 선박 폐유수용시설의 현대화(리모델링)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49억 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⁴⁸⁾.

【 2025년도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4,901	4,901	-	-	4,901	4,901	-	-	2,616

47) MARPOL(Marine Pollution treaty)은 1973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정한 해양오염 방지협약임. 「MARPOL 부속서 I」(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에 따르면 각 당사국 정부는 항만에 유성잔류물 및 유성혼합물을 수용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48)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5067-301)

(나) 검토의견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폐윤활유, 액상슬러지 등 해양오염물질을 수거·정화하는 폐유수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처리능력 저하, 악취 및 작업자 안전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사업임.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개요 】

구 분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배경	국제협약*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무역항 내 의무 설치·운영('96~) 중인 선박폐유 수용시설**의 현대화 추진 *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 부속서 I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 선박, 해양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선저폐수, 액상슬러지, 폐윤활유, 기름걸레 등)의 수거																																										
사업목적	노후화된 폐유수용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수거물질 저장용량 및 선저폐수 처리성능 향상, 악취 저감, 근로자 안전 확보 추진																																										
사업기간	2021년~2027년																																										
사업대상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96~'97)하고 해양환경공단에 운영 위탁 중인 13개 사업소 <table><tr><th>구분</th><th>광양</th><th>마산</th><th>목포</th><th>평택</th><th>통영</th><th>군산</th><th>서귀포</th><th>사천</th><th>옥계</th><th>완도</th><th>진해</th><th>속초</th><th>제주</th></tr><tr><td>형태</td><td colspan="5">신축</td><td colspan="6">리모델링</td><td>-</td><td>-</td></tr><tr><td>기간 (계획)</td><td colspan="3">'21~'22년</td><td colspan="2">'22~23년</td><td colspan="2">'23~24년</td><td colspan="2">'24~26년</td><td colspan="2">'25~27년</td><td>-</td><td>-</td></tr></table> * 보류대상 : 속초(민원에 따른 선저폐수처리 및 해양방류 가동 중단), 제주(지자체 부지계획 수립에 따른 보류)	구분	광양	마산	목포	평택	통영	군산	서귀포	사천	옥계	완도	진해	속초	제주	형태	신축					리모델링						-	-	기간 (계획)	'21~'22년			'22~23년		'23~24년		'24~26년		'25~27년		-	-
구분	광양	마산	목포	평택	통영	군산	서귀포	사천	옥계	완도	진해	속초	제주																														
형태	신축					리모델링						-	-																														
기간 (계획)	'21~'22년			'22~23년		'23~24년		'24~26년		'25~27년		-	-																														
총사업비	46,380백만원																																										

구 분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안)	합계
	사업비 (백만원)		900	18,000	11,918	5,445	4,901	2,616	2,600	46,380
	대상	설계	목포·마산 ·광양	평택·통영	군산· 서귀포	옥계·사천	완도·진해	완도·진해	-	11개소
		공사	-	목포·마산 ·광양	평택·통영	군산· 서귀포	옥계·사천	옥계·사천 완도·진해	완도·진해	11개소
국비 보조율	100%									

* 자료: 해양수산부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대상 시설 대부분은 1996년부터 1997년 사이에 설치되어 30년 가까운 기간이 경과된 상태로, 법정 처리용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 기능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⁴⁹⁾에 의거하여 13개 무역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차수별로 2년(설계 1년, 공사 1년) 단위의 순차적인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추진 중임.

2025년도의 경우에는 완도·진해의 실시설계 및 옥계·사천의 건축공사 추진을 위한 49억 100만원을 해양환경공단에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이 중 30억 4,000만원(62%)이 실행되고, 18억 6,100만원(38%)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4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상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도·진해 지역의 실시설계 예산(2억 1,900만원)은 100% 집행된 반면, 옥계·사천 지역의 공사 예산(46억 8,200만원) 중 28억 2,100만 원만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되면서 전체 실집행률을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남.

【 2025년도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합계	4,901	-	4,901	3,036	1,865	-	61.9
설계(완도·진해)	219	-	219	215	4	-	98.2
건축공사(옥계·사천)	4,682	-	4,682	2,821	1,861	-	60.3

* 자료: 해양수산부

건축공사비가 이월된 것은 당초 2025년 중 옥계 노후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야 했으나, 건축허가가 2025년 12월로 지연되면서 공사 착공이 2026년 3월로 미뤄졌기 때문임.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노후폐유수용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 사업소 부지 내에서 운영 중인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검토 중 해당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결정을 요청하느라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폐유수용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이자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⁵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⁵¹⁾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필수적임.

따라서, 건축허가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⁵²⁾ 및 실시계획 인가⁵³⁾에 앞서 도

50)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다. 지원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항만법 시행규칙」 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9.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

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

옥계 시설 현대화는 이미 2021년에 사업 시행이 결정되어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업 착수 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초조사나 토지·건축 관련 법적 검토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도시계획시설 누락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공사 계약(2025년 4월) 후 건축허가 단계에서 이를 인지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사업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음.

그간 동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법령 개정 및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매년 사업이 지연되어 설계·건축 공사비의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특히 이월 사유의 대부분이 사전 예측이 가능한 지자체 인·허가나 주관부처의 시행규칙 개정 문제 등이었다는 점, 연례적 사업지연으로 2024년부터는 사업 기간을 3년(설계 1.5년, 공사 1.5년)으로 한 차례 연장·조정했음에도 2025년도에 또다시 이월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전 행정절차 검토 및 전반적인 사업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완도, 진해 등 후속 사업지에 대해 공사 계약 및 건축허가 등 필수 법적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지자체 및

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체계를 정례화하여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순연을 미연에 방지하여 목표기간인 2027년까지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대상지	구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사유
2021	목포·마산·광양	설계	900	615	285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처리기간 소요
		소계	900	615	285	
2022	목포·마산·광양	설계	285	285	-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처리기간 소요
	목포·마산·광양	건축	17,400	512	16,888	
	평택·통영	설계	600	471	129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7.)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소계	18,285	1,268	17,017	
2023	목포·마산·광양	건축	16,888	16,888	-	
	평택·통영	설계	129	128	-	
	평택·통영	건축	11,600	4,531	7,069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2.7.) 후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서귀포·군산	설계	318	236	82	후속 인허가에 소요되는 집행비용 이월
		소계	28,935	21,783	7,151	
2024	평택·통영	건축	7,069	6,826	-	집행잔액 반납
	서귀포·군산	설계	82	3	-	집행잔액 반납
	옥계·사천	설계	315	271	-	집행잔액 반납
	서귀포·군산	건축	5,129	2,898	2,230	설계 보완 및 인허가 절차 진행으로 순연
		소계	12,595	9,998	2,230	
2025	서귀포·군산	건축	2,230	2,229	-	집행잔액 반납
	옥계·사천	건축	4,682	2,821	1,861	건축허가 결정 지연에 따른 절차 순연
	완도·진해	설계	219	216	3	2차년도 설계 추진을 위한 이월
		소계	7,131	5,266	1,864	

* 사업시행주체(해양환경공단)의 이월액·불용액임

* 자료: 해양환경공단

9)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전 예산 편성 부적절

- 법적 근거 마련 전 예산 편성으로 인해 부적절한 세목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26년 사업의 집행 부진이 우려되는바, 해양수산부는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하는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불가피하게 법률안 심사와 예산안 편성이 병행되는 경우 법률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집행을 유보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은 선박연료공급선 질량유량계 설치를 지원하고 국내 선용품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개발된 선용품 코드의 표준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4억 7,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⁵⁴⁾

【 2025년도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1,470	1,470	-	-	1,470	1,470	-	-	4,450

* 자료: 해양수산부

54)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6133-355)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은 선박연료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량 분쟁과 면세유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항만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선에 질량유량계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에는 정량공급 표본조사 및 질량유량계 운영 효과검증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1억원과 급유선 4척의 질량유량계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10억원이 편성되었음.

【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예산 편성근거 】

세사업 명	구분	편성 근거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	본예산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00백만원 가. 정량공급 표본조사 및 질량유량계 운영 효과검증 1식 (100백만원) · 효과검증 위탁용역(한국석유관리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1,000백만원 가. 질량유량계 설치·운영 시범사업 (1,000백만원) · 총 4척×250백만원(질량유량계 2개+부속설비) ×보조율 100%(시범사업)

* 자료: 해양수산부

□ 동 내역사업은 질량유량계 설치의무, 정량공급 표본조사 및 한국석유관리원への 업무위탁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 현재까지 관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⁵⁵⁾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해당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이에 해양수산부는 당초 한국석유관리원에 정량공급 표본조사 및 질량유량계 운영 효과검증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편성한 민간위탁 사업비 1억원을 업무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민간경상보조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 이·전용 등 세부내역 】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6133-355)	민간위탁 사업비 (320-02)	100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6133-355)	민간경상 보조 (320-01)	민간위탁의 근거인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지연으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변경

* 자료: 해양수산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⁵⁶⁾에 따르면 민간보조금은 민간의 사무·사업을 국가가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 편성하고, 국가의 사무를 민간에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55) 정부가 2024년 7월 제출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와 측정결과 보관을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측정기기 설치 여부와 측정결과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5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102p.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정량공급 표본조사 및 질량유량계 운영 효과검증은 정량공급제도의 도입·운영을 위하여 정부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사업의 실질과 예산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볼 수 있음.

- 더욱이 2026년도 질량유량계 설치지원 사업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선사에게 질량유량계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설치비의 50%를 선사가 부담하도록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025·2026년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사업 비교 】

구 분	2025년	2026년
지원목표	4척	24척
국고보조율	100%	50% ⁵⁷⁾
선사 자부담	없음	50%
법률상 설치의무	없음	없음
사업실적·신청현황	계획물량 4척 지원	상반기 7척 신청

* 자료: 해양수산부

2026년에는 법률상 설치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물량을 6배로 확대하면서 선사에게 적당 1억 7,5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57) 질량유량계 2개 및 부속설비 비용 3억 5,000만원의 50%인 1억 7,500만원 지원

질량유량계 설치가 선사의 법적 의무라면 일정한 자부담을 전제로 사업수요를 산정할 여지가 있으나, 설치 여부가 전적으로 선사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부담을 요구하면서 24척의 참여를 전제로 예산과 사업 물량을 산정한 것은 사업수요의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업설계로 볼 수 있음.

- 이처럼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사업이 법률 제·개정 전에 시행될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수요가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아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아울러, 법률의 제정·개정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정부가 특정 법률안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여 제도를 도입하거나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적 판단을 예단하고 입법권한과 예산심의권한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업무수행 체계가 확정된 후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법률안 심사와 예산안 편성이 병행되는 경우에도 법률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집행을 유보하거나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연도별 보조율의 급격한 변동 방지 필요

- 해양수산부는 연도별 예산 사정에 따라 보조율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고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율과 지원한도 기준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은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6~’35)」을 수립하고 친환경 내항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03억 5,000만원 중 10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을 불용하였음.⁵⁸⁾

【 2025년도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10,350	10,350	-	-	10,350	10,328	-	22	16,500

* 자료: 해양수산부

58) 회계(기금)-세부사업 : 일반회계-친환경선박 보급 촉진(6332-315)

(나) 검토의견

□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내역사업은 친환경 내항선박을 건조하려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선박 건조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의 건조 지원 척수 및 성과지표인 CO₂ 감축 예상량이 저조한 측면이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건조 지원 척수는 2025년에 단 2척(당초 3척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이 중 1척이 선정 이후 선박 건조 포기)에 불과하여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고,

또한 CO₂ 감축 예상량 역시 2,195톤에 불과하여 목표(5,173톤) 대비 달성도가 42.4%에 불과하며, 전년도 실적(6,105톤)에 비해 실적이 60% 이상 감소하였음.

【 연도별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실적 】

(단위: 척)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 척수	3	5	6	6	2

* 자료: 해양수산부

【 2022~2026년 CO₂ 감축 예상량 목표 및 실적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톤)	3,066	4,973	5,072	5,173	5,276
실적(톤)	4,737	1,632	6,105	2,195	-
달성도(%)	154.5	32.8	120.4	42.4	-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 지원 선박 정보 】

연번	적용기술	총톤수	인증등급	선가(백만원)
1	메탄올추진	5,600	2	29,984
2	LNG추진	17,800	2	126,800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 동 사업의 지원 척수 및 성과 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난 주된 원인은 보조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급격히 낮아져 선사의 사업 참여 유인이 약화된 데 있는 것으로 보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신조선가 200억원 이하 선박의 경우 인증 1등급 기준 최대 30%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척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반면 2025년에는 선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선가가 높아질수록 보조율이 낮아지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최대 보조율이 30%에서 11%로 대폭 하락하였으며, 최대 보조율 적용 대상 선박 역시 ‘신조선 선가 200억원 이하 선박’에서 ‘신조선 선가 25억원 이하 선박’으로 축소됨.

【 2022~2024년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

신조선 선가	등급	보조율(최대)	최대 한도
200억 이하	1등급	선가의 30%	50억/척
	2등급	선가의 28%	50억/척
	3등급	선가의 26%	50억/척
200억 초과 300억 이하	1등급	선가의 20%	50억/척
	2등급	선가의 18%	50억/척
	3등급	선가의 16%	48억/척
300억 초과	1등급	선가의 10%	50억/척
	2등급	선가의 8%	50억/척
	3등급	선가의 6%	50억/척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2024. 1. 19. 개정) [별표 1]

【 2025년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

선가	기준 보조율	선가	기준 보조율
25억원 이하	10%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6.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9.5%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5%
50억원 초과 75억원 이하	9.0%	5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5.0%
75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8.5%	6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4.5%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8.0%	7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4.0%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7.5%	8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5%
200억원 초과 250억원 이하	7.0%	1,000억원 초과 1,200억원 이하	3.0%
2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6.5%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2025. 8. 5. 개정) [별표 1]

** 1등급 보조금: 선가 × 선가별 기준보조율 × 110%

2등급 보조금: 선가 × 선가별 기준보조율 × 100%

3등급 보조금: 선가 × 선가별 기준보조율 × 90%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보조율을 낮춘 이유에 대하여 2024년에 선가가 높은 선박이 지원대상에 포함⁵⁹⁾되면서 향후 연차별로 지급하여야

59) 2024년 지원대상 선박 6척 중에는 선가가 약 1,224억 9,000만원인 LNG 추진선박과 약 299억 8,000만원인 메탄올 추진선박 등이 포함되었음.

하는 보조금 소요가 증가하였고, 기존 선정 선박에 대한 지급액을 제외한 예산 범위에서 신규 선박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율을 하향 조정하고 최대 지원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업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기존 선정 선박에 대한 장래 지급소요로 인해 신규 신청 선박의 보조율을 단기간에 크게 인하하는 방식은 사업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사업 성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보조율이 연도별 예산 사정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경우 사업대상자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선사가 보조율이 낮은 연도에는 신청을 미루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⁶⁰⁾

한정된 예산제약 내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되나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보조율과 지원 한도 등 지원단가의 기준은 가급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연도별 지원물량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연도별 예산 사정에 따라 보조율이 급격히 변동하지 않고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율 및 지원한도 기준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60) 참고로, 2026년 1차 공모에서 2025년과 동일한 보조율로 공모한 결과 사업을 신청한 선사가 없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후 2026년 7월 13일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보조율을 150억원 이하 선가의 선박에 대해 최대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한 후 2차 공고('26.7.27.)를 실시한 바 있음.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재산수입 20억 9,800만원, 경상이전수입 294억 4,3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억 4,600만원 등 321억 7,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경상이전수입 등으로 830억 5,700만원이 증가한 1,152억 2,8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1,152억 2,800만원 중 재산수입으로 98억 3,300만원, 경상이전수입으로 888억 3,100만원 등 총 1,020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및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해 132억 1,5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2,098	12,516	9,833	-	2,683	7,735
토지대여료	-	2	1	-	1	1
기타관유물대여료	8	-	-	-	-	△8
기타재산이자수입	2,090	12,514	9,832	-	2,682	7,742
경상이전수입	29,443	99,363	88,831	-	10,531	59,388
과태료	79	145	120	-	25	41
징계부가금	-	217	-	-	217	-
과징금	282	5	5	-	0	△277
변상금	-	117	-	-	117	-
위약금	75	795	92	-	703	17
가산금	-	52	1	-	51	1
기타경상이전수입	29,007	98,032	88,613	-	9,418	59,60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46	351	351	-	-	△95
면허료및수수료	259	312	312	-	-	53
실습수입	22	-	-	-	-	△22
기타잡수입	165	39	39	-	-	△126
관유물매각대	184	-	-	-	-	△184
기타고정자산매각대	163	-	-	-	-	△163
토지매각대	21	-	-	-	-	△21
정부내부수입및기타	-	3,000	3,000	-	-	3,000
일반회계전입금	-	3,000	3,000	-	-	3,000
합 계	32,171	115,228	102,014	-	13,215	22,365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1조 7,641억 4,2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37억 4,4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8,408억 8,6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2,419억 5,600만원,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716억 7,000만원,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4,108억 2,600만원,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5,696억 9,400만원, 어촌어항활성화 4,161억 7,900만원, 원양협력 581억 20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110억 300만원, 어촌어항활성화 73억 8,100만원 등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202억 4,500만원,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185억 4,000만원 등을 불용처리함.

【 2025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240,464	2,121	-	3,000	265 △265	245,585	241,956	321	3,309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71,749	322	-	0	-	72,071	71,670	0	401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428,295	12,101	-	0	30 △30	440,396	410,826	11,030	18,540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540,392	50,073	-	0	1,261 △1,261	590,465	569,694	527	20,245
어촌어항활성화	421,290	6,191	-	0	3,487 △3,487	427,481	416,179	7,381	3,920
원양협력	61,952	2,937	-	0	230 △230	64,889	58,102	5,723	1,063
합 계	1,764,142	73,744	-	3,000	5,274 △5,274	1,840,886	1,768,427	24,981	47,478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수출바우처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및 사업 정보 접근성 개선 필요

- 해양수산부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등록·공개 및 이행실적 점검, 장기 미공급 업체 정비 등 최소한의 품질관리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은 K-Sea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하여 국내 수산물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경쟁력강화, ②해외시장확대, ③물류인프라 구축, ④해외시장분석센터, ⑤김산업육성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현액 545억 6,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⁶¹⁾.

【 2025회계연도 수산물해외시장개척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54,563	-	-	54,563	54,563	-	-	79,098

61)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수산물해외시장개척(2837-300)

나) 검토의견

- 경쟁력강화 내역사업 중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 규모에 따라 초보·성장·고도화바우처로 구분하고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까지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성장사다리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수산식품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려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이며, 2025년 예산 116억 2,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2025년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개요 】

구분	초보바우처	성장바우처	고도화바우처
지원업체	40개소 내외	39개소 내외	21개소 내외
지원자격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1만불~50만불 미만 그리고 매출액 5억원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최근 3년간 평균 수산물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지원한도	50백만원	100백만원	220백만원
	* 서비스 수행기관은 지원한도 내에서 업체 자율 신청		
지원비율	지원한도 내 총 사업비의 80%(중소기업), 70%(중견기업)		
지원기간	- 매년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연속지원 업체로 선정된 업체만 차년도 연속지원 - 사업 추진기간 : 협약체결일 ~ '25.10.31 * 정산 신청 '25.10.31일까지		

자료 :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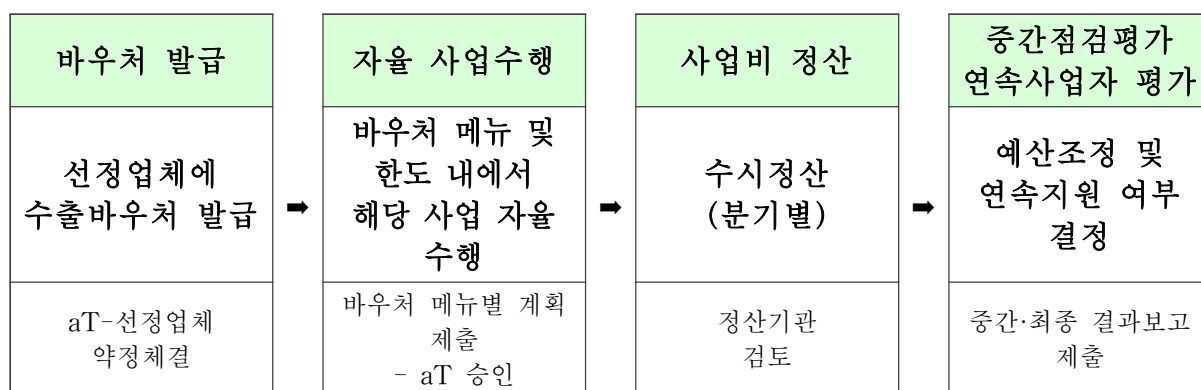
【 2025년 수산식품 수출바우처(메뉴판) 】

단계	사업 메뉴	주요 내용
수출 준비	비관세장벽 컨설팅	▪ 통관 법률, 관세, 해외법인 설립지원, 현지어 표기법, MPA대응 등
	바이어 매칭	▪ 현지 업체나 플랫폼을 통한 바이어 매칭 수수료 지원
	AI 활용	▪ AI 활용 수출 관련 소프트웨어 이용료 지원, 컨설팅 비용 지원 등
	해외시장조사	▪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국가별, 품목별 해외시장 정보조사 등
	수출실무 교육	▪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외부교육 수강
	포장디자인 개발	▪ 현지 트렌드에 맞는 수출용 포장패키지 디자인 비용 등
	현지 수입등록 등 지원	▪ 수출국 현지 수입통관 규정에 맞는 제품등록비, 라벨링, 식품검사비용 등
	지적재산권 출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국제인증 취득	▪ 해외 식품 규격 및 수출 전략인증 취득 지원
	통·번역 및 서류대행	▪ 비즈니스 통번역 및 수출선적·통관 계약 대금결제 등 서류대행 지원
	샘플통관운송비	▪ 해외 바이어 대상 무상샘플 송부 시 통관·운송료 지원
	무역애로 해소	▪ 수출 해상, 항공 운임비 지원(단계별 국고보조금의 한도 설정)
	수출 포장재 제작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용 포장재 제작 지원(보조금의 10% 한도)
해외 진출	수출용 브랜드 개발	▪ 수출용 브랜드 개발 용역비(BI, CI 제작 등)
	유통업체 판촉	▪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홍보
	온라인 판촉	▪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온라인 판촉 홍보
	해외 마켓테스트	▪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식) 홍보 및 마켓테스트
	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	▪ 국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비용 및 수출 상담회 비용
경쟁력 강화	유망상품화	▪ 신규 수산가공식품 개발용역비, 전문가 자문비 등
	홍보물 제작	▪ 해외 홍보를 위한 홍보물 디자인 개발, 유명IP 라이선스 비용
	미디어 홍보	▪ 해외 매스미디어 매체광고,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자율공모 사업 * 고도화 대상	▪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체 자율사업 추진 (사업계획 aT 사전승인 필요, 고도화 업체에 한해 메뉴 지원)

자료 :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 업체를 선정 한 후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22개 바우처 사업 메뉴판에서 업체의 수요에 맞게 지원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으로, 선정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쿠폰) 형태로 부여하고, 참여기업이 시장조사, 컨설팅, 통번역, 인증취득, 마케팅, 물류 등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율 선택·구매한 후 소요비용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절차 】



자료: 해양수산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25년 수산식품기업바우처 사업 모집 공고문」

- 동 사업으로 참여기업이 이용한 2025년 서비스 수행기관의 수는 636개사,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3년 248건, 2024년 457건, 2025년 846건으로 증가추세이나,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등록 시 및 선정 기준, 이행실적 점검, 장기 미공급 업체 정비 등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수출바우처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5년 해양수산부 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현황 】

(단위: 개사, 건)

구 분	2025년 서비스 수행기관 수	서비스 제공 건수		
		2025년	2024년	2023년
해외시장조사	54	62	28	16
수출실무 교육	10	49	24	12
포장디자인 개발	72	83	51	31
현지 수입등록, 검사 등 지원	59	102	28	23
지적재산권 출원	13	15	14	4
국제인증 취득	42	64	22	13
통·번역 및 서류대행	13	15	6	1
샘플통관운송비	9	11	12	8
무역애로 해소	35	68	28	13
수출 포장재 제작	68	76	47	-
수출용 브랜드 개발	22	28	18	12
유통업체 판촉	36	37	23	13
온라인 판촉	19	19	8	9
해외 마켓테스트	23	24	17	13
박람회 및 바이어 상담	38	46	23	18
유망상품화	31	33	43	24
홍보물 제작	64	83	45	26
미디어 홍보	25	28	18	11
자율공모사업	3	3	2	1
합 계	636	846	457	248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서비스를 실제 공급하는 수행기관의 역량과 이행실적이
사업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디자인 개발·영상물

제작 분야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업체로 제한하고 있을 뿐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및 등록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역량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적이 낮거나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수행기관에 대한 업무 성과 평가 체계가 미비하여 수행기관의 서비스 공급실적 점검이나 부실 수행기관 퇴출 등의 품질관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어 보임⁶²⁾.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서비스 수행기관의 등록기준을 공개하고 메뉴판별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 미공급 업체의 등록취소 등 수행기관의 선정·퇴출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⁶³⁾해 볼 때,

62)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추진시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업무 성과 평가 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으나, 현재 모든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해 '사전 승인제'로 사업수행 전 매 건 수행기관의 자격·실적, 서비스 적정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임. 이는 서비스 이용시점에 해당 업체의 적격성과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함께 검증할 수 있어 수출업체의 자율성·편의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임.

* 사업절차: 바우처 대상업체 선정(aT) → 서비스 수행업체 선택(수출업체) → 바우처 메뉴별 세부추진계획서 제출(수출업체-aT) → aT 검토·승인(사전승인제, aT-수출업체) → 바우처 발급(aT-수출업체) → 사업 추진 → 사업비 정산

** 사전 승인제: 수출업체 사업 추진 전, 사용바우처 메뉴별 계획(서비스 수행기관명, 사업 수행기간·장소, 세부계획 등)과 서비스 수행기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관련 분야 수행실적, 견적서 등)를 제출 후 aT에 승인 받는 제도

6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중소·중견수출기업 등에 대해 수출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2,770개사 중 1,540개사(55.6%)가 해당 연도 서비스 제공실적이 없고 그 중 775개사(28.0%)는 3년간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바 있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산자중기위), p.605)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수행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출바우처 사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의 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과 홍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신규 참여기업의 진입과 사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포털(exportvoucher.com)”을 통해 사업안내·메뉴판·수행기관 정보를 한 곳에서 일괄 제공하고 있는 반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의 경우 사업정보가 모집공고(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와 공지사항 및 서비스 관련 사항(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수산물수출정보포털)이 분산되어 있는 점,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행하는 다른 사업과 혼재되어 있어 수출바우처 관련 공고를 직접 검색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

서비스 수행기관 정보는 ‘수행기관 사전승인제’⁶⁴⁾ 운영에 따라 서

64) 사전 승인제: 수출업체 사업 추진 전, 사용바우처 메뉴별 계획(서비스 수행기관명, 사업 수행기간·장소, 세부계획 등)과 서비스 수행기관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관련 분야 수행실적, 견적서 등)를 제출 후 aT에 승인 받는 제도

비스 수행기관 정보를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고 있지 않는 등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음.

【 산업부·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포털」 】

【 해양수산부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수출업체가 바우처 메뉴별 업무 수행업체를 별도의 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하지 않고 자율선택하는 구조로, 정보접근성 및 홍보와 관련하여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유튜브·SNS 채널을 활용한 영상게시 등으로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우수사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임⁶⁵⁾.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서비스 수행기관의 이행실적과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관리는 필요하고, 자율선택방식일수록 신규 참여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수행기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보 비대칭이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과 함께 홈페이지 개편 등 다각적인 홍보 수단 마련을 통해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①수출바우처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등록·공개 및 이행실적 점검, 장기 미공급 업체 정비 등 최소한의 품질관리 장치를 마련하고, ②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65) 해양수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성과 확산 등 홍보에 대해, 수산 전문지(9개사)·권역별 설명회·카카오톡 알림(791명)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홍보자료 및 우수기업사례집 등을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통합포털”(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등과 달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부 대상에 대해 홍보하고 있어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실질적 경쟁구도 도모 필요

- 해양수산부는 사업준비 미흡에 따른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시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이 특정 법인의 가맹자 모집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은 우크라이나 사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CPTPP⁶⁶⁾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등으로 수산물 물가·수급 불안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 물가·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①수급예측모형 개발, ②유통종합정보시스템, ③온라인 구매시스템 확충, ④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등 4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현액 28억 5,000만원 중 28억 3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을 불용하였음⁶⁷⁾.

66)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출범시킨 경제 협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으며 2023년 7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총 12개 회원국으로 구성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67)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3040-322)

【 2025회계연도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	2,850	-	-	2,850	2,803	-	47	2,505

나) 검토의견

-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내역사업(이하 “수산물 직매장 설치 사업”)은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직매장 창업을 지원하여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청년·은퇴세대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국고보조 50% 비율로 민간자본보조(수산물직매장 설치) 및 민간경상보조(창업자 교육)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5년 예산은 13억 5,000만원임.

【 수산물 직매장 설치 사업 구축 예산 편성 근거 】

- (창업자교육) 60명×5백만(교육단가)×50%(보조율) = 150백만원
- (수산물 직매장 설치) 30개소×80백만(지원단가)×50%(보조율) = 1,200백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수협중앙회가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사업운영기관)를 선정하여 직매장 창업희망자 모집·교육 및 점포 개설을 지원하는 구조로 2025년 당초 목표는 직매장 30개소 설치, 창업자교육 60명임.

【 수산물 직매장 설치 사업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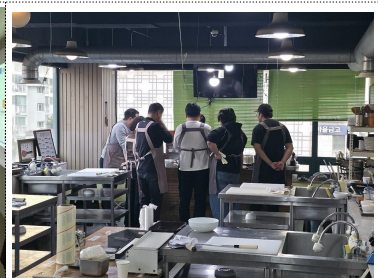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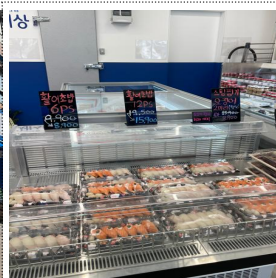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직매장 창업을 지원하여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청년·은퇴세대 소득 창출 도모
- 사업내용 : 수산물 직매장 신규점포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냉장·냉동매대 및 보관시설 설치 지원(30개점), 직매장 창업교육 지원(60명)
- 지원대상 : 수산물 직매장 창업을 희망하는자
(19세 이상 34세 미만 가산점 부여)
- 사업관리 : 수산물 직거래촉진센터(수협중앙회, '20.12월 지정)
- 사업수행기관 : 공모를 통해 선정(수산물 도·소매 유통분야 전문 업체)
- 사업기간 : '25 ~ '27년 (3년간, 매년 계속 실시)
- 지원비율 : 국고 50%, 자담 50% (민간자본보조·민간경상보조)
- 사업규모 : '25년 총 27억원(국비13.5억원, 자담13.5억원)
 - 직매장 설치 30개점(24억원, 점포당 8천만원)
 - 직매장 창업교육 60명(3억원, 인당 5백만원)

○ 2025년 사업계획 (1차년도 사업)

- 사업기간 : '25. 5. 2.(사업운영기관 선정일자) ~ '26. 6. 30.(6개월 연장)
- 직매장 설치 지원 : 30개 설치
(2025년 예산안 : 민간자본보조 12억원(국고보조 50%))
- 직매장 창업교육 지원 : 60명
(2025년 예산안 : 민간경상보조 1.5억원(국고보조 50%))

○ 2026년 사업계획 (2차년도 사업)

- 사업기간 : '26. 3. 23.(사업운영기관 선정일자) ~ '26. 12. 31.
- 직매장 설치 지원 : 30개 설치
(2025년 예산안 : 민간자본보조 12억원(국고보조 50%))
- 직매장 창업교육 지원 : 60명
(2025년 예산안 : 민간경상보조 1.5억원(국고보조 50%))



직매장 설치 지원

직매장 창업교육 지원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3억 5,000만원 중 창업자교육비 5,500만원만 집행하고 수산물 직매장 설치는 전액(12억원) 집행하지 못해 실행률은 4.1%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동 사업은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집행 부진 문제,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시 실질적인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국고보조사업이 간접보조사업자의 가맹자 모집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25년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사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행 률 (C/A)
						예산 현액	집행액 (C)			
창업자교육 (320-01)	150	150	150	150	55	150	55	95	-	36.7
수산물 직매장설치 (320-07)	1,200	1,200	1,200	1,200	-	1,200	-	1,200	-	0.0
계	1,350	1,350	1,350	1,350	55	1,350	55	1,295	0	4.1

□ 첫째, 동 사업은 공모 후 사업자 선정이라는 특성상 창업지원 대상자의 수요와 희망 입지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로 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 검토 등 사업 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당초 사업 계획시 연도별 직매장 30개소 설치를 목표로, 2025년에는 창업희망자 모집공고를 4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지만 최종 점포개설 지원 대상자가 4명에 그치는 등 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으며, 2026년의 경우에도 창업희망자(총 30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실시중이나, 1명 선정에 그치고 있어 2026년의 경우에도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수산물 직매장 설치 사업 공고 및 선정 현황 】

공모 차수	접수	서류 결격	평가 대상	창업 교육 지원 합격	사업 설명 회 이탈	교육 참여	교육 이탈	수료	면접 참여	최종 합격	사업 포기	최종 선정
1	18	2	16	16	7	9	2	7	7	5	2	3
2	32	7	25	24	13	11	-	11	10	10	9	1
3	12	-	12	11	4	7	2	5	5	4	4	-
4	13	2	11	10	7	3	1	2	1	-	-	-
합계	75	11	64	61	31	30	5	25	23	19	15	4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산지 수산물의 대량 공급과 물류비·운영비 등 고정비 절감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점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여 연도별 30개소(3년간 총 90개 목표)의 점포 개설을 계획하였다는 설명이나,

동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구조로,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는 공모 참여 대

상 및 희망입지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특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

창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다양한 사유⁶⁸⁾로 최종 점포개설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점⁶⁹⁾이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도 집행부진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한 사업관리로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보조사업자(수협중앙회)의 간접보조사업자(사업운영기관)는 2년 연속 (주)수협유통⁷⁰⁾이 선정되었는데,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시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요건과 심사위원의 구성 등 공모 절차를 점검하여 사업 설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025·2026년 간접보조사업자(사업운영기관) 모집공고 현황 】

차수	공고일~마감일	응모 법인수(명단)	선정기관
2025년	‘25. 4. 10. ~ 4. 24.	1개 업체(수협유통)	수협유통
2026년	‘26. 2. 26. ~ 3. 13.	1개 업체(수협유통)	수협유통

68)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대료 및 제반 비용의 상승 대비 지원금액 부족, 매출액 대비 사업자의 순이익률 저조, 희망지역의 상권분석 등 미흡 등의 사유로 최종 선정 사업자가 중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됨.

69) 동 사업은 최종 선정된 창업희망자가 희망 입지를 직접 물색하고, 사업운영기관(수협유통)은 창업자가 제시한 점포 입지에 대해 상권분석, 경쟁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희망자 협의 후 입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창업희망자의 희망 입지 물색 및 결정에 의존하는 방식인 이유로 2025년의 경우 최종 19명의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중도 포기자가 15명에 달하고 있음

70) 수협중앙회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

먼저, “수산물 직매장 및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자(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에 따르면, 수산물 직매장 개설·운영 경험과 수산물 도·소매 유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대상으로 명시하면서,

지원자격요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 직매장 가맹본부 자격 보유, 지역기반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인력 및 조직 보유, 정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한 행정 능력 보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 플랫폼 지원 사업운영기관 모집공고 】

- 목 적 :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직매장 창업을 지원하여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산분야 일자리 창출
- 모집대상 : 수산물 직매장 개설·운영 경험과 수산물 도·소매 유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1개사)

■ 지원자격요건(아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수산물 유통, 수산물 직매장 개설·운영 경험 보유
- 공고일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수산물 직매장) 자격 보유
- 지역기반 수산물 직매장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인력 및 조직 보유
- 정부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한 행정 능력 보유

- 수행업무 : 공모로 선정된 사업자가 직매장 창업희망자를 모집·선정 후 직매장 점포 개설 및 창업교육 지원, 수산물 공급 등 업무 수행
- 성과목표 : 수산물 직매장 30개소 설치, 창업교육 지원 60명
- 지원비율 : 국비 50%, 자부담(사업 운영기관) 50%
- 사업규모 : 총사업비 2,700백만원(국비 1,350백만원)

출처: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공모 결과 2년 연속 (주)수협유통 1개 업체만 응모·선정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보다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모요건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경쟁구도가 설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⁷¹⁾.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⁷²⁾은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사업운영기관 선정 심사위원(5명)에는 (사)한국수산회⁷³⁾ 소속 본부장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사)한국수산회는 동 보조사업과는 다른 내역사업(온라인 구매시스템 확충 사업⁷⁴⁾)을 수행하는

71)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모집된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및 수행 역량 등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선정심사 실시하여 간접보조사업자(사업운영기관)를 선정하고 있다는 설명임.

7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73)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1965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수산단체 및 수산회사, 일선수협을 아우르는 수산단체의 연합체적 성격으로 운영

74) 「온라인 구매시스템 확충 사업」은 '수급 위기관리체계 구축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영세 어업인의 공영홈쇼핑 입점과 소규모 어업인·유통업체 등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임.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5년 예산은 900백만원(홈쇼핑 입점지원 450백만원, 전자상거래 컨설팅 450백만원)임.

- 「수산물유통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가 보조사업자이며, 수협중앙회가 공모를 통해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자상거래 컨설팅은 (사)한국수산회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됨.

기관으로 동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동일 세부사업 내 다른 내역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2025년과 2026년의 심사위원 5인 중 동일인 3명이 2년 연속 참여한 것은 간접보조사업자 선정시 공정성 및 신뢰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심사위원 풀을 확대하고 외부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선정절차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수산물 직매장 설치 사업 간접보조사업자 심사위원 명단】

· 2025년

소 속	직급	성명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임○○	
한국수산물 유통소비본부	본부장	이○○	25년, 26년 동일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홍○○	
(주)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장○○	25년, 26년 동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MD	윤○○	25년, 26년 동일

· 2026년

소 속	직급	성명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주무관	강○○	
한국수산물 유통소비본부	본부장	이○○	25년, 26년 동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팀	팀장	김○○	
(주)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장○○	25년, 26년 동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MD	윤○○	25년, 26년 동일

자료 : 해양수산부

□ 셋째, 위와 같은 공모 및 사업선정 실태를 볼 때 동 사업은 사업운영기관인 (주)수협유통의 자체 가맹사업(가맹점 : sh어부세상) 확장으로 연결되는 사업구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이 사실상 특정 법인의 가맹자 모집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형태임.

(주)수협유통이 공고한 “2025년 수산물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플랫폼 구축 관련 수도권 가맹사업자 모집”을 보면, (주)수협유통의 가맹사업인 수산물전문판매점(sh어부세상) 가맹점을 개설할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고 있어 창업자가 개설하려는 직매장이 사업운영기관인 (주)수협유통의 sh어부세상 가맹점으로 편입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점포당 국고보조금(개설지원 8,000만원, 교육지원 500만원)과 창업대상자의 자부담이 투입되고, 개설된 점포에 대해 (주)수협유통이 가맹수수료 등의 수익을 수취하게 됨.

【 수산물직매장 가맹에 따른 (주)수협유통 수익구조(sh어부세상 〇〇점 기준) 】

구 분	금 액(원)	비 고
매출액	15,000,000	매장의 순매출 4,500만원의 공급액 매출 (일매출 150만원 기준)
매출이익	750,000	공급매출의 5%
로열티	900,000	매장 순매출의 2%
수협유통 손익	1,650,000	매출이익 5%, 로열티2%

- 국고보조 42.5백만원(50%), 수협유통 자부담 42.5백만원(50%),
- * 직매장 개설지원 8천만원/사업자당, 창업교육지원 5백만원/명당

자료 : 해양수산부

【 sh어부세상 예시 - 가맹점(개롱역점, 파주운정점) 조감도】



※ 어부세상 개롱역점 : 25.07.18(금) 오픈예정 / 파주운정점 : 25.07.22(화) 오픈예정

출처: 2025년 수산물직매장 설치 및 창업지원플랫폼 구축 관련 수도권 가맹사업자 모집 공고
(수협중앙회 홈페이지)

동 사업을 통한 점포개설 보조금 집행 시 수협중앙회 자회사의 가맹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구조인바, 당초 직거래 활성화·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특정 법인의 가맹사업 확장에 활용될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⁷⁵⁾.

75) 해양수산부는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대도시권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운영기관(수협유통)의 기존 물류·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운영기관 선정은

□ 해양수산부는 ①사업 준비 미흡에 따른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②간접보조사업자 선정시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공모 요건과 심사위원의 구성 등 공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③국고보조사업이 특정 법인의 가맹자 모집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수행역량을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창업희망자 지원(창업교육 1.5억원, 점포개설 12억원)에 한하여 집행되고 자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현장점검 및 반기 1회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임.

3) 수산물 위생관리: 행정입법 미비 해소 및 민간위탁사업의 지속적인 점검 필요

- 해양수산부는 수의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법령 위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입법 상 흠결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사무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동일 문제 재발시 공모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오염원 조사·관리, 정부·지자체 방사능 검사 기반 구축과 안전 감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①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②생산해역 관리 및 수출기반조성, ③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현액 248억 1,600만원 중 228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9,800만원을 불용하였음⁷⁶⁾.

【 2025회계연도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산물 위생관리	24,489	327	-	24,816	22,806	212	1,798	19,631

76)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수산물 위생관리(3041-303)

나) 검토의견

□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내역사업에 속한 세사업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⁷⁷⁾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FSIS, www.fsis.go.kr)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은 5억 1,500만원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210-15) 4억 1,500만원과 정보제공 업무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320-02) 1억원으로 구성되며, 예산 전액이 집행되었음.

【 2025년도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수산물 안전정보 관리	515	515	515	-	100.0
- 관리용역비(210-15)	415	415	415	-	1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00	100	100	-	100.0

7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농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FSIS) 위탁사업자를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사)한국수산회로 선정하여 왔으나, 동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수의계약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FSIS) 위탁사업 계약 현황 】

대상연도	용역명	계약상대자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계약방식
2022	2022년 수산물 안전정보서비스 (FSIS) 위탁사업	(사)한국수산회	2022. 1. 1.	1억원	수의계약
2023	2023~2024년 수산물 안전정보 서비스(FSIS) 위탁사업	(사)한국수산회	2022. 12. 5.	1억원	수의계약
2024	상 동	(사)한국수산회	2023. 12. 14.	1억원	수의계약
2025	2025~2026년 수산물 안전정보 서비스(FSIS) 위탁사업	(사)한국수산회	2024. 11. 29.	1억원	수의계약
2026	상 동	(사)한국수산회	2025. 11. 25.	1억원	수의계약

자료 : 해양수산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⁷⁸⁾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

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 근거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⁷⁹⁾은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물정보에 관한 업무가 누락되어 있음.

(사)한국수산회는 수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문언해석상으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사)한국수산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경쟁계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입법 상 흠결 사항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⁰⁾.

7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80)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농산물정보”라는 표현은 2012년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하면서 후속 시행령 개정 시 발생한 입법 미비 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산물정보”를 “농수산물정보”로 개정하는 개정령안을 마련(2026년 4월)하여 입법예고(2026년 5월)를 완료하였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설명임.

□ 또한,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사)한국수산회에 대한 감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공모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⁸¹⁾은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탁기관이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의 위탁기간 동안 (사)한국수산회는 법령이 정한 사무편람 작성 의무를, 해양수산부는 위탁사무 감사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사)한국수산회의 사무편람은 2026년 1월 15일에야 작성되었고,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는 2025년 12월 22일 및 2026년 5월 13일 두 차례 실시된 것이 전부임.

최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확인을 위

8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한 감사(2025.12. / 2026.5)에 따르면, (사)한국수산회 의견 청취 결과 “전산관리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시스템 위탁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20년 이후 갱신되지 않거나 폐지된 애플리케이션이 링크되어 있는 등 시스템 유지·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종합적으로, 해양수산부는 ①수의계약 관련 「국가계약법」 법령 위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입법 상 흠결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②위탁사무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동일 문제 재발시 공모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재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의 예비비 연말 집행 시정 및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회계연도 말에 예비비를 편성·집행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유통경로·단계별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은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해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①수산물 소비촉진, ②수산인의 날, ③수산정책홍보, ④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현액 1,547억 4,800만원 중 1,547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음⁸²⁾).

【 2025회계연도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01,748	151,748	3,000	154,748	154,741	-	7	101,748

82)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나) 검토의견

□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내역사업은 대국민 대상 온·오프라인(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할인행사를 통해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①대한민국 수산대전(온·오프라인 유통사 할인지원), ②찾아가는 직거래장터, ③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발행, ④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사)한국수산회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율 100%)으로 추진되고, 지자체 추진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시행되며, 보조사업자인 한국수산회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상품권 발행기관, 현장 운영 전문업체 등과 협약·용역계약을 통해 세부 행사를 수행하는 구조임.

【 수산물 상생할인사업 예산 개요(2025년도 본예산) 】

구 분		내 용
온·오프라인 할인 지원	예산	○ 본예산 : 500억원 - 온·오프라인 유통사 할인지원 : 480억원 -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 20억원
	사업 내용	○ (온·오프라인-480억원)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 및 온라인몰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개최(7회)

구 분		내 용
		* 정부 지원 20% + 업체 자체할인 최대 30% - 명절 물가 관리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한도(1→2만원) 및 할인율 상향(20→30%) - (참여대상) 공모로 선정한 온·오프라인 유통사 45개사와 연계 - (할인대상) 대중성어종 6종(고등어 등), 김 및 업체 자율품목 등 ○ (찾아가는 직거래장터-20억원)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유통업체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운영 *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오프라인 점포가 입점하지 않은 56개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예산	○ 본 예산 : 320억원
	사업 내용	○ 설·추석 등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연 2회) * (구매가격) 3만 4천원 이상 ~ 6만 7천원 미만→ 1만원 환급, 6만 7천원 이상→2만원 환급 - (상품권) 설 및 추석행사 각 160억원 상당 상품권 환급 - (대상시장) 근접 시장, 인근 점포, 골목형 상점가, 5일장 등 - 매 행사 최대 200개 시장에서 운영 - (행사품목) 전통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 판매하는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제로 페이	예산	○ 본 예산 : 80억원
	사업 내용	○ 제로페이(한국간편결제진흥원)와 연계하여 제로페이앱을 통해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모바일상품권을 20% 선(先)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권을 수산물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발행기간) 1월~6월, 8월~9월 매주 목요일(설, 추석 기간 포함) - (행사품목)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물 비중 70% 이상 가공품 * 수입 수산물 또는 행사 미해당 상품은 상품권 결제 불가
지자체	예산	○ 본 예산 : 10억원
	사업 내용	○ 지자체 여건에 맞는 수산물 할인행사,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 (할인율 20%) * 국비 50%:지방비 50%

구 분		내 용
홍보 운영비	예산	○ 본예산 : 90억원
	사업 내용	○ 대행용역, 홍보용역, 유통사 가격 모니터링, 소비자 만족도 조사 용역, 효과분석 용역, 법률자문료, 운영관리비 등

자료 : 해양수산부

- 2025년 예산현액은 본예산 1,000억원에, 제1차 추경으로 500억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30억원(2025.12.12. 배정)이 추가 편성된 1,530억원으로, 교부액 기준 집행률은 100.0%이나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액은 1,440억 7,500만원으로 89억 1,800만원이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되었음.

【 2025년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내역사업 비목별 결산 】

(단위 : 백만원, %)

비 목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월·불용 [실집행기준]
	본예산	추경					
국내여비(220-01)	10	10	-	10	10[10]	100.0	-
사업추진비(240-01)	10	10	-	10	10[10]	100.0	-
민간경상보조 (320-01)	98,980	148,980	3,000	151,980	151,980 [143,105]	94.2	- [8,875]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000	1,000	-	1,000	993 [950]	95.0	7 [43]
합 계	100,000	150,000	3,000	153,000	152,993 [144,075]	94.2	7 [8,918]

※ 자료 : 해양수산부

- 동 사업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나 예비비의 연말 편성·집행, 사업 홍보 및 국민 인지도 미흡,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의 불명확성 및 재원 배분·유통망의 문제 등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회계연도 말에 예비비를 편성·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 및 「집행지침」에 따른 예비비 편성·집행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동 사업에는 2025년 본예산(1,000억원)과 제1차 추경(50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수산물 오프라인 할인 행사추진”을 사유로 회계연도 말인 2025년 12월 12일에 예비비 30억원이 추가 배정되었고, 수산물 오프라인 할인 행사 추진으로 30억원 전액 집행되었음.

「국가재정법」⁸³⁾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며, 「집행지침」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①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②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③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수입원가·유류비·물류비 상승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으로 소비자물가가 급등하여, 물가 급등 시 신속한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집행하였

83)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는 설명이나,

동 사업은 2005년부터 매년 반복 편성·연중 상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2025년의 경우 500억원의 추경이 편성(2025. 5.)되어 물가 변동에 따른 할인지원 소요는 본예산 및 추경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향후에도 회계연도 말에 예비비를 편성·집행하는 관행을 지양하여 「국가재정법」 및 「집행지침」의 예비비 편성·집행 원칙에 부합하게 재원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국민 인지도가 저조하고 사업의 업인 소득증대 효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 만족도 조사⁸⁴⁾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인지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대상의 73.6%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사실상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인지경로도 마트 방문 시 행사 광고(16.7%)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산대전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84) (조사기간 2024.10.2.~10.25., 전국 17개 시·도 20세 이상 성인, 표본 온라인 2,000명·방문 225명)

【 대한민국 수산대전 인지도 현황(2024년 만족도 조사) 】

구 분	비 율 (%)
인지하지 못함	26.3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모름	47.3
(사실상 미인지 소계)	73.6
주된 인지경로 : 마트 방문 시 행사 광고	16.7

※ 자료 : 해양수산부(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용역).

【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 만족도 조사 주요 내용 】

문 항	주요내용
수산대전에 인지도 조사	보고나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히 모름(47.3%), 보고나 들어본 적 없음(26.3%), 잘 알고 있음(26.4%)
수산대전 인지 경로	마트 방문 시 행사 광고(16.7%), SNS(14.1%), 인터넷 배너(12.2%), TV 광고(11.0%), 온라인몰 광고(10.0%)
수산대전 홍보 및 광고 필요 정도	필요하다(44.9%). 매우 필요하다(28.9%), 보통이다(22.0%), 필요하지 않다(3.0%),
수산대전 행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63.7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지원 방식의 편리성이 66.8점, 할인율의 적절성 63.0점, 할인 품목의 적절성 62.6점, 판매처의 할인 지원 품목 접근성 59.3점
수산대전 주요 구매 장소	대형마트(41.1%), 중소형마트(15.8%), 지역농협(13.8%), 친환경매장(7.2%) 순서
수산대전 효과성에 대한 설문	어촌지역 활성화 72.2점, 국산 수산물 구매빈도 상승 71.4점, 수산물 소비 확대 69.9점, 수산물 가격 안정화 67.4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참여 목적	필요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53.8%, 온누리 상품권을 받기 위해 27.2%, 시장에 왔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서 19.0%
온누리 상품권 행사의 보완할 점	홍보 부족 44.4%, 환급인력 친절도 22.8%, 내용 및 진행방식 20.2%, 환급 대기시간 12.2%

문 항	주요내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참여 목적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참여한 경우 87.0%,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기 위해 참여한 경우 13.0%
제로페이로 수산물 구매 이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49.7%, 모바일 구매 과정이 간결해서 36.9%, 상품권을 선물 받아서 13.4%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편집(출처: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용역)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SNS(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집(fsale.kr), 옥외·교통·타운보드 광고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나,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국민 인지도가 위와 같이 저조한 실정인데, 특히 동 사업으로 인한 어촌지역 및 어민소득 증대 효과를 안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의 정책효과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인지도 제고 및 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마련하고, 동 사업으로 인한 어촌지역·어민소득 증대 효과도 함께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어업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소득 증대 효과가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으므로 유통경로·단계별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재원 배분 비율을 검토하고 유통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동 사업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업인 및 유통업자에게 589억원, 소비자에게 941억원 등 총 1,530억원의 사회적 후생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산물 평균 원가율이 약 75%임을 근거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어업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음.

【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후생효과 】

구 분	편익(억원)	비고
생산자잉여(어업인 + 유통사)	589	합산
소비자잉여(소비자)	941	
사회적 후생 계	1,530	

자료 :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 분석」 (국립부경대학교, 2025.4.)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생산자잉여 589억원은 원가율 75%를 고려할 때 매출의 상당 부분이 어업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이며, 산지가격 하락 시 유통업체 연계 특별 할인행사로 산지 적체물량을 해소('25년 약 670억원)하는 등 어업인의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임.

다만, 효과분석 용역상 589억원의 편익은 어업인과 유통사가 함께 얻는 생산자잉여를 합산한 값이고, 어업인 귀속분은 평균 원가율 75%라는 가정에 의존한 추정치일 뿐 유통경로·단계별로 유통사와 어업인 간 편익이 실제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정량적

분석은 부재함.

또한 동 용역상 가격안정화 효과도 어종·유통단계별로 상이⁸⁵⁾하여, 신선·냉장 부문에서는 효과가 뚜렷하나 갈치·참조기 등 일부 어종은 오히려 도·소매 전 부문에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효과가 균질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유통경로 및 단계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증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어업인의 소득을 보다 증대할 수 있도록 산지 직송 시스템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직거래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기존 유통시스템 외에 유통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⁸⁶⁾.

85) 남종오 등, 「2024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 분석」, 국립부경대학교(2025.4.), p. 88~90

- 신선 냉장에서 가격 안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냉동 제품보다 신선냉장의 수요가 높고, 이에 따라 할인 적용 품목에서도 신선 냉장 제품의 비중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는 본 사업의 혜택이 수요가 많은 품목에 집중되며 가격 안정화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갈치와 참조기에서는 도매 및 소매의 모든 부문에서 가격 안정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변동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고등어는 신선 냉장의 도매가격에서 사업 전 0.1797 대비 사업 후 0.1145로 변동계수가 하락하며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나, 소매가격(신선 냉장, 냉동) 및 냉동 도매에서는 오히려 변동성이 증가함
- 오징어는 모든 부문에서 가격 변동성이 감소하였고, 특히 도매 신선 냉장의 가격 변동성은 사업 전 0.2231에서 0.0991로, 냉동은 0.2382에서 0.109로 각각 감소하여 뚜렷한 가격 안정화 효과가 나타남
- 갈치는 도매 및 소매의 모든 부문에서 사업 시행 이후 변동계수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도매신선 냉장의 경우 0.0918에서 0.2225로 상승하며 가격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소매 냉동도 0.1606에서 0.2234로 증가하였음
- 명태는 도매(냉동)에서는 사업 전 0.1682에서 사업 후 0.0961로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여 안정화되었으나, 소매에서는 0.0544에서 0.1310로 상승하며 가격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유통단계별로 정책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마른멸치는 도매(중멸)에서는 0.0447에서 0.1044로 상승하여 불안정성이 커졌지만, 소매에서는 0.0767에서 0.0465로 하락하여 안정화된 양상이 나타나, 도매와 소매 간 상반된 결과를 보임
- 참조기는 도매와 소매 모두에서 가격 변동성이 증가한 대표적 사례로, 도매는 사업 전 0.1008에서 0.2332로, 소매는 0.1413에서 0.1560으로 상승하였음

□ 종합적으로, 해양수산부는 ①회계연도 말에 예비비를 편성·집행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②대한민국 수산대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③유통경로·단계별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86) 해양수산부는 유통망과 관련하여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구상 중이며, 중소유통업체를 2025년 31개에서 2026년 44개로 확대하는 등 유통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5) 친환경양식어업육성: 보조금 교부·집행 관리 부실에 따른 전반적인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시정 필요

- 해양수산부는 동 세부사업의 실행률이 17% 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여, 재정법령 및 보조금법령 준수에 대한 조직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전(全)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은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기반구축, 스마트양식 인프라 조성 및 어장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507억 7,900만원 중 420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1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음⁸⁷⁾.

【 2025회계연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친환경양식어업육성	48,762	2,017	-	50,779	42,095	1,540	7,143	44,468

87)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친환경양식어업육성(3140-301)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내역사업별로 바이오플락·순환여과 등 선도적 양식시스템 기반구축 및 기술이전 교육·창업 컨설팅을 위한 ①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자동화·지능화 시범양식장(테스트베드) 도입 및 배후부지 기반조성을 위한 ②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양식시설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③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명계공동생산시설·친환경개체굴·참조기·연어류 양식산업화 및 패류공동생산시설 지원을 위한 ④품종별산업화 시설지원, 과밀·노후 어장 및 주변해역 오염퇴적물 제거 등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⑤ 청정어장 재생사업로 구성되어 있으며,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개요 】

내역사업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 업 개 요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선도적·시범적 양식시스템(바이오플락, 순환여과, 수처리 등) 기반구축 지원	○(창업지원·사업관리) 기술이전 교육, 창업 컨설팅, 보조사업 및 중요재산 사후관리 - 한국어촌어항공단 민간위탁, 국비 100% / ○(양식기술 기반구축) 우량종자생산·양식·육종연구시설 지원 - 지자체, 국비 50%, 최대 3년(국비 한도 50억원)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친환경, 스마트양식시설 표준모델 개발, 국비 10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ICT·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식기술실증, 생산·유통·가공 등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테스트베드) 스마트양식 기술 실증 및 고부가가치 품종 생산 ○(기반구축) 가공·유통 연계 및 대량생산 인프라 조성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50~70%

내역사업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사 업 개 요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센터 구축	○클러스터 중심으로 양식시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적 사육조건 도출 및 생산성 향상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구축) 부산광역시에 양식시설 데이터를 수집·분석 센터 구축 -(총사업비/기간)= 130억원(국비 91, 지방비 39) / '23~'26년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70%
품종별 산업화 시설지원	○어촌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한 품종별 친환경·스마트 양식시설 지원	○(세부내역) 참조기산업화센터(전남 영광, 160억, '23~'27), 연어류·스틸헤드(충북 보은, 197.7억, '24~'27), 기후변화대응 신규어종(경북 울진 방어, 300억, '25~'28) ○(자동화 지원) 피낭류 110개소('25~'29), 패류 120개소('25~'28), 스마트가두리, 명게·개체굴 공동생산시설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국비 30~50%
청정어장 재생사업	○오염퇴적물의 다년간 침적으로 저하된 양식어장 생산성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청정어장재생사업) 퇴적오염원 제거, 양식시설 밀집도 조정, 어업인 역량강화, 실시간 해양환경 모니터링 -(대상) 만(灣) 단위 해역(개소당 500ha), 공모·평가로 지자체 선정 -(사업비/기간) 개소당 50억원(국비 50%) / 2년

자료 :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기술이전 교육, 창업 컨설팅 등을 위탁하는 민간위탁사업(16억 3,900만원)과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부 직접 수행 사업(5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자체 보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구성 및 사업방식 】

내역사업	사업방식	보조사업자	국고보조율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위탁사업 직접(일반연구비)	지자체, 한국어촌어항공단	50~10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자체	50~70%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센터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자체	70%
품종별 산업화 시설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자체	30~50%
청정어장 재생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	50%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런데, 동 사업의 2025년도 실집행액은 총 487억 6,200만원 중 84억 1,8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집행률이 17.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25년도 내역사업별 집행 및 실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액 (A)	집행액 (B)	실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9,519	6,144	3,997	-	3,374	64.5	42.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0,600	20,600	250	-	-	100.0	1.2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2,200	2,200	-	-	-	100.0	0.0
품종별산업화 시설지원	11,443	6,134	2,521	1,540	3,769	53.6	22.0
청정어장 재생사업	5,000	5,000	1,650	-	-	100.0	33.0
합 계	48,762	40,078	8,418	1,540	7,143	82.2	17.3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구성. 주)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025년도 예산분 기준

특히,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2025년도 예산분 실집행액이 전무하여 실집행률이 0%이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06억원 중 2억 5,000만원만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2%에 그치는 등 5개 내역사업 중 3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각 내역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미통과, 민간보조사업자 미선정, 실시설계 지연, 어촌계 동의 등 인허가 절차 미이행 등 보조금 교부 이전에 완료되었어야 할 사전 행정절차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도 내역사업별 주요 집행부진 사유 】

내역사업	실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관련 법령·지침 저촉사항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42.0%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지연에 따른 사업 착수 지연, 공모 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불용 33억 7,400만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 2항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2%	제주(156억 5,000만원 교부) : 어촌계 점사용 동의 등 인허가 절차 미이행으로 실시설계가 '25.12월에야 준공, 공사 발주는 '26.3월로 순연 → 2025년도 예산분 실집행 전무, 171억원 이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 (인허가서류·주민동의서 등 사전 행정절차 확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1항 (원칙적 이월 금지)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0.0%	부산(22억원 교부) : ISP(정보화전략계획) 용역이 '25.7월에야 완료되고 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

내역사업	실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관련 법령·지침 저촉사항
		사전협의·보안성 검토 등 발주 사전절차가 '25.12월까지 지연 → 2025년도 예산분 전액 미집행·이월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품종별산업화 시설지원	22.0%	· 기후변화대응신규양식어종지원(경 북 울진)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미통과('25.10)에도 불구하고 '25.4월 1차 교부(3억 6,000만원)에 이어 '26.3월 잔여 2억 4,000만원 추가 교부 ·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전남 영광) : 민간보조사업자 사업포기('24.7) 이후 3차례 공모에도 사업자 미선정 → 국비 전액 이월 · 연어류·스틸헤드 양식산업화(충북 보은) : 단독입찰에 따른 재공모 및 투자심사 지연 → 실집행 전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확인)
청정어장 재생사업	33.0%	충남(12억 5,000만원 교부) 실집행 전무, 어업순기(휴어기)를 고려한 어장정화 및 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사유로 이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재구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⁸⁸⁾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
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
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8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품종별산업화 시설지원 내역사업 중 기후변화대응 신규양식어종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 4월 사업비의 60%를 교부하였고, 2025년 10월 중앙투자심사 미통과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인 2026년 3월에 잔여 사업비 40%를 추가 교부하였는바, 이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전남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사업의 경우 2024년 7월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 수행주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2025년도 예산 9억원을 그대로 편성, 지자체에 교부하였고, 결국 3차례의 재공모에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국비 전액이 이월되었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48조⁸⁹⁾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명시이월

89)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비,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1항⁹⁰⁾ 역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71억 500만원, 부산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22억원, 품종별산업화 시설지원 관련 충북(연어류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12억 3,900만원·전남(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24억 3,500만원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이 지출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대규모로 이월되었는바, 이는 예외적 이월사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에 대해 사업 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행정절차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국비는 신속집행 기조에 따라 적기에 교부하였다는 입장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집행부진 사유에 대한 해양수산부 입장 】

내역사업	실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42.0%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은 단년도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편성 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자의 사업 착수가 늦어졌으며, 불용액은 대부분 공모 잔액 및 낙찰차액에 해당한다는 설명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2%	제주 사업장의 경우 어촌계 점사용 동의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24년 4월 기본계획 승인 이후 2025년 12월 실시설계가 준공되었고 2026년 3월 건축·토목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경북·충남 사업장은 지연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0.0%	기존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차별화를 위해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선행할 필요가 있었고,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전산실 화재로 공고 및 계약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등 법정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어 2025년 12월에야 구축사업 및 감리용역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설명
품종별산업화 시설지원	22.0%	「피낭류자동화설비구축」을 제외한 내내역사업은 모두 공모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선정 지연 및 지방비 추경 편성 등 행정절차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하였고,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재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2025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직접 추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기후변화대응신규양식어종지원」의 경우 2026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청정어장 재생사업	33.0%	새꼬막 양식어장의 어한기가 하절기인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의 요청에 따라 휴어시기에 어장정화를 추진하고 있고, 어장환경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이후 안정적 운영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지·보수 기간이 필요하여 어업순기를 고려한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설명임.

내역사업	실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 다만, 동 사업은 '26년부터 지특자율계정 이관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 등 행정절차 생략으로 '26년부터 집행률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자료 : 해양수산부

- 첫째,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지연사유의 대부분은 보조금 교부 이전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였던 사항으로,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교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어촌계 점사용 동의(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기후변화대응 신규 양식어종지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참조기 양식산업화 센터) 등은 모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2항이 교부 결정 시 확인하도록 명시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교부를 유보하거나 분할 교부 시기를 조정하였어야 함.

특히, 기후변화대응 신규 양식어종지원 사업의 경우 2025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미통과가 확정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졌음에도, 해양수산부가 2026년 3월 잔여 사업비 40%를 추가 교부한 것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⁹¹⁾이 “1

9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둘째, 해양수산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집행부진의 이유로 든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경우, 화재 발생(2025년 9월) 이전에 이미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화재를 주된 지연사유로 보기 어려움.

동 사업은 2023년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음에도 ISP 용역 발주가 2024년 11월에야 이루어져 착수까지 15개월이 소요되었고, ISP가 2025년 7월 완료된 이후에도 발주 사전절차에 5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었는바, 이는 사업 착수 이전에 정보화사업의 선행절차(ISP) 없이 예산에 우선 반영되는 절차적 미비로 인한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보임.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2023년 5억원, 2024년 20억원, 2025년 22억원을 연속하여 편성·교부하였고, 2026년에는 오히려 전년 대비 2배인 44억원을 편성하였는바, 3년 연속 실효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집행지침」⁹²⁾의 연례적 집행부진

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92)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9

5-1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 집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동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이 17%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것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만 기인하였다기 보다,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의 사전 심사와 교부 이후의 집행관리 면밀히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법령의 위반 사항이 연례적·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조직 차원의 별도의 대책이 부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금법령의 준수를 위한 조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동 세부사업의 실집행률이 17% 수준으로 극히 저조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여, 재정법령 및 보조금법령 준수에 대한 조직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전(全)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6) 자율관리어업육성: 위탁사업의 공모 절차 및 예산 비목 편성 시정 필요

- 해양수산부는 활성화지원 사업의 법적 성격(위탁)에 부합하도록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행지침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관리하며, 자율관리어업 정보화시스템 사업의 관리 부실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수산자원 조성·관리, 불법어업 근절, 어장환경 개선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육성사업비, ②활성화지원, ③확산교육비, ④운영비, ⑤유해생물구제(해파리) 등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예산현액 79억 6,600만원 중 79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⁹³⁾.

【 2025회계연도 자율관리어업육성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자율관리어업육성	7,934	32	-	7,966	7,911	36	18	7,794

93)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자율관리어업육성(3142-300)

나) 검토의견

□ 활성화지원 내역사업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관리어업법」”이라 함)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컨설팅, 성공사례 교육, 공동체 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소식지 발간 등 민간 차원의 교육·홍보·평가·분쟁조정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사)한국수산회이며, 국고 100% (2025년 8억 1,900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활성화지원 내역 사업 현황 】

< 자율관리어업 교육 및 홍보 운영 >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컨설팅

- 신규 참여공동체 및 활동부진 공동체 등 204개소(612회) 교육 및 홍보

2) 국내 공동체 성공사례 현장교육

- 신규 참여공동체(360명)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육총 10회 실시

3) 해외 공동체 우수사례 현장교육

- 외국의 자원관리 및 경영 우수사례 등을 직접 견학 1회(포르투갈, 스페인) / 총 15명

4)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발간 : 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참여 활성화 도모

- 자율관리어업 정책 등을 게재한 소식지를 발간 분기별 2,000부

5)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지원

- 2년마다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 지원('25.11.14/정부세종컨벤션센터/약 1,000명 참석)

6)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

- 최우수공동체 성과 영상 제작 1식('25년 경기 안산 종현공동체), 주요행사·기타사업 지원 등('25년 자율관리어업 규정집 450부 제작·배부)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지원 >

1) 공동체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

- 공동체 등급 및 등급별 순위 결정, 우수공동체 및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을 위한 회의 등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공동체 1,147개소)

2) 공동체 현지점검 지원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자체 예비 평가결과 확인을 위한 현지점검 지원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실태조사 실시

-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1,160개소 실태조사 실시

4) 평가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

- 공동체 현황, 평가결과 등 평가시스템(해양수산부 수산정보업무포털) 모니터링 및 자율관리어업 각종 정보교류를 위한 시스템 운영

5) 자율관리어업 활동일지 제작

- 공동체 활동일지 총 2,619부 제작·배부

<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

- 공동체간·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조정 '24년 이월 분쟁과제 2건, '25년 신규 분쟁과제 6건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활성화지원 사업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활성화지원사업 (세사업명)	추진방식	교부·집행액	실집행률(%)
계	-	819	100.0
공동체 컨설팅	보조	114	100.0
국내 성공사례 현장교육	보조	32	100.0
해외 우수사례 현장교육	보조	106	100.0
소식지 발간	보조	19	100.0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지원	보조	149.5	100.0
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	보조	38	100.0
공동체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	보조	8	100.0
공동체 현지점검 지원	보조	14	100.0
공동체 실태조사	보조	62	100.0
평가 및 정보화시스템 운영	보조	10	100.0
활동일지 제작	보조	10	100.0

활성화지원사업 (세사업명)	추진방식	교부·집행액	실집행률(%)
위탁검증보고서	보조	0.5	100.0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보조	46	100.0
직접인건비(3인)	보조	165	100.0
일반관리비(총사업비의 5.5%)	보조	45	100.0

* 자료 : 해양수산부

□ 활성화지원 사업의 수행주체 선정 절차, 예산 비목 편성, 정보화시스템의 운영 실효성 등에서 「자율관리어업법」,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활성화지원 사업은 「자율관리어업법」에 따라 위탁근거⁹⁴⁾를 두고 있을 뿐, 현행 법령에 민간수탁기관의 모집 자격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례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사)한국수산회를 사업자로 선정한 문제가 있어 보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⁹⁵⁾은 민간위탁 대상기관

94)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8. 12. 개정)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3. 법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지침」은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⁹⁶⁾하고 있음.

「자율관리어업법」 및 동 법 시행령⁹⁷⁾은 별도의 모집 제한규정 없이 민간단체의 범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 공모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사)한국수산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

9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9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5.1.), p. 199

97)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선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특히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8조가 '25.8.12. 개정⁹⁸⁾되어 한국 수산자원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도 위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탁 기관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절차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 사업에서도 사업자 선정시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동 사업은 「자율관리어업법」 및 동법 시행령⁹⁹⁾에 따라 실태조사, 교육훈련, 기술교류 및 홍보, 활동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동 내역사업 중 민간위탁사무가 아닌 자율조정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 업무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방식으로

98) 「舊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년 8월 12일 개정 이전의 규정)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8. 12. 개정)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99)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 8. 12. 개정)

제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단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3. 법 제8조에 따른 기술교류 및 홍보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의 평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추진하고 있어 민간위탁사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 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임.

동 사업의 공동체 컨설팅, 실태조사, 교육·평가 및 자율조정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 지원 업무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의 통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이는바, 사업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의 민간위탁 범위에 자율조정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 관련 업무 등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동 사업은 「자율관리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탁사업의 성격을 가짐에도, 위탁이 아닌 보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예산 역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사업의 법적 성격과 예산 비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보조금법」 및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은 그 성격에 맞게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2025년까지 활성화지원 사업비 8억 1,900만원은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 비목으로 편성·집행되었음.

‘보조’와 ‘위탁’은 사업수행자 선정 방식, 정산·회계처리,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가 상이함에도 이를 장기간 혼용함으로써, 수행자 선정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

되어 왔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넷째,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자율관리어업 정보화시스템」이 낮은 이용실적과 정보 미갱신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투입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자율관리어업 정보화시스템」(www.korjayul.or.kr)은 참여공동체 현황, 시·도별·유형별·등급별 통계, 소식지, 공동체 상품현황, 교육신청, 회원(공동체) 현황관리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으로, 2020년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되었고 매년 약 1,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시스템 가입자는 전체 자율관리공동체 1,161개소 중 5개소(9명)에 불과하고, 공동체 상품현황 및 교육신청 메뉴의 경우 활성화되지 않으며, 정보공유 기능이 언론기사 외에는 최근 3년간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시스템이 본래 기능인 정보공유·활성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자율관리어업 정보화시스템 홈페이지 운영 실태 】



사단법인

한국수산업

KOREA FISHERIES ASSOCIATION

자율관리어업

정보화 시스템

로그인 | 회원가입 | 팝업존 열기

자율관리어업 소개

참여공동체현황

공동체 상품현황

교육신청

알림마당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키워드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총 게시물 6개

No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등록일
6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문자발송 시스템 및 QR코드 지원 안내	-	41	2023-03-27
5	자율관리어업 소식지 안내	-	116	2021-10-06
4	자율관리어업 관계법령 안내	-	88	2021-10-06
3	자율어업관리 정보화 시스템 오픈 안내 2021-05-27 OPEN	-	1238	2021-05-24
2	참여공동체 현황 이용 및 통계 현황페이지 안내	-	41	2021-05-24
1	자율관리어업 교육신청 방법 및 신청상태 확인 안내	-	42	2021-05-24

1

△ 「자율관리어업 정보화시스템」 중 알림마당-공지사항

국가예산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운영비를 투입하였음에도 공동체 현황·통계가 장기간 최신화되지 않았고, 2026년 기준 일부 자료만 갱신되었을 뿐 그 이전 연도의 정보는 검색·접근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시스템 관리·운영 사업의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리 부실에 대해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해양수산부는 ①활성화지원 사업의 법적 성격(위탁)에 부합하도록 공모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②사업 성격에 맞게 민간위탁사업비로 관련 비목을 관리하는 등 집행지침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으며, ③자율관리어업 정보화시스템 사업의 관리 부실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감척어선공공활용: 감척어선 공공활용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효과성 분석 필요

- 해양수산부는 감척어선의 재활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청년 어선임대·공공활용 사업 등과 연계한 감척어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동 사업의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목적 달성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감척어선공공활용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통해 매입·처리된 어선을 활용하여 불법어구 및 침적 폐어구 등을 상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불법어구 수거 1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 현액 30억 4,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음¹⁰⁰⁾.

【 2025회계연도 감척어선공공활용 사업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감척어선공공활용	3,045	-	-	3,045	3,045	-	-	3,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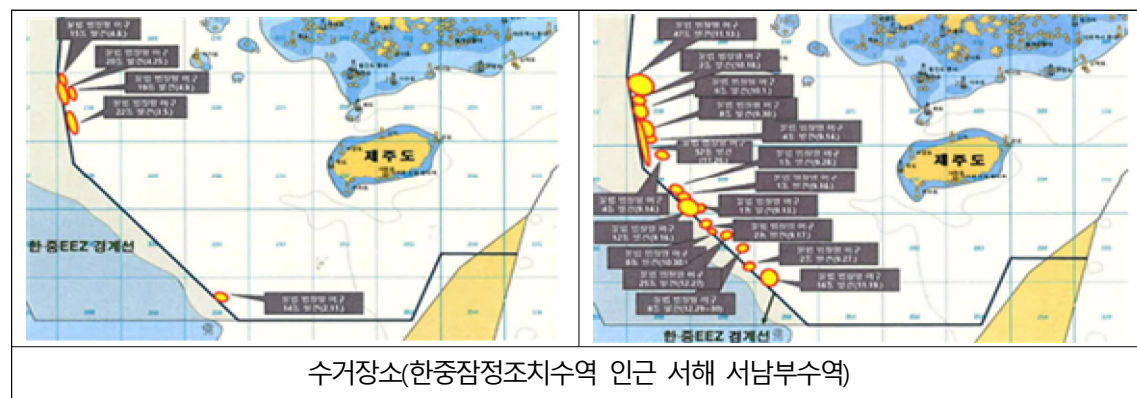
100)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감척어선공공활용(3145-308)

나) 검토의견

□ 불법어구 수거 내역사업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¹⁰¹⁾을 통해 매입·처리된 어선을 재활용하여 중국 불법어업(범장망)에 대응하고 국내 불법어구를 상시 수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 방식(보조율 100%)으로 추진되었으며, 2025년 수거·철거 전용선 2척을 운영하여 중국 범장망 398톤(47톤)을 수거하였음.

【 감척어선공공활용-불법어구 수거 내역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감척어선 공공활용을 통한 중국 범장망 등 불법어구 상시 철거 체계 구축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확보
- 사업내용 : 중국 불법 어구 수거를 위한 수거 철거전용선 수리·정비·검사, 불법어업 수거 처리, 신규 수거선박 도입 등
- 지원대상 : 전국민
- 보조사업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자료: 해양수산부

101)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3145-300) : 연근해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및 어업 경쟁력 제고 도모

* 1994년~2025년 연근해어선 감척 척수 : 전체 연근해어선 50,061척 중 20,172척 감척

□ 최근 5년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인한 감척어선은 총 1,454척
으로 이중 폐기는 1,437척, 재활용은 17척(재활용률 1.17%)으로 공
공활용 실적은 저조하며,

【 연도별 감척어선의 사후처리 】

(단위: 척)

연도	근해어업 어선			연안어업 어선			계		
	감척	폐기	재활용	감척	폐기	재활용	감척	폐기	재활용
2020	63	63	-	166	165	1	229	228	1
2021	86	86	-	109	106	3	195	192	3
2022	72	72	-	100	99	1	172	171	1
2023	59	58	1	193	190	3	252	248	4
2024	88	84	4	179	178	1	267	262	5
2025	104	102	2	235	234	1	339	336	3
합계	472	465	7	982	972	10	1,454	1,437	17

자료: 해양수산부

감척어선의 공공활용 용도를 보면, 박물관 전시, 소외도서 향로지원,
불법어구 철거 활용, 해양쓰레기 수거 등으로 사용되고 이들 선박
을 제외한 어선은 선령과 관계없이 폐기되고 있음.

【 연도별 감척어선의 재활용 현황 】

연도	지역	선박명	제작연도	톤수	재활용 용도
2020	경남	A호	'07년	2.99톤	수산생물 폐사체 수거처리시험사업, 시험조사선

연도	지역	선박명	제작연도	톤수	재활용 용도
2021	충남	B호	'96년	4.88톤	박물관 전시
		C호	'93년	4.86톤	박물관 전시
		D호	'96년	4.88톤	박물관 전시
2022	경남	E호	'02년	4.41톤	역마리나 시설 관리선 활용
2023	경남	F호	'15년	40톤	저선령 활용
		G호	'11년	9.77톤	저선령 활용
		H호	'99년	4.99톤	공공사업, 소외도서 항로지원
		I호	'00년	1.94톤	공공사업, 소외도서 항로지원
2024	전남	L호	'93년	89톤	불법어구 철거 활용
		M호	'94년	89톤	불법어구 철거 활용
		N호	'17년	57톤	저선령 활용
	경남	O호	'17년	85톤	저선령 활용
		P호	'97년	1.05톤	박물관 전시용
2025	경남	W호	'06년	1.68톤	수중 생태계 조사, 해양쓰레기 수거 등
	제주	X호	'11년	40톤	저선령 활용
	경북	Y호	'98년	89톤	공공사업, 불법어구 철거

자료: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따라 감척되는 어선은 폐선이 원칙이나, 감척어선 중에는 내용연수¹⁰²⁾(FRP 선체 기준 20년)가 경과하지 않은 저선령 어선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내용연수 20년 이하 감척어선 248척 중 재활용된 저선령어선은 7척으로 활용률은 2.82%에 불과

10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중 [어선의 내용연수]

- 선체 - 철강 : 25년, 강화플라스틱(FRP) : 20년, 나무 : 15년
- 기관 : 20년
- 어선에 장치된 장비품 : 15년,

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재활용 여지가 있음에도 대부분 폐선처리되고 있으며,

【 선령별 감척어선 현황 】

(단위: 척)

구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감척	폐기	재활용
'20	연안	-	6	19	43	80	79	1
	근해	3	4	-	5			
'21	연안	-	6	8	21	61	61	-
	근해	-	6	9	11			
'22	연안	-	3	14	21	61	61	-
	근해	1	8	8	6			
'23	연안	3	12	28	39	101	99	2
	근해	-	9	4	6			
'24	연안	-	8	18	28	98	96	2
	근해	-	11	16	17			
'25	연안	-	0	5	27	79	77	2
	근해	-	8	15	24			
합계	연안	3	35	92	179	480	473	7
	근해	4	46	52	69			

자료: 해양수산부

저선령 어선의 경우 중고거래가격(추정)이 5,000만원에서 20억수준이나, 폐선으로 처리시 고철 등 판매수익이 176만원에서 4,777만원에 불과하여 국가적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 감척사업을 통해 폐선한 어선의 폐선 전후 가치비교 】

구분	연도	제원				폐선 전	폐선 후
		선박명	선 령	톤수	업종	중고거래가격 (추정)	고철등 판매수입
연안 어선	2022	Q호	12	9.77	연안선망	5,000만원	3,434만원
	2023	R호	26	4.96	연안통발 등	1억 1,060만원	176만원
	2024	S호	18	4.95	연안통발	7,500만원	272만원
	2025	Z호	20	4.91	연안통발	1억 7,900만원	276만원
근해 어선	2022	T호	18	19	소형선망	20억원	1,005만원
	2023	U호	18	40	근해연승	8억원	2,090만원
	2024	V호	21	79	근해장어통발	11억 8,500만원	4,777만원
	2025	AA호	41	71	외끌이대형저인망	15억 9,000만원	4,319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 상대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저선령선박의 재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감척어선의 공공활용 목적이 ‘불법어구 수거’ 단일 용도에 매몰되어 있고 공익적 활용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감척어선의 공공활용을 위한 활용 방안¹⁰³⁾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

103) 예컨대, 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어선 어업 희망 청년에게 어선 임대 지원)에 저선령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⁴⁾.

□ 다음, 동 사업은 감척어선 1척을 확보·운영하는 데 편성기준상 약 10억원(감척어선 수리·정비·검사 3억 4,920만원, 불법어구 수거·처리 6억 4,44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초기비용입을 감안하더라도 1척당 운영비가 상당한 수준이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검증되지 못한 측면¹⁰⁵⁾이 있으므로 향후 비용 대비 효과성 분석을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어선청년임대 사업(3145-303) 개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적 : 어선어업 희망 청년에게 어업교육 제공, 어선 임대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유입 유도 및 어업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내용 : 청년들의 어선 임차료(70%), 어구구입비(50%) 및 어업교육(집합교육 및 멘토링) 지원하여 어선어업 진입 유도- 지원대상 : 연안어업(자망·통발·복합) 어선주 / 만 49세 이하 국민- 사업관리 :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사업 실적 : 임대용어선 누적 252척('~25), 청년어업인 315명('~25) 모집 및 어선 임대차 계약 총 64건 ('22년 6건, '23년 12건, '24년 23건, '25년 23건) 지원 |
|--|

자료: 해양수산부

104) 해양수산부는 감척되는 어선은 대부분 노후어선으로서 해체처리(폐선)가 원칙이나, 감척어선을 제한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와의 무상양여 행정절차를 통해 사용하도록 할 수 있어 동 사업과는 별개로 감척어선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감척어선의 공공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임

* 2025년 신규선박 1척 도입 시 지자체(경북) 무상양여·양수 일정(예시)

지자체 감척어선 공공활용 수요조사(경북도/'25.11.11.)→사용계획서 제출(공단/11.12.)→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 제출(경북도/11.13.)→이사회 안건 접수 및 의결(공단/11.24.)→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경북도/12.15.)→경북도 임시의회 접수·의결('26.2.10)→선박 양여양수 계약('26.2.26.)

105) 해양수산부는 2025년 범장망 398톤 수거를 통해 중국 불법어업에 약 28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약 157억원의 어장 보호 효과를 창출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

* 범장망 1틀 가격: 약 6천만원 × 47틀 = 28억원

** 韓 유사어구 안강망 1톤 당 연간 수산물 생산 금액 0.4억×수거량 398톤 = 약 159억

【 2025회계연도 불법어구 수거 내역사업 예산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감척어선 수리·정비·검사	349.2백만원 × 3척	1,047.6
불법어구 수거·처리	644.4백만원 × 3척	1,933.2
운영비	64.2백만원 × 1식	64.2
계		3,045.0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동 사업의 내용은 감척어선의 공공활용을 통해 불법어구를 수거하는 것으로, 성과지표¹⁰⁶⁾가 ‘불법·폐어구 수거량(톤)’ 1개로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목적이 단순히 불법·폐어구 수거를 위한 것이 아닌 감척어선 활용을 통한 공공성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의 사업목적 달성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성과지표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해양수산부는 ①감척어선의 재활용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청년 어선임대·공공활용 사업 등과 연계한 감척어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②감척어선 1척당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106)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4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	-	-	100	160	사업목적에 따라 불법·폐어구 수거량을 목표로 설정	불법·폐어구 수거량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 결과 보고서
	실적	-	-	-	398	-			
	달성 도	-	-	-	249	-			

③사업목적 달성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보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바다숲조성 사업 검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감독·검사 체계 시정

- 해양수산부는 바다숲조성 사업이 시공 과정에 대한 독립적 검증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공단 자체적으로 감독과 검사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고, 소수 인원의 감독·검사업무 과다 집중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검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감독·검사 체계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증강 및 바다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풍요롭고 건강한 바다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①한국수산자원공단 임직원 인건비·공단 운영경비 및 공단 서해청사 재건축 건설비, ②바다숲 조성, ③수산자원 증대, ④수산종자 자원관리, ⑤TAC 운영, ⑥환동해블루카본센터건립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예산현액 745억 3,600만원 중 74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¹⁰⁷⁾.

107)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3150-304)

【 2025회계연도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결산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74,394	142	-	74,536	74,270	115	151	72,233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 바다숲조성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¹⁰⁸⁾에 따라 갯녹음(백화현상)으로 황폐화된 연안 암반에 인공어초·자연석 투하, 해조류 이식·포자 살포 등을 통해 바다숲을 조성함으로써 바다생태계 회복과 탄소흡수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4년 기준 전국 연안에 347.20km²¹⁰⁹⁾의 바다숲을 조성하였으며, 2030년까지 바다숲 540km²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임.

108)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09) 서해 : 바다숲 41개소(25.03km²), 동해 : 바다숲 101개소(133.80km²), 남해 : 바다숲 52개소(64.70km²), 제주 : 바다숲 69개소(123.67km²)

【 바다숲조성 사업 개요 】

-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 (목적) 바다숲 조성을 통한 바다생태계 회복 및 탄소흡수원 확보
- (내용) 바다숲 조성, 갯녹음 실태조사, 바다식목일 행사 등
- (재원·보조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율 50~80%
- (집행구조) 해양수산부가 보조사업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공단이 본부(동해·서해·남해·제주)별로 시공업체와 조성공사(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
- (목표) 2030년까지 바다숲 540km² 조성
- (주요성과) 바다숲 조성을 통한 갯녹음 해소로 해조류 생체량 138% 증가 및 종 다양성 3.0 이상 유지, 바다숲 375.4km² 조성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12.6만톤 저감 기여, 바다숲(해조류)의 블루카본 국제인증 승인

○ 2023년 사업계획

- 바다숲 신규 조성 17개소, 조성관리 79개소
(2025년 예산 : 민간자본보조 268억 6천8백만원, 국고보조 80%)

○ 2024년 사업계획

- 바다숲 신규 조성 14개소, 조성관리 63개소
-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 4개소
(2026년 예산안 : 민간자본보조 271억 8천6백만원, 국고보조 50~80%)

○ 2025년 사업계획

- 바다숲 신규 조성 18개소, 조성관리 52개소
-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 3개소
(2026년 예산안 : 민간자본보조 278억 2천5백만원, 국고보조 50~80%)

○ 2026년 사업계획

- 바다숲 신규 조성 23개소, 조성관리 53개소
- 민간협력 바다숲 조성 3개소
(2026년 예산안 : 민간자본보조 290억 1천8백만원, 국고보조 50~80%)



미역 바다숲



울창해진 모자반 숲

자료: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자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2025년
실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79억 2,700만원 중 263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94.3%임.

【 2025년 바다숲조성사업 수산자원공단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 (추경포함)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	불용	실집행률 (B/A)
27,825	27,927	26,349	1,567	11	94.3

2025년 바다숲조성 사업은 공단 전체 275건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
였으며, 건별 평균 용역금액은 9,700만원 수준으로 수행되는 과업
의 대부분이 소규모 용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25년 바다숲조성사업 본부별 시공 현황 】

(단위: 건수, 백만원)

구분	사업 전체		공사 등 환경개선사업		사후영향조사		기타 용역	
	건수	평균액	건수	평균액	건수	평균액	건수	평균액
본사	20	157	1	50	0	-	19	163
동해본부	57	182	45	195	1	475	11	101
서해본부	31	97	16	123	2	86	13	68
남해본부	58	44	37	35	1	162	20	55
제주본부	109	70	89	74	2	105	18	49
합계	275	97	188	99	6	170	81	87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재작성

□ 바다숲조성사업은 바다숲조성 공사에 대부분의 과업이 소규모 용역 과업으로 법률상 감리의무¹¹⁰⁾가 없어 별도의 감리용역을 계약하지 않고 「국가계약법」¹¹¹⁾에 따라 감독·검사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현행 감독·검사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110)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2025년 바다숲조성 사업 감독조서(예시) 】

감 독 조 서				감 독 사 진																	
사 업 명	2025년 제주 바다숲 1년차 종달리 해역 자연식 시설																				
계 약 자	주식회사 토건 대표 강			수중 촬영(시설 전)	수중 촬영(시설 전)																
계약금액	일금일역칠천사백삼십육만팔천원정 (₩188,849,300)																				
계약기간	2025.03.04. ~ 2025.06.15.	착공일자	2025.03.18.	자재공급원 점검	자재공급원 점검																
시설일자	1차	2025.04.30.	준공일자	2025.05.19.																	
	2차	2025.05.02.																			
	3차	2025.05.05.																			
위 계약에 대한 감독자로 지명을 받아 동 계약 건을 감독한 결과, 설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조건の内容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붙임: 1. 감독 사진 1부 2. 감독 결과 보고서 1부 2025년 05월 23일 감독관 : 제주본부 블루카본사업실 전문직 윤 한국수산자원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감독조서				감독사진(감독조서 첨부내용)																	
자연식 시설 입회 조서																					
사업명	2025년 제주 바다숲 1년차 종달리 해역 자연식 시설																				
계약자	주식회사 토건																				
종류/물량	자연식/1,679㎡																				
투하 위치 좌표	1차	33°29.473', 126°55.070'(552.153㎡) / 2025.04.29.																			
	2차	33°29.489', 126°55.099'(568.042㎡) / 2025.05.02.																			
	3차	33°29.472', 126°55.112'(558.916㎡) / 2025.05.05.																			
위 사업에 대하여 2025년04월29일부터 2025년05월05일까지 입회한 결과 계획 물량, 시설위치 및 상태가 이상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05월 05일 □ 입회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소속</th> <th>직급(위)</th> <th>성명</th> <th>서명</th> </tr> </thead> <tbody> <tr> <td>토건</td> <td>현장대리인</td> <td>고</td> <td></td> </tr> <tr> <td>어촌계</td> <td>계장</td> <td>김</td> <td></td> </tr> <tr> <td>FIRA 제주본부</td> <td>전문직</td> <td>윤</td> <td></td> </tr> </tbody> </table>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토건	현장대리인	고		어촌계	계장	김		FIRA 제주본부	전문직	윤	
소속	직급(위)	성명	서명																		
토건	현장대리인	고																			
어촌계	계장	김																			
FIRA 제주본부	전문직	윤																			
입회조서(감독조서 첨부내용)			현장 안전점검표																		

자료: 해양수산부

□ 첫째, 공단은 계약사항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당사자인 시공사가 제출한 수중촬영 사진과 검량업체 검수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독조서를 작성하고,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조서도 공단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바, 시공의 이행 확인을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고 감독과 검사를 발주자인 공단에서 모두 수행하여 감독·검사기능의 객관성 및 신뢰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5년 제주 바다숲 1년차 종달리 해역 자연석 시설 사업”의 경우, 공단 제주본부 소속 전문직이 감독관으로서 시공사(주식회사 ○○토건)가 제출한 수중촬영 사진·검량업체 검량결과 등을 첨부하여 “규격 및 물량, 시설위치 이상없이 시설 완료” 의견으로 감독조서를 작성하였고, 검사조서는 시공 이후 제주본부의 다른 직원이 작성하였음.

수중공사는 완공 후 육안 확인이 어려워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이의제기가 곤란한 만큼 시공 과정에 대한 독립적 검증의 필요성이 더 큰 분야로서 발주자(보조사업자)인 공단이 감독과 검사를 모두 수행하고 그 확인을 시공사 제출 사진에 의존하는 현행 감독·검사 방식은 감독·검사 직무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¹¹²⁾의 취지(이해상충 방지)에 비추어 볼

1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감독·검사의 겸직 허용 대상인 계약금액 3억원 이하 공사인 경우에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또는 표본 대상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독립 감리·검사 또는 합동 확인을 도입하는 등 검증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¹³⁾.

□ 둘째, 동 사업의 감독자와 검사자는 같은 본부의 직원이 감독자와 검사자를 서로 교대하여 수행하는 상호교대 감독·검사 방식 비율이 높은 경향¹¹⁴⁾이 있어 형식적으로 감독·검사 기능이 이루어진 문제가 있어 보임.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113)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공사가 개소별 소규모 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상 의무 감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중공사의 특성상 별도 감리를 두기 곤란하여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공단이 검량업체 검량·수중촬영·감독조서 및 입회조서 등을 통해 감독·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114) 갑이 감독한 계약을 을이 검사하고, 을이 감독한 계약을 갑이 검사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의 경우 서로 감독과 검사자를 바꿔 수행하는 경향이 높음

【 2025년 바다숲조성사업 본부별 상호교대 】

본부	계약 건수	감독·검사 참여 인원(명)	상호교대 감독·검사건수	상호교대 비율(%)
동해본부	42	13	2	4.8
서해본부	28	7	3	10.7
남해본부	34	5	29	85.3
제주본부	98	11	57	58.2
합계	202	36	91	45.0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재작성

남해본부는 계약의 85.3%(29건), 제주본부는 58.2%(57건)가 상호교대 감독·검사에 해당하였는데, 남해본부의 경우 A 담당자가 감독한 12건을 B 담당자가 검사하고 B 담당자가 감독한 7건을 A 담당자가 검사하는 방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만 19건(본부 전체의 55.9%)이 순환하였으며, 제주본부에서도 C 담당자를 축으로 D(21건), E(17건), F(11건) 담당자와의 상호교대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됨.

국가계약법령이 감독과 검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는 시공 과정을 관리한 자가 그 결과를 스스로 확인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기검증의 폐해를 차단하고 이행 확인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나, 소수 인원이 계약별로 역할만 맞바꾸어 감독과 검사를 상호 수행하는 구조에서는 상호 간 지적을 자제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겸직금지 취지인 견제기능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공단은 계약사무 관련 내부규정에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특정 2인 간 감독·검사 역할을 상호 교대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감독·검사자 지정 기준을 개선하여 감독·검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공단이 일부 본부에서는 소수 인원에 대한 감독·검사업무의 집중이 두드러져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으며, 감독·검사의 연말 및 동일일자 집중에 따라 실지검사의 형식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25년 바다숲조성사업 감독·검사업무의 특징인 집중 현황 】

본부	성명	감독 건수	검사 건수	합계	본부 감독·검사 점유율	12월 감독·검사 건수	동일 준공일 최다 감독·검사 건수
제주 본부	㉠	45	29	74	45.9%	26	13건 (12월22일)
	㉡	12	8	20	12.2%	5	2건
	㉢	8	23	31	8.2%	5	2건
서해 본부	㉣	15	0	15	53.6%	1	5건 (11월28일)
	㉤	11	6	17	39.3%	5	2건
	㉥	2	1	3	7.1%	0	1건

자료 :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재작성

제주본부의 경우 ㉠ 담당자 1인이 감독 45건과 검사 29건을 합하여 총 74건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본부 계약 98건 중 감독·검사 기준 45.9%에 해당하며, ㉠ 담당자의 감독·검사 45건 중 26건이 12월에 실시되었고, 2025년 12월 22일 하루에 13건, 7월 11일 하루에 12건의 감독·검사가 집중됨. 그리고, 서해본부는 총 건수는 많지 않으나 감독·검사에 참여한 인원이 3명에 불과하여 ㉠담당자(53.6%)·㉡담당자(39.3%) 2인이 본부 감독·검사의 92.9%를 담당함.

바다숲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는 수중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해조류 이식·확장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잠수 또는 수중영상 장비를 동원한 현장 확인이 전제되나, 담당자 1인이 하루에 10여건 이상의 준공검사를 감독한 사례가 확인되는바, 이는 조성 해역이 다수 지구에 분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지 확인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수준이며,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제출한 사진·동영상 등 서면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검사를 갈음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는 실질적인 감독·검사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감독자 1인당 연간 담당 감독·검사 건수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본부에 대해서는 인력을 증원하거나 다른 본부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검사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①바다숲조성 사업이 시공 과정에 대한 독립적 검증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공단이 자체적으로 감독과 검사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고, ②소수 인원의 감독·검사업무 과다 집중을 완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독·검사 체계를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사업의 연례적 이월

- 해양수산부는 수원국의 여건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 정부 및 현지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더 이상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로, 빈곤 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친한세력 확보 및 해외 수산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477억 1,500만원 중 412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56억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¹¹⁵⁾.

【 2025년도 연안국과의 협력(ODA)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연안국과의 협력 (ODA)	44,958	2,757	-	47,715	41,288	5,606	821	38,010

115) 회계(기금)-세부사업 : 농특회계-연안국과의 협력(ODA)(3542-302)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사업」은 가나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수산물 가공·위생·보관시설 개보수 등을 통하여 가나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 달성 및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국비 보조율 100%의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 사업 개요 】

- (사업명) 가나 여성 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사업
-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기자재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사업기간/사업비) '23~'26년 / 매년 1,000백만원, 총 4,000백만원
- (수원 대상국/지역) 가나/그레이트 아크라
- (수원 기관) 가나 수산위원회
- (사업 수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사업 유형) 민간보조사업(보조율 100%)

*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10억원 가운데 3,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기존에도 사업 시행 첫해인 2023년부터 이월로 인한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

【 2023년~2025년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예산 현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2023	1,000	1,000	1,000	1,000	-	1,000	173	1,000	173	827	-	17.3
2024	1,000	1,000	1,000	1,000	827	1,827	953	1,000	150	850	-	15.0
2025	1,000	1,000	1,000	1,000	850	1,850	880	1,000	30	970	-	3.0

*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원국 내 정치적 사정 및 현지 협의 지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집행률이 2023년 17.3%에서 2024년 15.0%, 2025년 3.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2025년에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대다수 보조금이 이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사전 검토 없이 매년 1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관행적으로 교부하였음.

이는 보조사업자의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6)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향후 해양수산부는 수원국의 여건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116)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 p.95.

가능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 정부 및 현지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더 이상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교통시설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경상이전수입 376억 1,3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341억 2,200만원,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조 6,205억 4,500만원 등 1조 8,141억 2,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전년도세계잉여금 등으로 458억 2,700만원이 증가한 1조 8,599억 5,0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1조 8,599억 5,0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141억 9,6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1,295억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조 4,639억 6,600만원 등 총 1조 8,364억 8,8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및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해 216억 6,5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13,963	19,737	19,281	10	444	5,318
토지대여료	1,320	1,826	1,482	10	334	162
건물대여료	817	259	228	-	30	△589
기타관유물대여료	633	8	7	-	0	△626
정부출자수입	7,320	13,491	13,491	-	-	6,171
기타재산이자수입	3,873	4,153	4,073	0	80	200
경상이전수입	37,613	24,460	14,196	1,159	9,105	△23,418
벌금및과료	28	98	-	0	98	△28
과태료	308	601	373	4	223	65
과징금	64	84	49	-	35	△15
변상금	805	3,225	522	-	2,703	△283
위약금	4,139	2,877	460	1,110	1,307	△3,679
가산금	204	1,075	31	45	999	△173
기타경상이전수입	32,065	16,500	12,760	-	3,740	△19,305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4,122	142,254	129,512	627	12,114	△4,610
면허료및수수료	17,043	18,063	15,473	-	2,590	△1,570
항공항만수입	110,217	105,191	96,355	627	8,208	△13,862
기타잡수입	6,862	19,000	17,684	-	1,316	10,822
관유물매각대	6,116	23,249	23,249	-	-	17,133
건물매각대	-	-	-	-	-	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687	20	20	-	-	△667
토지매각대	5,394	23,229	23,229	-	-	17,835
재고자산매각대	35	-	-	-	-	△35
세계잉여금	1,764	186,284	186,284	-	-	184,520
전년도세계잉여금	1,764	186,284	186,284	-	-	184,52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620,545	1,463,966	1,463,966	-	-	△156,579
일반회계전입금	1,620,545	1,463,966	1,463,966	-	-	△156,579
합 계	1,814,123	1,859,950	1,836,488	1,796	21,665	22,365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액은 1조 8,141억 2,3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이 1,019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9,160억 2,700만원으로 증가함.

□ 예산현액 중 항만개발 및 관리 1조 5,141억 6,600만원,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496억 5,500만원, 해양수산연구개발 895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항만개발 및 관리 1,721억 2,400만원,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4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항만개발 및 관리 896억 7,000만원,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4억 5,5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5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항만개발 및 관리	1,674,394	101,566	-	-	87,531 △87,531	1,775,960	1,514,166	172,124	89,670
해양 및 해상교통관리	50,198	338	-	-	-	50,536	49,655	427	455
해양수산연구개발	89,531	0	-	-	-	89,531	89,531	0	0
합 계	1,814,123	101,904	-	-	87,531 △87,531	1,916,027	1,653,352	172,551	90,124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진해신항: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예산 과다 편성 및 이월 부적절

- 진해신항 내역사업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예산은 실제 훼손예정 면적과 지역계수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과다 편성되었고, 실시계획 확정 및 부담금 일부 납부 이후에도 잔여 소요액을 재산정하지 않아 2025년 이월액 12억 3,000만원 중 약 91%가 불용되었는 바, 해양수산부는 법정부담금 예산의 편성 및 이월 시 산정 근거와 실제 잔여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진해신항」 사업은 선박 대형화, ‘컨’물동량 증가 대비를 위한 컨테이너 부두를 확보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첨단 스마트 물류 허브 항만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4,774억 4,400만원 중 4,311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438억 9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25억 200만원을 불용하였음.¹¹⁷⁾

【 2025년도 진해신항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진해신항	434,650	434,650	47,694	△4,900	477,444	431,132	43,809	2,502	462,181

* 자료: 해양수산부

117)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진해신항(5050-305)

(나) 검토의견

□ 「진해신행」 사업의 내역사업인 「진해신행 남방파제」, 「진해신행 준설토투기장(3구역)」 및 「진해신행 남측 방파호안」의 2024년도 세출예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¹¹⁸⁾을 납부하기 위한 건설보상비가 편성되었음.

위 세 내역사업의 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된 건설보상비는 전부 또는 일부가 2025년으로 이월되었으나, 2025년에도 각 내역사업에서 이월액의 80% 이상이 불용되었음.

【 2025년 내역사업별 건설보상비 집행률 】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남방파제	-	48	48	9	-	39	18.8
준설토투기장 (3구역)	-	1,140	1,140	98	-	1,042	8.6
남측 방파호안	-	42	42	-	-	42	0

* 자료: 해양수산부

□ 이와 같이 건설보상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예산 편성 당시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훼손 면적과 지역계수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1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m²당 300원, 「항만법」에 따른 항만의 지역계수는 2, 항계외 지역에서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12가 적용됨.¹¹⁹⁾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 요구 시 남방파제와 남측 방파호안은 실제 훼손예정 면적이 아닌 사업 전체 면적을, 준설토투기장(3구역)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된 전체 매립 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세 사업 모두에 지역계수 2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였는데,

이후 2024년 3월 수립된 실시계획에서 공유수면 매립면적이 확정되

11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③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적용 지역	지역계수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을 수반하는 경우
1.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2	2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3	6
3.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20	40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	12

고 항계 내·외에 따라 지역계수가 달리 적용되면서 예산 요구액과 실제 부담금 부과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요구액 및 실제 부과액 】

구 분	해양수산부 요구액	실제 부과액
남방파제	112,000,000원 ≒ 187,000m ² ×2×300원	72,313,200원=14,322m ² ×2×300원+ 17,700m ² ×12×300원 * 대상면적: 14,322+17,700=32,022m ²
남측 방파호안	166,000,000원 ≒ 277,000m ² ×2×300원	123,584,400원=34,329m ² ×12×300원
준설투투기장 (3구역)	1,140,000,000원 ≒ 1,900,000m ² ×2×300원	97,885,800원=4,377m ² ×2×300원+ 26,461m ² ×12×300원 * 대상면적: 4,377+26,461=30,838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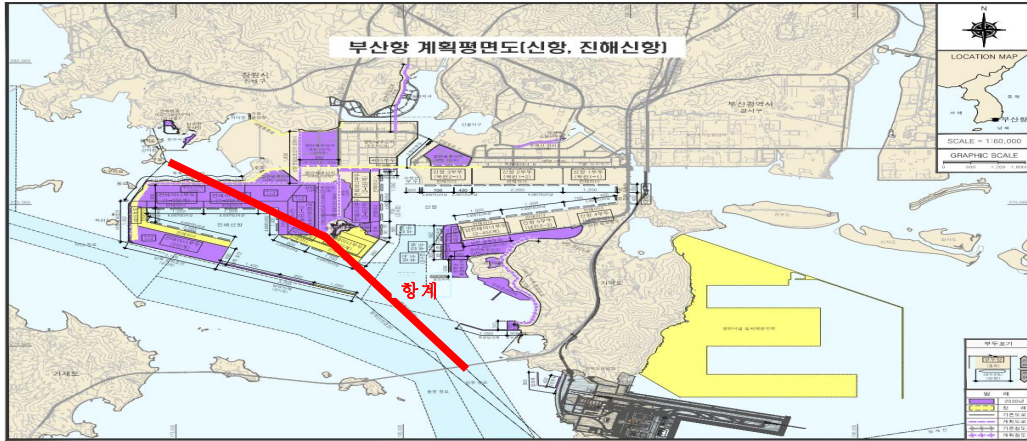
* 자료: 해양수산부

** 산식 중 지역계수 2는 파란색, 지역계수 12는 붉은색으로 표기

훼손면적은 실제보다 넓게 산정하면서도, 항계 외 매립지역에 적용되는 지역계수는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등 부담금 소요액 추계가 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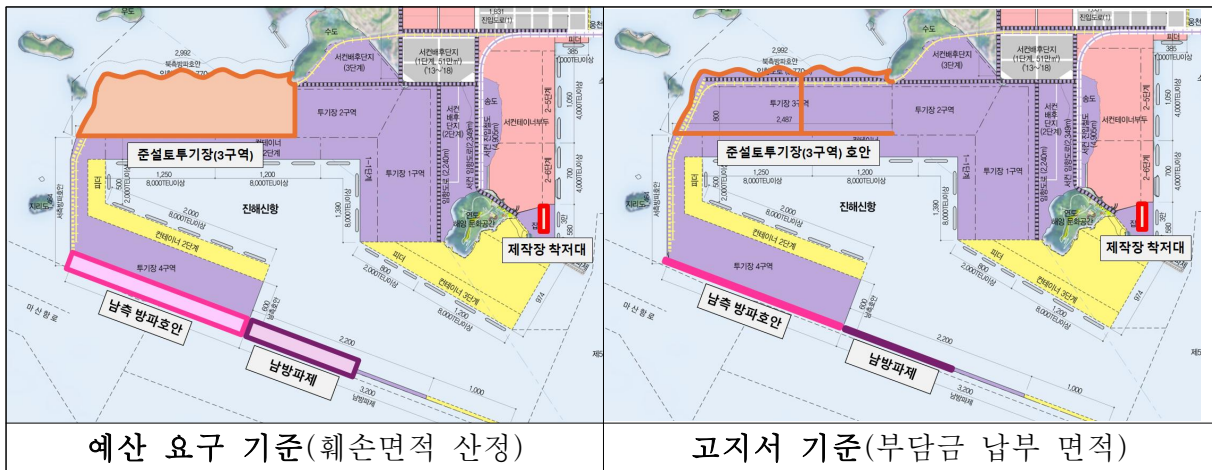
특히 준설투투기장(3구역)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최초 반영된 매립 면적 190만m²를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투기장 호안 체체(堤體) 면적 약 3만 1,000m²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되어 요구액과 부과액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음.

【 사업구역 도면(항계선 표기) 】



* 자료: 해양수산부

【 면적 비교 계획 평면도 】



* 자료: 해양수산부

- 2024년 예산이 실시계획 확정('24.3.) 전인 2023년에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 당시 실제 훼손면적과 항계 내·외에 해당하는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항계선은 실시계획 확정 전부터 정해져 있어 항계 외 지역에 높은 지역계수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었고, 2024년 3월 실시계획을 통해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면적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반영하여 실제 소요액을 확인¹²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2024년 말 남방파제 4,800만원, 남측 방파호안 4,200만원 및 준설토투기장(3구역) 11억 4,000만원 등 총 12억 3,000만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였고, 이 중 약 91%인 11억 2,3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이월 규모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한 건설보상비 예산을 요구할 때 관련 법령의 산정기준과 사업의 설계·인허가 자료를 토대로 실제 부담금 소요액을 면밀히 산정하고,

예산 편성 이후 실시계획 확정이나 부담금 일부 납부 등 여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소요액을 재산정하여 적정 규모만 이월함으로써 과도한 예산 편성·이월 및 이에 따른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20) 2024년 중 남방파제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6,400만원, 남측 방파호안은 1억 2,400만원을 각각 납부하였음.

2)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에 따른 연례적 예산 미집행

-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제안자의 수용 여부와 다른 민간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의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사업방식 변경 시 사업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 단계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대형수리조선소의 안전한 공사 추진과 안정적인 부두 운영을 위한 방파제 축조 및 수리조선단지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억원 전액이 미집행되어 9,9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¹²¹⁾

【 2025년도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100	100	-	-	100	-	99	1	-

* 자료: 해양수산부

121)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5050-315)

(나) 검토의견

-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은 대형수리조선소의 안전한 공사 및 안정적인 부두 운영을 위한 방파제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2025년에는 전국 심해설계과¹²²⁾ 보완('25.1.) 등 대내·외 여건 변동
을 반영하여 기 수립('20.12.)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계획 검토용역비로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이 편
성되었으나,

종전 민간투자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가 최종 유찰된 이후 사업을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 방식**¹²³⁾으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사업 추진방식 및 사업규모 등의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기본
계획 검토용역을 연도 내 발주하지 못해 2025년도 예산 1억원 전액
이 집행되지 못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
간사업자 선정 등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예
산이 3년 연속 집행되지 못하였음.

122) 항만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 시 활용하는 우리나라 해역의 파랑관측 및 예측 자료로, 최
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해진 태풍, 폭풍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로 보완하여 개정.

123)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
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A)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	2,520	-	2,520	-	-	2,520
2024	800	-	800	-	-	800
2025	100	-	100	-	99	1

* 자료: 해양수산부

- 우선, 민간투자방식을 BTO-a(Build · Transfer · Operate-adjusted, 손익공유형 BTO)¹²⁴⁾에서 BTO로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된 조건에 따른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측면이 있음.

최초제안자는 BTO-a방식으로 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을 제안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은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KDI의 권고¹²⁵⁾를 수용하여 BTO 방식으로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였음.

124)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보전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정부보전이 없는 기존 BTO 방식에 비해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2(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 손익공유형) ① 주무관청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에서 변동운영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공헌이익"이라 한다)이 실시협약상 주무관청의 매년도 투자위험분담기준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

125) 수리조선사업의 수주물량과 수익성이 사업시행자의 마케팅 및 도크 운영능력 등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 ② 투자위험 분담 방식은 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르되, 제33조의2에 따른 방식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사용료를 인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재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사업 등에 적용할 수 있다.

【 부산항 신항만 수리조선단지 사업 추진경위 】

- o '20. 10.: 민간제안서(BTO-a 방식) 제출
- o '22. 6.: 민간제안사업 적격성조사 통과(B/C: 0.86, AHP: 0.509)
- o '22. 8.: BTO-a 방식 제3자 공고(안) 검토 요청
- o '22. 10.: KDI의 BTO 방식 추진 권고
- o '23. 7.: BTO 방식 제3자 제안 공고
- o '23. 9.~'24. 2.: 분쟁조정 신청(제안자, '23.9.19.), 조정거부(기재부, '24.2.8.)
- o '24. 2. 21.: 1단계 서류접수 마감, 사업제안서 미제출(유찰)
- o '24. 3.: BTO 방식 제3자 제안 재공고
- o '24. 5.: 제3자 제안 재공고 유찰
- o '25. 10.: 사업방식 전환(BTO → 비관리청 항만개발)

* 자료: 해양수산부

BTO는 BTO-a보다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이 커지는 방식인 만큼 공고 전에 최초제안자의 변경조건 수용 여부와 다른 민간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초제안자가 BTO-a 방식 적용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 종료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BTO 조건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초 공고와 재공고가 모두 유찰되었음.

□ 다음으로, 2025년도 예산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와 대체 추진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기본계획 검토용역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임.

해당 용역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방파제와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비관리청 항만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드라이독 수, 부지면적,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 등 수리조선단지의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됨에 따라, 연계 기반시설인 방파제와 도로에 대한 검토도 사업추진방식과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야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부 역시 사업방식 변경('25.10.) 등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용역 발주가 가능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음.

【 사업 추진방식 비교 】

구 분	당 초	변 경																								
추진방식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규모	드라이독 1기, 플로팅독 1기, 의장안벽 3선식 부지조성 30만㎡, 방파제, 도로 등	드라이독 2기, 플로팅독 1기, 의장안벽 3선식 부지조성 39만㎡, 방파제, 도로 등																								
총사업비	6,265억원 - 수리조선 4,067억원/정부지원 2,116억원	15,000억원 - 수리조선 10,000억원/귀속 5,000억원																								
공사기간	33개월	60개월																								
설계조건	<table><tr><td>구분</td><td>S</td><td>SSW</td><td>SW</td></tr><tr><td>파고(m)</td><td>12.6</td><td>8.5</td><td>5.9</td></tr><tr><td>주기(s)</td><td>16.5</td><td>13.6</td><td>10.4</td></tr></table>	구분	S	SSW	SW	파고(m)	12.6	8.5	5.9	주기(s)	16.5	13.6	10.4	<table><tr><td>구분</td><td>S</td><td>SSW</td><td>SW</td></tr><tr><td>파고(m)</td><td>13.0</td><td>9.0</td><td>6.3</td></tr><tr><td>주기(s)</td><td>17.0</td><td>14.0</td><td>10.7</td></tr></table>	구분	S	SSW	SW	파고(m)	13.0	9.0	6.3	주기(s)	17.0	14.0	10.7
	구분	S	SSW	SW																						
	파고(m)	12.6	8.5	5.9																						
주기(s)	16.5	13.6	10.4																							
구분	S	SSW	SW																							
파고(m)	13.0	9.0	6.3																							
주기(s)	17.0	14.0	10.7																							

* 자료: 해양수산부

사업 계속 추진에 대비하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검토를 준비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민간투자사업이 이미 유찰되어 대체 추진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고, 2023년과 2024년에도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대체 추진방식의 확정 시기와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 범위, 연도 내 발주 가능성 등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진행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규모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분담조건이나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제안자의 수용 여부와 다른 민간사업자의 참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과 연계 재정사업이 함께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동 사업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단계별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포항영일만신항(1단계)·군장항(2단계): 예산편성지침 위반 및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리비 선금 집행 부적절

- 해양수산부는 향후 일괄입찰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보상비와 낙찰자 설계비의 연도별 소요를 적정 비목에 반영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는 계약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계속되는 감리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에 일률적인 선금 비율 적용을 지양하고, 해당 연도의 실제 공사 물량, 감리업무수행 기간 및 자금 소요를 기준으로 선금 지급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은 제철산업 및 배후산업단지 발전을 지원하는 대북방 물류거점항만을 육성하고 국제·연안여객부두 및 친수공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18억 4,100만원 중 39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78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¹²⁶⁾

- 「군장항(2단계)」 사업은 군산·장항항의 항만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4·5부두 리뉴얼,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 7부두 야적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871억 3,400만원 중 182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6)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포항영일만신항(1단계)(5050-323)

496억 3,6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192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¹²⁷⁾

【 2025년도 포항영일만신항(1단계)·군장항(2단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9,180	9,180	595	2,066	11,841	3,998	25	7,818	111,186
군장항(2단계)	116,422	116,422	1,216	△30,504	87,134	18,247	49,636	19,251	8,577

*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1)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예산 편성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일
괄입찰¹²⁸⁾의 경우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¹²⁹⁾는 기본조사

127)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군장항(2단계)(5058-314)

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12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설계비 보상)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설계비에, 낙찰자의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는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규정¹³⁰⁾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25년 예산에 「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사업은 지금이 예상되는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군장항(2단계)」 사업은 낙찰자 설계비를 공사비가 아닌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여, 잘못된 비목으로 편성한 실시설계비 80억원을 전액 불용¹³¹⁾하였는바,

결과적으로 두 사업 모두 일괄입찰의 계약구조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음.

①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 미편성

□ 내역사업인 「남방과제 2단계 축조」는 정온수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방과제(2단계, 1.3k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2025년 동 내역사업에 보상비(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5,400만원, 공사비 80억 2,600만원, 감리비 10억원 및 시설부대비 1억원 등 총 9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130)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131p.

턴키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보상비는 기본조사설계비(420-01)에 계상하고 낙찰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공사비(420-03)에 계상

131) 일괄입찰의 낙찰자 기본·실시설계비는 별도의 실시설계비(420-02)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비(420-03)에서 지급되는 경비로, 동 사업의 낙찰자 설계비 역시 기편성된 공사비에서 집행하였음.

□ 동 사업은 법령 및 편성 지침에 따라 일괄입찰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않아 설계보상비에 필요한 재원을 2개 연도에 걸쳐 모두 전용으로 충당한 문제가 있음.

【 이 · 전용 등 세부내역 】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 · 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11.7.)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5050-323)	공사비 (420-03)	3,000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5050-323)	기본조사 설계비 (420-01)	턴키사업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반영 필요
전용 (2025.7.18.)	군장항 (5058-314)	공사비 (420-03)	2,066	포항영일만신항 (1단계) (5050-323)	기본조사 설계비 (420-01)	“영일만항 남방파제(2단계) 축조공사”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 지급 필요

* 자료: 해양수산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제2항¹³²⁾은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보상대상자에게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설계보상비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낙찰자를 결정한 때 최종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

13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7조의2(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낙찰탈락자 중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때 제1호에 따른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며,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때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자가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는 제2호와 제1호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있으므로, 설계보상비를 2024년과 2025년에 나누어 지급한 것 자체는 관계 규정에 따른 적절한 집행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설계보상비를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타 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모두 전용하여 충당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해양수산부는 당초 예산에 설계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아 2024년 1차 설계보상비 30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공사비를 기본조사설계비로 전용하는 과정에서, 향후 최종 낙찰자 결정 시(당초 계획에 의하면 '25년 5월) 추가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해양수산부 역시 최종 설계보상비 50억 6,600만원은 2024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시 산출¹³³⁾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설계보상비를 편성하지 않고 타 사업의 공사비 20억 6,600만원을 또다시 전용한 것은 2024년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예산 미편성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법정·필수 경비를 2년 연속 예산 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사업의 단계별 재정 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 편성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줌.

133)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직선보간법을 통해 산정한 기본설계 요율(1.368%)에 총공사비(3,703억원)를 곱하여 산정

② 군장항(2단계): 불필요한 실시설계비 편성

□ 「제2준설토 투기장」 내역사업은 기존 준설토 투기장의 포화에 대응하여 신규 투기장을 조성함으로써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사업은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낙찰자 설계비를 공사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나 실시설계비로 80억원 편성함에 따라 전액 불용하였음.

【 2025년도 제2준설토 투기장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 제2준설토 투기장	104,898	104,898	100	△30547	-	74,451	7,871 [7,871]	47,930	18,650	500
- 실시설계비 (420-02)	8,000	8,000	-	-	-	8,000	- [-]	-	8,000	-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실시설계비 편성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낙찰자 설계비 80억원을 디브레인(dBrain,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공사비가 아닌 실시설계비로 잘못 입력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세목 착오는 사업의 계약구조와 예산 구성을 부정확하게

나타내어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저해하고 80억원의 대규모 불용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2)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리비 선금 집행 부적절

□ 두 사업은 모두 본공사 일정이 다음 연도로 지연되어 당해 연도에 수행할 감리 업무가 제한적이었음에도 장기간 계속되는 감리용역에 대해 차년도 수행분까지 포함한 대규모 선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포항영일만신항(1단계)」의 내역사업인 「남방파제(2단계)」는 실시설계 보완¹³⁴⁾으로 당초 2025년 5월로 예정된 본공사 계약·착공이 2026년 1월로 약 8개월 지연되었음.

【 남방파제(2단계) 주요 일정 지연 현황 】

주요 절차	당초 일정	실제일정	지연 기간
총사업비 협의 완료	'23.12.	'24.2.	2개월
발주 요청	'24.1.	'24.4.	3개월
기본설계도서 제출	'24.7.	'24.12.	5개월
우선시공분 착공	'24.10.	'25.2.	4개월
감리용역 착공	'24.10.	'25.3.	5개월
실시설계도서 보완	당초 미예정	'25.4.~'25.8.	-
본공사 계약·착공	'25.5.	'26.1.	8개월

*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총사업비 협의 완료에 2개월, 발주 요청에 1개월, 기본설계도서 제출에 2개월, 실시설계도서 보완에 5개월의 추가 기간 소요 발생

134)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3조(설계도서 등의 보완) ①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공사비는 예산현액 85억 2,600만원 중 우선시
공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선금 등 7억 2,500만원만 집행되었
으나, 감리비는 전년도 이월액 9,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억
9,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남방과제(2단계) 공사비, 감리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남방과제(2단계)	9,180	9,180	595	2,066	11,841	3,998	25	7,818	111,186
-공사비(420-03)	8,026	8,026	500	-	8,526	725	25	7,776	108,036
-감리비(420-04)	1,000	1,000	95	-	1,095	1,095	-	-	3,000

* 자료: 해양수산부

□ 「군장항(2단계)」의 내역사업인 「제2준설토 투기장」은 총사업비
협의와 일괄입찰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당초
2025년 8월로 예정된 본공사 계약·착공이 2026년 4월로 지연되었음.

【 제2준설토 투기장 주요 일정 지연 현황 】

주요 절차	당초 일정	실제일정	지연 기간
총사업비 협의 완료	'24.7.	'24.12.	5개월
발주 요청	'24.8.	'24.12.	4개월
기본설계도서 제출	'25.3.	'25.9.	6개월
우선시공분 착공	(1공구) '25.4. (2공구) '25.4.	(1공구) '25.12. (2공구) '26.1.	(1공구) 8개월 (2공구) 9개월
감리용역 착공	(1공구) '25.4.	(1공구) '25.12.	(1공구) 8개월

	(2공구) '25.4.	(2공구) '25.12.	(2공구) 8개월
본공사 계약·착공	'25.8.	'26.4.	8개월

*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총사업비 협의에 5개월, 입찰공고에 2개월, 기본설계 심의에 2개월 추가 소요되었으나 발주 요청 기간이 1개월 단축되어 최종적으로 8개월 지연 발생

이에 따라 2025년 공사비로는 12월 착공한 5억원 규모의 우선시공분에 대한 공사비 선금 4억원만 집행되었는데, 감리용역은 2025년 말 착수하여 당해 연도 수행기간이 3일에 불과하였음에도 계약금액의 80%인 21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하였음.

【 제2준설토 투기장 공사비, 감리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제2준설토 투기장	104,898	104,898	100	△30,547	74,451	7,871	47,930	18,650	500
- 공사비(420-03)	84,809	84,809	100	△30,547	54,362	400	45,600	8,362	215
- 감리비(420-04)	5,000	5,000	-	-	5,000	2,170	542	2,288	50

* 자료: 해양수산부

□ 「국가재정법」 제3조¹³⁵⁾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¹³⁶⁾은 계약체결

¹³⁵⁾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¹³⁶⁾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¹³⁷⁾은 공사비에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해당 공사의 총감리비를 산출한 후 해당 연도 공사비가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도별 감리비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당해 연도 공사물량과 공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감리비를 편성·집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한시적 계약 특례¹³⁸⁾에 따라 선금 지급한도가 계약금액의 70%¹³⁹⁾에서 100%로 확대되었으므로 「남방파제(2단계)」 내

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의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 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137)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79p.

13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5.7.1. 기획재정부장관)에 따라 선금 지급한도 확대(70%→100%)

139)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역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100%(10억원)를, 「제2준설토 투기장」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21억 7,000만원)를 선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한시적 계약 특례에 따라 선금 지급 한도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 비율을 확대한 것일 뿐, 계약체결 연도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까지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님.

- 향후 해양수산부는 계약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계속되는 감리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에 일률적 선금 비율 적용을 지양하고, 해당 연도의 실제 공사 물량, 감리업무수행 기간 및 자금 소요를 기준으로 선금 지급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마리나 항만 : 여수웅천·안산방아머리 마리나 건립사업 불용

-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통하여 사전 행정절차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여수웅천마리나 및 안산방아머리 마리나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마리나 항만 사업은 해양관광의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CIQ (세관·출입국관리·검역) 처리 기능,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주요 거점지역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의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37억 1,700만원 중 8,6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3,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¹⁴⁰⁾.

【 2025년도 마리나 항만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마리나 항만	1,200	1,200	2,517	-	3,717	86	-	3,631	359

140) 회계(기금)-세부사업: 교통시설특별회계-마리나 항만(5062-301)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여수웅천마리나 및 안산방아머리마리나 건립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양레저·친수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5년 편성된 예산현액 35억 2,600만원(여수), 1억원(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 여수웅천마리나 및 안산방아머리마리나 건립사업 개요 】

구 분	여수웅천마리나 사업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
건립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74~1875번지 전면해상 일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사업주체	여수시	안산시
사업규모	계류시설 300척, 방파제 254m, 방파호안 379m, 클럽하우스 등 164,890㎡(해상 95,865, 육상 69,025)	계류시설 312척, 방파제 329m, 방파호안 492m, 클럽하우스 등 144,700㎡(해상 76,243, 육상 68,457)
총사업비	116,543백만원(국비 29,014, 지방비 87,529)	1,811억원(국비 294억원, 지방비 1,517억원)
'25년 예산현액 (실집행액)	3,526백만원 (0)	100백만원 (0)
착공 및 준공 계획	(당초) 23년 하반기 착공 27년 하반기 준공 (변경) 27년 상반기 착공 30년 하반기 준공	(당초) 23년 상반기 착공 27년 상반기 준공 (변경) 27년 상반기 착공 31년 상반기 준공

* 자료: 해양수산부

□ 두 사업은 2025년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당초 계획 대비 착공 및 준공 일정이 3~4년 이상 대폭 지연되면서 목표했던 일정 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임.

먼저 여수웅천마리나 사업의 경우 2023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초기부터 환경영향평가, 조달청 사전검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왔음. 2025년의 경우 사업시행주체인 여수시가 섬 박람회 개최 준비, 여수 국가 산단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착공이 2027년으로, 준공이 2030년으로 3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임.

【 여수웅천마리나 사업 추진 경과 】

- '21. 4. ~ '22. 1.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보완
 - * 해수유동 재관측, 수로폭 확대 및 항내 해수교환율 확대방안 제시
- '22. 6. ~ '23. 1. :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조달청 사전검토 요청
- '23. 5. : 사업계획 변경 절차 이행 중,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2단계 심의 신청 (여수시→전남도→행안부)
- '23. 10. : 타당성 재조사 의뢰(행정안전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4. 10. : 지방재정(중앙, 2단계) 투자심사 완료(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분양 활성화 및 방문객 유치 확대 방안 마련,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방문객 유치 확대방안 마련
- '25. 04. : 거점형 마리나사업 부진 만회대책 마련 요청(해수부→여수시)
- '25. 10. : 거점형 마리나항만 부진사업 추진 사업 점검(해수부↔여수시)
 - 시 재정여건 악화 지속(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여수 국가 산단경기 침체)

* 자료 : 해양수산부

다음,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의 경우 당초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였음.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 이후 설계자문 과정에서 제기된 공사구간의 안전성 문제 보완을 위하여 설계도를 수정하고 실시계획 승인 보완을 신청하였고, 해당 단계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안산시 대부도 구간 교통정체 개선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착공은 2027년, 준공은 2031년이나 가능한 실정임.

【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 추진 경과 】

- '22. 4. : 실시계획 승인 신청(안산시)
- '22. 4. ~ '22. 6. : 사업계획 변경(안산시)
- '22. 6 ~ '22. 9.. : 설계자문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서 제출
 - * 수압을 고려한 안전성 검토 및 단면 수정 등
- '22. 12.. :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보완 제출(안산시→인천청)
 - (국토부)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안전성 검증, 국유재산 사용허가
- '24. 02. : 지반조사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안산시→국토부)
- '24. 10. : 지반조사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재신청(안산시→국토부)
- '24. 11. : 지반조사 국유재산 사용허가 승인(국토부)
- '25. 03. : 시화방조제 및 도류제 지반조사 완료
- '25. 11~12. : 검증 협의체 위원 최종 확인서 요청, 국토부 사업계획 검토 중
- '26. 7. :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서류 제출 요청(국토부)
 - * 안산시 대부도 구간 교통정체 개선 대책 필요로 구체적인 이행계획 보완

* 자료: 해양수산부

그간 국회는 해당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수행하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음¹⁴¹⁾.

□ 그러나 이후에도 여수웅천마리나 및 안산방아머리마리나 사업의 집행 부진은 계속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들은 사업 시작연도부터 2025년까지 실집행이 전혀 없이 예산을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고 있는바, 이는 해양수산부가 예산 실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예산을 편성·교부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⁴²⁾

【 여수웅천마리나 및 안산방아머리마리나 건립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실집행액 (B)	불용액	다음 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여수 웅천	2021	450	-	450	-	450	-	-
	2022	8,310	-	8,310	-		8,310	-
	2023	4,140	8,310	12,450	-	12,450	4,140	-
	2024	2,485	4,140	6,625	-	4,140	2,485	-
	2025	1,041	2,485	3,526	-	3,526	-	-
안산 방아 머리	2022	1,000	-	1,000	-		1,000	-
	2023	4,233	1,000	5,233	-	1,000	4,233	-
	2024	500	4,233	4,733	-	4,733	-	-
	2025	100	-	-	-	100	-	-

* 자료 : 해양수산부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부처 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단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하여 실

141)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5.1.;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3.1.

142)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여수시 지방비 확보 협약서 징구('25.12., '26.7.), 국토부-해수부 실무협의('25.6) 등 지연해소 대책 마련 촉구 및 관련 협의 수시 개최 등 독려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현 가능한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관리·감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여객터미널 운영: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설계 및 안전보강 탑승교 사업관리 미흡

-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국비 100% 지원을 전제로 수요를 조사하였으나,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고 보조율이 50%로 변경된 이후 수요를 충분히 재검토하지 않아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보조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지원조건이 달라질 경우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실제 사업수요를 재점검하여 사업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안전보강 탑승교 사업은 수요 검토와 설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집행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선사의 비용 부담과 이용 의향, 설계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착공·제작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여객터미널 운영」 사업은 국가관리 여객터미널의 관리·운영을 통해 도서민, 관광객 등 여객터미널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승하선이 곤란한 여객선·선착장에 승하선 리프트, 경사로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선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64억 8,800만원 중 148억 2,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0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12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¹⁴³⁾

143)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여객터미널 운영(5064-301)

【 2025년도 여객터미널 운영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여객터미널 운영	16,488	16,488	-	-	16,488	14,827	410	1,251	17,549

*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은 교통약자의 승하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승하선 리프트 등 승하선 편의시설(40개) 설치를 지원하고, 난간 높이 조정 및 안전망 보강 등을 반영한 안전보강 탑승교(3개소)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국고 50%)으로, ‘안전보강 탑승교 제작’ 사업은 해양수산부 직접사업으로 각각 추진됨.

【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 개요 】

-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지원 : 40개 설치
 - 2025년 예산 : 민간자본보조 7억원(국고 50%)
- 안전보강 탑승교 제작 : 3개소 설치(1차년도 사업)
 - 2025년 예산 : 실시설계비,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 4억 1,000만원

*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 예산에는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7억원, ‘안전보강 탑승교 제작’ 사업 4억 1,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나 두 사업 모두 전액 미집행되었음.

전액 미집행된 내용을 보면,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예산 7억원은 불용되었고, 안전보강 탑승교 제작 사업 예산 4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비목별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1,110	1,110	-	-	-	1,110	0 (0)	410	700	1,070
- 민간자본보조 (320-07)	700	700	-	-	-	700	0 (0)	-	700	508
- 실시설계비 (430-02)	16	16	-	-	-	16	0 (0)	16	-	-
- 공사비 (420-03)	118	118	-	-	-	118	0 (0)	118	-	559
- 시설부대비 (420-05)	1	1	-	-	-	1	0 (0)	1	-	3
- 자산취득비 (430-01)	275	275	-	-	-	275	0 (0)	275	-	-

* 자료: 해양수산부

□ 각 사업의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공모하고 지원 대상 시설을 확대하였음에도 신청 선사가 없어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지원대상 확대 및 공모 결과 】

차수	기간	지원대상 시설	공모 결과
1차	6.12.~7.7.	승하선 리프트	신청 선사 없음
2차	7.18.~8.8.	승하선 리프트, 선박 외 경사로	상동
3차	10.17.~11.14.	승하선리프트, 선박 외 경사로, 선박 내 경사로, 이동 손잡이, 선내 교통약자용 공간, 선착장 캐노피, 대여용 휠체어·유모차 등	상동

* 자료: 해양수산부

사업 수요가 저조했던 것은 동 사업의 지원 대상 시설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를 때 선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데, 국고 보조율은 50%로 설정되어 선사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으로 보임.

당초 해양수산부는 국비 100%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¹⁴⁴⁾하고

144)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의무 설치 시설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이 70%였던 점을 고려하여 의무 설치 시설이 아닌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국비 100% 지원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했다고 설명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9개소의 수요를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고 보조율이 50%로 조정됨에 따라 선사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면서 실제 공모 단계에서는 참여 수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음.

- 과거 사업¹⁴⁵⁾과 비교하면, 선사가 법률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수요 확보를 위해 국고 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한 반면, 선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비의무시설에 대해 오히려 이보다 낮은 50%의 국고 보조율을 적용한 것은 사업 참여 유인의 측면에서 지원 조건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45)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에 걸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1년 국고 보조율 50% 조건에서 사업 수요가 저조하여 이후 국고 보조율을 70%로 상향하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

*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화장실,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등(「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 연도별 집행률(국고보조율 포함)

사업연도	예산	국고 보조율	집행액	집행률	실집행액	실집행률	비고
2020	1,122	50%	1,122	100%	1,122	100%	국고여객선 우선 설치로 전액 집행
2021	1,012	50%	1,012	100%	378	37.3%	민간선사 지원
2022	556	70%	556	100%	545	98.0%	민간선사 지원
2023	500	70%	500	100%	498	99.6%	민간선사 지원

음.

* 자료: 해양수산부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고 보조율이 50%로 변경되었다면 과거 사업 집행 사례와 비의무 시설이라는 사업 특성을 근거로 적정 보조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지원조건이 변경된 경우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수요를 재조사하여 사업 물량과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조율, 지원내용 등 선사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¹⁴⁶⁾,

향후 유사한 보조사업의 지원조건이 당초 수요조사 당시와 달라지는 경우 재정 당국과 적정 지원조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한편, 변경된 조건을 기준으로 사업수요를 재검토하여 수요예측과 실제 집행 간 괴리로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안전보강 탑승교 제작’ 사업의 경우 당초 설치 대상지에 대한 수요 검토와 설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집행이 지연된 측면이 있음.

당초 포항 1개소, 목포 2개소 등 총 3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포항은 선사의 이용 수요가 없어¹⁴⁷⁾ 설치 대상에서 제

146)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비 분담구조를 기존의 국비 50%, 자부담 50%에서 국비 50%, 해운조합 30%, 자부담 20%로 조정하고, 이 조건으로 7월 중 공모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자부담률 완화에도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고여객선에 국비 100%로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함.

외되고 목포 2개소에만 탑승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설계방식 협의 및 설계 가능 업체 발굴에 장기간이 소요¹⁴⁸⁾되면서 2025년에 탑승교 제작을 위해 편성된 실시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전액이 이월되었고, 2026년 7월 현재 여전히 설계 발주 준비 단계에 있으며 실시설계비 증액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재정 당국과 공사비 일부를 실시설계비로 변경하는 비목 변경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수요, 선사의 비용 부담 및 이용 의향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

2026년에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설계 발주, 착공 및 제작 등 향후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147) 포항의 경우 여객선사가 자체 설치한 기존 탑승교는 별도의 사용료 부담이 없는 반면, 동 사업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설치하는 탑승교는 사용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선사의 이용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148) 사업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제한된 여객부두 공간 내에서 다양한 연안여객선에 적용 가능한 탑승교를 제작하는 것이 국내 최초 설계 방식으로서 설계 방식 협의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함.

6) 표지시설: 연례적 국내여비 세목조정 부적절

- 2023년 이후 국내여비의 국외업무여비로의 세목조정이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해양수산부는 예측 가능한 국외출장 경비는 국외업무여비에 직접 반영하는 한편 국내출장 수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국내여비를 요구·편성하여 국내여비의 국외업무여비로의 세목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표지시설」 사업은 항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선박운항능률을 증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432억 400만원 중 423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7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하였으며, 4억 5,400만원을 불용하였음.¹⁴⁹⁾

【 2025년도 표지시설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표지시설	42,866	42,866	338	-	43,204	42,323	427	454	55,563

* 자료: 해양수산부

149) 회계(기금)-세부사업 : 교통시설특별회계-표지시설(6350-300)

(나) 검토의견

□ 「항로표지 개량(유지보수)」 내역사업은 노후 항로표지시설을 개량·보수하고 항로표지원격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등 항로표지의 기능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에는 국제항로표지기구(IALA¹⁵⁰)의 총회·이사회 및 기술위원회 참석, 해외 항로표지시설·기술 현장조사, 항로표지 관리자 교육 및 국가 간 교류협력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내여비 5,500만원 전액을 국외업무여비로 세목조정에 따라 국외업무여비는 당초 2,600만원에서 8,1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동 사업에서 국내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업무여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2023년 이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국외업무여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B/A)
2021년도	29	-	29	6	23	21
2022년도	29	-	29	29	-	100

150) IALA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에서 정부간기구(IL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and Lighthouse Authorities'에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으로 전환하였으나, 약어는 그대로 IALA를 사용하기로 한 바 있음.

2023년도	29	57	86	86	-	297
2024년도	26	34	60	60	-	231
2025년도	26	55	81	81	-	312

* 자료: 해양수산부

【 연도별 국외업무여비 세목조정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	감액 세목	증액 세목	조정액	세목조정 사유
2023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35	IALA 콘퍼런스 참석 등 국외 업무여비 확보
2023	일반수용비(210-01)	국외업무여비(220-02)	12	IALA 이사회·기술위원회 참석 등 국외업무여비 확보
2023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10	하반기 국제회의 참석 등 국외업무여비 확보
2024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34	IALA의 국제기구 승격으로 국제회의가 증가함에 따른 예산 확보
2025	국내여비(220-01)	국외업무여비(220-02)	55	IALA의 국제기구 승격으로 국제회의가 증가함에 따른 예산 확보

* 자료: 해양수산부

□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 간 세목조정 자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허용되는 예산집행 방식이나, 유사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3년 연속 국내여비에서 조정하여 충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¹⁵¹⁾

해양수산부는 IALA의 국제기구 승격('24. 8.)에 따른 국제회의 증가 및 영국 문화유산급 등대 대형렌즈 영구 임대 추진 등 예측하지 못한 국외출장 수요를 세목조정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151)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이·전용 등 편성예산의 변경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동 기준이 세목조정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외출장 소요까지 계속하여 세목조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세목조정이 IALA의 국제기구 승격 이전인 2023년부터 연례적으로 발생하였고 IALA 총회·이사회 및 기술위원회 참석 등 상당수 국외출장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련 소요 중 상당 부분은 예측 가능한 수요로 볼 수 있음.

- 예측 가능한 국외출장 소요를 본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매년 국내여비를 조정하여 충당하는 것은 국내·국외출장 수요에 대한 당초 산정이 부정확하였음을 의미하며, 예산 편성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 괴리를 발생시켜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최근 3년간 국내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년 국외업무여비로 조정되어 국내여비가 국외업무여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여유 재원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IALA의 연간 회의 일정과 과거 집행실적을 토대로 국내·국외출장 수요를 구분하여 면밀히 산정하고, 예측 가능한 국외출장 경비는 국외업무여비에 직접 반영하는 한편 국내출장 수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국내여비를 요구·편성하여 국내여비의 국외업무여비로의 세목조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재산수입 2,800만원, 경상이전수입 38억 1,7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기타재산이자수입액 증가 등으로 36억 8,700만원이 증가한 75억 3,2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75억 3,200만원 중 재산수입으로 7억 6,800만원, 경상이전수입으로 45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22억 5,1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28	966	768	-	198	740
기타재산이자수입	28	966	768	-	198	740
경상이전수입	3,817	6,566	4,513	-	2,053	696
기타경상이전수입	3,817	6,566	4,513	-	2,053	696
합 계	3,845	7,532	5,281	-	2,251	1,436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618억 200만원으로 증감없이 예산현액 618억 200만원과 동일함.

□ 예산현액 중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218억 7,900만원, 해운산업 선진화 399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 및 불용은 없음

【 2025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21,879	-	-	-	-	21,879	21,879	-	-
해운산업 선진화	39,923	-	-	-	-	39,923	39,923	-	-
합 계	61,802	-	-	-	-	61,802	61,802	-	-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사전점검 미흡 및 성과관리체계 개선 필요

- 2025년 실집행 부진의 원인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 신청 시 RG 발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선하는 한편, 2025년도에 이월된 지원금이 2026년 중 집행될 수 있도록 RG를 발급받지 못한 선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지원실적이 목표 12척 대비 9척에 그쳤고 현행 성과지표가 지원 척수만을 측정하여 실질적인 탈탄소 성과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므로, 사업수요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CO₂ 감축 예상량 등 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사업은 국제해운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을 신조하는 경우 건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30억 5,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¹⁵²⁾

【 2025년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23,050	23,050	-	-	23,050	23,050	-	-	39,000

152) 회계(기금)-세부사업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6133-328)

(나) 검토의견

(1)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사전점검 미흡에 따른 실집행 부진

□ 동 사업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양진흥공사”라 함)를 사업시행 주체로 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양진흥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해양진흥공사가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구조임.

2025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진흥공사에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해양진흥공사가 선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22억 2,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53%에 그쳤고, 나머지 108억 2,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목	세목	부처		사업시행주체(한국해양진흥공사)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C/A)
		본예산	추경(A)						예산 현액	집행액 (C)			
320	01	23,050	23,050	23,050	23,050	-	23,050	12,222	23,050	12,222	10,828	-	53

* 자료: 해양수산부

□ 이러한 실집행 부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선사 3개사가 발주한 선박의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¹⁵³⁾ 발급이 지

153)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

연되어 지원금 지급요건¹⁵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임.¹⁵⁵⁾

【 지원 대상 선박 선가 · 지원금액 · 선사규모 】

번호	선사	선가(억원)	지원 금액(백만원)	선사규모
1	A	793	3,609 ¹⁵⁶⁾	중소
2	B	793	3,609	중소
3	C	793	3,609	중소
4	D	2,077	3,056	중견
5	D	2,077	3,056	중견
6	D	1,629	1,528	중견
7	D	1,629	1,528	중견
8	E	1,861	1,528	중견
9	F	1,701	1,528	대형

* 자료: 해양수산부

□ RG 발급 지연으로 인한 이월은 조선소의 RG 발급 여력 부족¹⁵⁷⁾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관리 과정에서 RG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발급 지연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행 시행지침상 사업신청서에는 건조조선소, 건조일정 및 연도별

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

154)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2조(지원금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최종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2차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1. 1차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예비인증서 발급 증명 이후 연내 지원(지원금액의 70%)
2. 2차는 제1호에 따른 신조 선박에 대해 RG(선수금환급보증)를 체결하였음을 증명 이후 연내 지원(지원금액의 30%)

155) 2023년과 2024년에는 RG 확보에 큰 제약이 없는 국내외 대형 조선소에 선박이 발주되어 이월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5년에는 중소선사들이 중국의 중소형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하였고 해당 조선소의 RG 발급 한도 여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발급이 지연되었음.

156) RG 발급이 지연된 중소선사 3척의 지원금은 각각 36억 932만원으로 총 108억 2,800만원이며, 이는 2025년도 이월액과 일치함.

157) RG 발급 여력 부족이란 조선사의 수주 증가에 따라 기존 수주계약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액이 누적되면서, 금융기관이 조선사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업체별 RG 발급 한도가 소진되거나 이에 근접하여 신규 수주계약에 대한 추가 RG 발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의미함.

자금조달계획 등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조선소의 RG 발급 가능 여부, 발급 예정 금융기관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사들에게 RG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수요조사 단계부터 RG 확보계획과 일정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관리하여 RG 발급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업 담당자의 안내나 개별적인 행정관리만으로는 사업 연도별로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원신청 단계에서 실제 RG 발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행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5년도 RG 미발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선사 3개사 중 2개사는 2026년 7월 현재에도 RG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지원금은 2025년도 예산이 2026년으로 이월된 것이므로 2026년 중에도 지급 요건(RG 발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이월 불가로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¹⁵⁸⁾

15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의2(보조사업비의 제이월) ① 제25조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따라서 2026년으로 이월된 지원금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RG를 발급받지 못한 2개 선사와 조선소·금융기관 간 협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 양적·질적 성과관리 강화 필요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민간 외항선사 신조지원 척수’로, 2025년도에는 친환경 외항선박 12척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지원실적은 9척으로 달성도는 75%에 그쳤음.

【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민간 외항선사 신조지원 척 수	목표(척)	신규	7	10	12	12
	실적(척)	신규	12	15	9	-
	달성도(%)	신규	171.4	150	75	-

* 자료: 해양수산부

□ 우선 양적 측면에서 지원 척수 저조 사유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국제해운 탈탄소 규제 도입이 지연¹⁵⁹⁾되면서 규제의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2. 제25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월한 경비 중 이월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159)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해운의 온실가스(GHG) 배출 저감을 위한 IMO Net-zero Framework 이행 규정을 포함한 MARPOL 부속서 VI 통합개정안의 채택을 논의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위원회를 1년간 휴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종 채택이 1년 연기되었음.

인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선사들이 투자계획을 조정하거나 발주를 유보한 것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음.

물론 국제규제의 지연이 선사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친환경선박은 장기간 운항하는 자산이고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 강화라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규제 지연을 성과목표 미달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보조율 등 사업의 내부요인도 실적 부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제규제의 지연을 성과목표 미달의 불가피한 사유로 설명하기보다 지원수요가 부진한 대내외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설계와 집행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됨.

- 다음으로 **질적 측면**에서 성과관리를 살펴보면, 동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데 있으므로, 현재의 지원 척수라는 양적 성과지표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5년 지원 선박 9척은 친환경 예비인증 2등급 3척과 3등급 6척으로 구성되고 9척 중 4척은 연료유 추진 선박으로, 인증등급과 추진 연료가 서로 다른데 단순히 이를 모두 동일하게 ‘1척’으로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탈탄소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원 대상 선박 예비인증등급·추진체계 】

번호	선사	예비인증등급	추진시스템
1	A	2	메탄올 DF
2	B	2	메탄올 DF
3	C	2	메탄올 DF
4	D	3	F.O.
5	D	3	F.O.
6	D	3	F.O.
7	D	3	F.O.
8	E	3	LNG DF
9	F	3	LNG DF

* 자료: 해양수산부

** DF: 이중연료(Dual Fuel)/ F.O: 연료유(Fuel Oil)

□ 유사한 사업내용을 가진 내항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선박의 ‘CO₂ 감축 예상량’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 역시 사업의 질적인 성과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이처럼 질적 성과지표를 마련할 경우 해양수산부가 단순히 지원 척수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 인증 1등급 선박이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선박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유인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임.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 요

1) 세입결산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산수입 3억 6,200만원, 경상이전수입 46억 5,9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액 등 증가로 114억 600만원이 증가한 160억 6,500만원이 되었음.

□ 징수결정액 160억 6,500만원 중 경상이전수입으로 103억 5,300만원, 재산수입으로 10억 1,300만원 등 총 113억 6,600만원을 수납하였고, 관계기관 예산부족으로 인해 46억 9,9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감 (C-A)
재산수입	362	1,141	1,013	-	128	651
기타재산이자수입	362	1,141	1,013	-	128	651
경상이전수입	4,659	14,924	10,353	-	4,570	5,694
과징금	-	3,000	-	-	3,000	-
위약금	-	1	1	-	-	1
기타경상이전수입	4,659	11,923	10,352	-	1,570	5,693
합 계	5,021	16,065	11,366	-	4,699	6,345

* 자료 : 해양수산부

2) 세출결산

-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당초 예산액은 6,391억 9,400만원으로 전년이월 37억 200만원으로 인해 예산현액 6,428억 9,6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중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82억 8,000만원,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399억 4,100만원, 어촌어항활성화 2,448억 5,600만원, 항만개발 및 관리 586억 9,000만원, 해양환경보전 1,757억 8,700만원, 해운산업 선진화 409억 5,400만원 등을 지출하였고,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12억 3,900만원, 어촌어항활성화 24억 5,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어촌어항활성화 62억 4,600만원, 해양환경보전 19억 6,800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이·전용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39,195	360	-	-	-	39,555	38,280	1,239	36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27,961	0	-	-	-	27,961	27,961	0	0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39,941	0	-	-	-	39,941	39,941	0	0
어촌어항활성화	250,768	2,786	-	-	-	253,554	244,856	2,452	6,246
항만개발 및 관리	58,690	0	-	-	-	58,690	58,690	0	0
해양수산 연구개발	200	0	-	-	-	200	200	0	0
해양수산 행정지원	3,132	0	-	-	-	3,132	3,132	0	0
해양환경보전	177,666	556	-	-	4,000 △4,000	178,222	175,787	466	1,968
해운산업 선진화	41,641	0	-	-	120 △120	41,641	40,954	477	210
합 계	639,194	3,702	-	-	4,120 △4,120	642,896	629,801	4,634	8,460

* 자료 : 해양수산부

6. 수산발전기금

가. 개 요

1) 수입결산

- 2025년 수산발전기금은 사업운용수익(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 6,889억 9,500만원, 정부내부수입 1,000억원, 여유자금회수 313억 8,900만원 등 총 8,203억 8,400만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사업운용수익(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 1,110억 5,200만원 감소 및 여유자금 회수 2,161억 9,800만원 증가 등으로 1,051억 4,600만원 증가한 9,255억 3,000만원이었음.
- 징수결정액 중 사업운용수익(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등)으로 5,643억 6,300만원, 기금예수금 1,000억원 및 여유자금 회수 2,475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고, 경상이전수입(법정부담금 등)에서 납부기한 미도래 등으로 미수납액 135억 8,000만원이 발생하였음

【 2025년도 수산발전기금 수입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과 목	수입계획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예산대비 수납증가 (C-A)
재산수입	10,090	12,881	12,861	-	20	2,771
기타민간이자수입	9,013	6,363	6,363	-	-	△2,650
기타재산이자수입	-	6,518	6,498	-	20	6,498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077	-	-	-	-	△1,077
경상이전수입	72,973	84,270	70,710	-	13,560	△2,263
징계 부과금 등	-	408	70	-	338	70
가산금	36	278	17	-	261	△19
위약금	276	628	628	-	-	352
법정부담금	68,466	75,881	63,378	-	12,503	△5,088
기타경상이전수입	4,195	7,075	6,617	-	458	2,422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000	2,717	2,717	-	-	△1,283
면허료및수수료 등	4,000	2,717	2,717	-	-	△1,283
관유물매각대	117,753	102,036	102,036	-	-	△15,717
재고자산매각대	117,753	102,036	102,036	-	-	△15,717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84,179	376,039	376,039	-	-	△108,14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84,179	376,039	376,039	-	-	△108,140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31,389	247,587	247,587	-	-	216,198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5,050	5,050	-	-	5,050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1,389	242,537	242,537	-	-	211,148
정부내부수입	100,000	100,000	100,000	-	-	-
기금예수금	100,000	100,000	100,000	-	-	-
합 계	820,384	925,530	911,950	-	13,580	91,566

* 자료 : 해양수산부

2) 지출결산

- 2025년도 수산발전기금 지출결산을 보면 당초 지출계획은 8,203억 8,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 금액 161억 3,300만원이 반영되어, 계획 현액이 8,365억 1,7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회계연도 중 불용전망 사업비를 활용하여 어업인소득안정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었음.
- 지출계획 현액 8,365억 1,700만원 중 해양환경보전 등 사업의 일반 지출로 6,586억 7,800만원, 여유자금운용으로 2,532억 7,200만원 등 총 9,119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해양환경보전 5억 8,600만원,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1억 1,100만원,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7,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해양환경보전 154억 500만원, 수산식품고부가가치 141억 4,600만원, 수산물유통및안전관리 478억 4,000만원, 어업인소득안정지원 748억 9,700만원, 수산행정 200만원, 기금거래 50억 8,200만원 등 총 1,573억 7,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2025년도 수산발전기금 지출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지출 계획	계 획 변 경				계 획 현액	지출액	다음년 이월액	불용액
		전년 이월	초과 지출	예비비 사용	이·전용				
해양환경보전	53,730	16,088	-	-	-	69,818	53,827	586	15,405
수산물고부가가치화	148,946	-	-	-	-	148,946	134,800	-	14,146
수산물유통및 안전관리	464,289	45	-	-	-	464,334	416,383	111	47,840
수산자원관리 및조성	15,513	-	-	-	-	15,513	15,513	-	-
어업인소득 안정지원	103,426	-	-	-	590 △590	103,426	28,458	71	74,897
원양협력	9,000	-	-	-	-	9,000	9,000	-	-
수산행정	699	-	-	-	-	699	697	-	2
기금간거래 (공자기금예탁)	5,082	-	-	-	-	5,082	-	-	5,082
여유자금운용	19,699	-	-	-	-	19,699	253,272	-	-
합계	820,384	16,133			590 △590	836,517	911,950	768	157,372

* 자료 : 해양수산부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해양폐기물 정화: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조속한 정착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수산부는 순회 수거 시스템 등 어구부표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회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불가항력적인 어구 유실 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항만 등 주요 해역의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지원,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정화운반선 건조, 어구보증금제 운영 등을 통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¹⁶⁰⁾

2025년 예산현액 463억 4,100만원 중 457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4,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25년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6,341	46,341	-	-	46,341	45,797	-	544	52,710

160) 회계(기금)-세부사업: 수산발전기금-해양폐기물 정화사업(1065-301)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어구보증금제 운영’은 「수산업법」¹⁶¹⁾에 근거하여 2024년부터 사전에 일정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의 어구를 판매한 후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와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개요 】

구분	어구부표 보증금제
추진배경	○ 어구·부표의 유실·투기를 방지하는 데 규제적 수단은 집행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유인(보증금)할 실효적 수단이 필요
사업내용	○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환급

161) 「수산업법」

제81조(어구·부표의 회수 촉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부표(이하 “어구등”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어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어구등의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 또는 수입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어구보증금은 어구등의 출고 또는 수입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구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어구등을 구입하는 자가 지급한 어구보증금을 제83조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여야 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반환된 어구등을 확인한 후 어구등을 반환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어구등을 구입한 자가 어구등을 반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수수료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어구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등에 어구보증금 환급 관련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어구등의 반환 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	어구부표 보증금제
추진체계	○ 표식부착 및 보증금 납부 → 어구 사용 및 반납(어업인) → 반납된 어구 관리·처리(지자체) → 보증금 환급(보증금관리센터)
보증금액	○ 어구별 보증금액은 연구용역,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어구가 투기되지 않고 육상으로 회수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 * 스프링: 1,000원, 원형·반구형: 2,000원, 사각·붉은대게: 3,000원
회수관리	○ 수협 및 11개 지자체와 협의하여 폐어구 회수(반납)가 원활하도록 전국 192개소(상시·수시) 폐어구 반납장소 지정·운영 추진 * '24년 기준, 184개소 중 85개소(46%) 운영 → '25년 기준 94개소(51%) 운영 → '26.6 기준 156개소(81%) 운영
보증금관리센터	○ 어구보증금의 환급, 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등 어구보증금관리 업무수행 * '23.3.22.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치·운영(한국수산자원공단) * 보증금관리시스템: 금융기관 CMS와 연계한 보증금 부과, 환급, 미환급금 관리 시스템 구축

* 자료: 해양수산부

- 보증금관리센터 운영 등 제도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고, 실제 반납어구의 수거·처리나 반납장소 운영, 보증금제 실시 이전에 판매된 기존 어구에 대한 교체사업(수매) 등은 지자체 경상보조(보조율 50%) 형태로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지구별수협에서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지자체 보조금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는 총 73억 6,200만원 중 58억 8,200만원이 실집행(79.8%)되었으

나, 지자체에 지급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19억 9,800만원 중 2억 4,800만원이 실행(12.4%)되었으며,

2025년에도 민간위탁사업비의 경우 총 64억 1,200만원 전액이 집행 되었으나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경우 20억 500만원 중 6억 7,100만원(33.4%)만 집행되는데 그쳤음.

【 2024~2025년도 어구·부표 보증금제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비목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A)	집행액(교부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실집행액 (B)	B/A			
2025년	· 합계	8,417	8,417	-	8,417	8,417	7,083	84.2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6,412	6,412	-	6,412	6,412	6,412	100.0	-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005	2,005	-	2,005	2,005	671	33.4	-	-
2024년	· 합계	9,360	9,360	-	9,360	9,360	6,130	65.5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362	7,362	-	7,362	7,362	5,882	79.8	-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998	1,998	-	1,998	1,998	248	12.4	-	-

* 자료: 해양수산부

【 어구·부표 보증금제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연도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부산광역시	2025	76.5	-	76.5	20	-	56.5	26.1
	2024	223	-	223	7	-	216	3.1
인천광역시	2025	40	108	148	25	32	91	12.5
	2024	108	-	108	-	108	-	-
울산광역시	2025	62.5	77	139.5	30	53	56.5	16
	2024	78	-	78	-	77	1	-

지자체	연도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경기도	2025	27	5	32	28		4	96.2
	2024	30	-	30	18	5	7	60
강원특별자치도	2025	270	147	417	130	159	128	23.7
	2024	233	-	233	86	147	-	36.9
충청남도	2025	110	74	184	53	121	10	31
	2024	117	-	117	9	74	34	7.7
전북특별자치도	2025	51	-	51	46	-	5	90.1
	2024	32	-	32	7	-	25	21.9
전라남도	2025	600	367	967	154	527	286	10.1
	2024	456	-	456	79	367	10	17.3
경상북도	2025	218	156	374	1	124	249	-
	2024	178	-	178	-	156	22	-
경상남도	2025	530	346	876	457	408	11	75.8
	2024	513	-	513	41	346	126	8
제주특별자치도	2025	20	-	20	3	-	17	15
	2024	30	-	30	-	-	30	-

* 자료: 해양수산부

지역별로 보면 2024년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11개 지자체 중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한 지자체가 4곳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경기, 전북,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 실집행률이 30% 이하를 밑돌고 있으며 전혀 집행하지 못한 지자체(경북)나 오히려 집행률이 저하된 지자체(강원, 전남)도 존재함.

□ 이러한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은 현장 수거 및 반납 인프라 구축의 미흡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국에 지정된 192개 반납장소 중 실제 운영 중인 곳은 2025년 말 기준 94개소(51%)에 불과한데,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와 지역 수협 간 위탁계약 체결 지연과 수협 측의 인력 및 부지 부족, 악취 및 미관 관련 주민 민원 등으로 반납장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반납 인프라 부족으로 도서 및 외곽 지역 어민들은 멀리까지 폐어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환급받는 보증금(개당 1,000~3,000원)보다 더 큰 운반비와 노동력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반납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⁶²⁾.

【 어구별 보증금액 】

종류	어구등 형태	어구보증금 단가	종류	어구등 형태	어구보증금 단가
통발	스프링등	1,000원/개	자망	그물	2,000원/폭
	원통형	2,000원/개	부표	2L~25L 미만	300원/개
	원뿔대형(반구형)	2,000원/개		25L이상~50L미만	1,000원/개
	사각형	3,000원/개		50L이상~100L미만	3,000원/개
	원뿔대형(대게 등)	3,000원/개		100L이상~500L미만	6,000원/개
	장어통발	300원/개		500L이상	30,000원/개
	장어통발 갈때기	3,000원/100개			

*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연간 수천 개의 어구를 구매하는 어업인들은 초기 구매 시 보증금 선납에 대한 자금 압박과 함께, 태풍·조류·선박 충돌 등으로 어구가 불가피하게 유실되는 경우 보증금까지 손실 처리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낄 소지도 있음.¹⁶³⁾¹⁶⁴⁾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동 사업의 대상에 통발뿐만 아니라 자망 및 양식장 부표 등을 추가하였으며, 현재(2026.4 기준)는 반납장소

162) KBS 뉴스,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실효성’ 글썄?”, 2026년 5월 29일자 보도.

163) 국회사무처, 「제22대국회 제429회 (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 회의록」, p.41.

16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6.

확대(156개소), 순회 수거시스템 및 현금성 포인트 도입 등을 통하여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동 사업의 실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까지 어구 생산업체의 판매 정보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체 판매량 대비 정확한 회수율 집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범위가 통발에서 자망 및 양식장 부표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납 인프라와 통계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과 예산 집행 부진이 계속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순회 수거 시스템 등 어구부표 회수율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협뿐만 아니라 자율관리어업공동체나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기관을 다변화하는 등 회수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불가항력적인 어구 유실 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어구 판매 정보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하여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 해양수산부는 사전행정 절차 미비 등으로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이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 및 서식지 보전, 유해해양생물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해양생물 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제고하고, 멸종위기 해양생물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213억 4,800만원 중 59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8억 1,400만원을 불용하였음¹⁶⁵⁾.

【 2025년도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5,260	5,260	16,088	-	21,348	5,948	586	14,814	19,078

165) 회계(기금)-세부사업: 수산발전기금-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1065-304)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실태 조사, 해양생물 보전·복원 연구, 해양동물 구조·치료·재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영덕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산하 전담기관을 건립하는 사업임.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개요 】

구 분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조성사업
사업목적	해양생물 종복원·증식 연구, 해양동물 구조·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 해양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주요기능	① 법정관리 해양생물 관리 정책 수립 지원 ② 해양생물 복원·증식 연구 ③ 해양동물 구조·치료·재활·방류 총괄 관리 ④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식 증진
건립위치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155-6 외 6필지
사업규모	연면적 9,586㎡ / 지하1층, 지상2층
사업주체	해양수산부
사업기간	2022년 ~ 2027년
총사업비	48,895백만원(국비 100%)
사업내용	고래류 치료시설, 바다거북류 사육시설·산란장 등
조직도	<pre> graph TD A[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 --- B[사회복지실] A --- C[국가해양생물자원관] A --- D[해양보존실] C --- E[해양생물다양성본부] C --- F[해양생물보존본부] E --- G[해양생물다양성본부] E --- H[해양생물보존본부] F --- I[해양생물보존본부] I --- J[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pre> 본 원: 경영전시본부, 해양생물다양성본부, 해양바이오산업화본부 부설기관: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 자료 :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당초 계획액 1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160억 7,800만원을 더한 170억 7,800만원이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17억 8,300만 원(집행률 10.4%)에 불과하며, 전체 예산의 86.6%에 해당하는 147억 8,200만 원이 불용 처리됨.

【 2025년도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당초	수정				예산 현액	집행액			
건설보상비	243	243	-	243	242	243	242	-	1	-
공사비	717	717	15,230	15,947	980	717	-	501	14,466	11,706
감리비	30	30	825	855	531	30	-	8	316	1,600
시설비	10	10	23	33	30	10	7	3	-	50
합계	1,000	1,000	16,078	17,078	1,783	1,000	249	512	14,782	13,356

* 자료 :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매년 이월과 불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었는바, 사업 시행 초기인 2022년에는 설계공모 절차 등 지연으로 예산현액 16억 5,000만원 중 1,800만원만 집행되고 16억 3,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23년에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기초 보강 등 총사업비 조정 사유로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되어 38억 4,8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4년에도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160억 7,800만원 이월되고 전년도 이월액 중 32억 3,400만원은 불용된 바 있음.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진행상황】

- '21. 6. : 입지 선정평가 및 우선협약 대상지(경북 영덕군) 선정
- '21. 11. : 타당성조사 완료 및 입지 선정 완료
- '22. 4. : 사업부지 무상사용 등에 관한 협약 체결(해수부·경상북도·영덕군)
- '22. 5. : 총사업비 신규 등록
- '22. 7. : 예산 수시배정
- '22. 9.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체결
- '22. 10. : 설계용역 공모
- '22. 12. : 설계용역 공모작 당선
- '22. 12. : 설계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 '24. 3.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총사업비 증액(총사업비 439억원)
- '24. 9~10. :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9월), 감리비 조정 검토완료(10월)
- '24. 12. : 총사업비 증액(489억원)
- '24. 12. : 공사 계약 요청(조달청)
- '25. 4~6 : 시공사 낙찰자 선정
- '25. 8. : 총괄계약 및 1차공사 착수
- '25. 12. : 1차공사 준공
- '26. 5. : 2차공사 착수

* 자료: 해양수산부

결국 2025년에도 누적된 사업 지연의 결과로 당초 이월금과 본예산의 대부분을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인 160억 7,800만원을 제외하고 2025년도 예산현액 중 집행액은 2억 4,900만원에 불과함.

【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사업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회계년도	예산액 (A)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F)	불용액 (G)
2021	200	-	200	188	-	12
2022	1,650	-	1,650	18	1,632	-
2023	3,573	1,632	5,205	1,357	3,848	-
2024	16,082	3,848	19,930	618	16,078	3,234
2025	1,000	16,078	17,078	1,783	512	14,782

* 자료 : 해양수산부

그간 국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건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¹⁶⁶⁾ 하였음에도, 당초 2025년도 완공,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했던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는 연속적인 공정 지연으로 완공 및 개관 가능 시점이 2027년과 2028년으로 각각 늦춰진 실정인바, 이는 해양수산부의 사업 착수 전 사전 준비와 공정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결과로 판단됨.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5년 2월 25일, 사업부지 내 편입 토지의 유상 관리전환에 필요한 보상비를 충당하고자 당초 공사비(420-03) 목의 예산 2억 4,300만 원을 건설보상비(410-00) 목으로 자체전용하여 집행하였음.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24년 9월 건축 허가 신청 및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야 예상치 못한 국유지 편입 필요성이 확인되어 2025년 본

166) 대한민국 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26.1.

예산에 보상비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2021년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 4월 영덕군과 부지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토지 이용 현황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국유지 편입 여부는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임.

즉, 편입 토지 확보 및 유상 관리전환 보상비는 사업 초기 및 설계 단계에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당초 공사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 중간에 전용하여 충당한 것은 해양수산부의 사업 준비가 면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여 더 이상 준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 보상 및 관리전환 등 예측 가능한 필수 부대 비용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